

GOVP1200132994

888977

K
382.41
L 293 L

농업통상용어해설

Agricultural Trade-related Terminology
1996

농 립 부



본 <자료>는 UR협상, WTO 각종 협정, 각종 국제 기구 등에 사용되는 용어중에서 농업통상과 관련있는 주요한 용어들을 선정하여 간략한 해설을 가미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용어들의 선정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해설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 줄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보완을 통해 더욱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관련업무 수행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996. 8

국제농업국장 최 용 규

☎ 자료문의처 : 농림부 국제협력과(503-7291~3)

목 차

I. 농업통상 용어해설(A~Z)	3
II. 용어찾아보기(기~히)	139
III. 부 록	153
1. WTO 기구표	155
2. 농업관련국제기구 영문표기	157
3. 농림부·관련기관·단체 영문표기	161
4. 농업관련법령 영문 표기	166
5. 통상업무에 자주 쓰이는 특수용어	167

여 백

I . 농업통상용어해설(A~Z)

여 백

[A]

AARRO(Afro-Asian Rural Reconstruction Organization : 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

아시아·아프리카 지역국가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농민의 후생증진 및 기아와 빈곤의 제거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62. 3월 설립된 국제기구. 우리나라는 '63. 2월 가입하였음. 현재 22개 회원국과 1개의 준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됨.

Article 14 Nation of IMF(IMF 14조국)

IMF협약은 제8조에서 가맹국에 대해 첫째,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둘째, 차별적 통화조치의 철폐, 셋째, 외국인 보유잔액의 교환성 보장이 라는 3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실시하여 온 외환제도를 일시에 철폐하기 어려운 국가가 예상되므로 IMF 8조국은 그 원칙에 대해 예외 규정, 외환제도 철폐에 대한 유예규정을 설정하고 있는 바, 이것이 제14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IMF 규약 제14조에 따르면 경제력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수지가 불안한 가맹국은 IMF 당국에 통고한 후 경상거래에 관한 제한변경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나라를 IMF 제14조국이라 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나라는 매년 정기적으로 14조국의 적부에 관해 협의(Consultation)을 받아야 함.

Act of OECD(OECD 제규범)

OECD는 정책협의기구로서 기본적으로는 국제규범(Norms)을 정립하는 기구가 아니나, 소기의 자체목표달성을 위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필요한 규범을 제정하고 있으며, 규범의 대부분은 경제운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 원칙, 지침에 관한 것임. OECD와의 가입조건 협의는 규범에 대한 수락과 유보범위를 협의하는 과정임. OECD로서는 신규가입국이 OECD규범을 전반적으로 수락 또는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모든 규범을 수락하고 가입하는 국가는 없음. 가입조건 협의시 결정과 권고에 대한 수락의무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양대자유화규약(자본이동 자유화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 폐기물이동에 관한 결정,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등 수개의 핵심규범의 수락여부가 가장 중요함. OECD규범은 법적의미가 있는 이사회의 결정(Decision of the Council), 이사회의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협정(Agreement signed by Organization)이 있으며, 정치적인 준수 의무가 있는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s), 약정(Arrangements), 지침(Guidelines)이 있음. 현재 OECD 규범수는 총 167개로서, 이중 농업규범은 12개(결정 9, 권고 3)임. 12개 농업규범을 내용별로 구분하면 7개는 종자의 품종인증과 이동통제에 관한 규범이고 4개는 과채류와 트랙터의 표준제도운영과 관련된 규범이며, 나머지 1개는 도시근교지역 농업의 역할에 관한 규범임.

— 〈OECD 농업규범〉 —

【결정(decision) : 9】

- (1) 농업용트랙터의 공인시험을 위한 OECD표준코드 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7)53 Final]
- (2) 국제무역에서 채소종자 이동통제를 위한 OECD제도 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C(71)31 Final]
- (3) 국제무역에서 사탕무 및 사료용 무종자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8)66 Final]
- (4) 국제무역에서 옥수수종자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C(88)67 Final]
- (5) 국제무역에서 목초 및 유지종자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8)67 Final]

- (6) 국제무역에서 곡물종자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8)69 Final]
- (7) 국제무역에서 서브터레니언 클로버 및 유사종자의 품종인증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88)70 Final]
- (8) 국제무역에서 산림번식자원 이동통제를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C(74)29 Final]
- (9) 과채류의 국제표준적용을 위한 OECD제도 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C(92)184 Final]

【권고(Recommendation) : 3】

- (10) 과채류의 국제표준적용을 위한 OECD제도하에서 신선과채류의 상표 부착과 증명표시를 위한 일반규정에 관한 이사회 권고[C(72)100 Final]
- (11) 과채류의 국제표준적용을 위한 OECD제도하에서 신선 또는 냉장 과채류의 국제수송을 위한 포장표준화에 관한 이사회 권고[C(76)124 Final]
- (12) 도시근교지역의 계획과 관리에 있어서 농업의 역할에 관한 이사회 권고[C(79)18 Final]

Actionable Subsidy(조치가능보조금)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제5조에 따르면 보조금이 타회원국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경우(타체약국의 국내산업에 피해, 양허혜택의 무효화.침해, 타체약국에 대해 심각한 손상), 수입국의 문제제기와 DSB의 결정에 따라 수출국은 보조금을 철회해야 하며, 수입국은 필요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음. 기존 GATT 협약은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상계조치 부과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개정 WTO협정은 상계조치 이외에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록 강화하였음.

Ad Valorem Duties(중가세)

물품의 가격, 즉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표시)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세계의 섬유류 교역은 일반 공산품이면서도 GATT의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벗어나 섬유류에 관한 다자간 협정(MFA; Multi-Fiber Arrangement)과 MFA협정에 따른 양국간 쿼타협정에 의해 규율되어 왔음.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될 동 협정이 3-4년 주기로 계속 연장되어 선진국이 자국 시장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자, 개도국들로부터 MFA 철폐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됨. UR협상의제 채택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자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를 넣을 것을 주장하자 개도국들도 섬유류를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여 협상의제에 포함됨. 금번 WTO섬유협정은 MFA를 철폐하고 섬유류 교역을 GATT 체제로 복귀시켜 자유로운 섬유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푼타 델 에스테 각료회의시 섬유류분야를 GATT 규칙 및 규율에 입각하여 GATT에 통합하여 교역을 보다 자유화하기로 선언, 금번 최종협정은 1) MFA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섬유류를 단계적으로 일정기한내에 GATT에 복귀시키고 2) 일단 GATT에 복귀된 품목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없으며, 3) 복귀과정에 규제가 계속 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쿼타 증가율을 인정한다는 것 등을 기본골격으로 세부 복구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WTO 섬유협정의 타결에 따라 그동안 GATT 체제밖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섬유류 교역이 단계적으로 GATT 체제내에 복귀되게 되었으며, 따라서 WTO 섬유 및 의류협정은 이러한 잔존기간동안 적용될 한시적인 규정임. 현행 MFA협정이 GATT에 완전히 복귀되는 시한은 협정 발효후 120개월(10년)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Agreement on Agriculture(농업에 관한 협정)

GATT체제하에서는 농산물교역은 식량안보 등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동안 가트의 자유무역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여 왔음. 60년대 이후 세계각국은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농업을 보호하고 농업생산을 장려하는 등 자급자족정책을 적극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식량수입국인 EU까지도 수출국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음. 80년대 들어와 세계농산물시장은 과잉생산과 개도국들의 농산물 수입감소 등으로 구조적 과잉공급이 발생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농산물교역질서의 왜곡현상과 재정적자 확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였음.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UR출범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도하에 농산물교역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수출국들의 수출보조금 감축과 수입국의 무역장벽 완화 및 시장개방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음. 농산물협상은 크게 ① 시장개방 ② 국내농업보조 ③ 수출보조 ④ 동식물검역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약속을 요구하게 되었음.

〈농업협정의 주요내용〉

시장개방

-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
 - 농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에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 TE)로 전환함으로써 관세 또는 관세상당치에 의해서만 농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관세 및 관세상당치의 단계적 인하
 - 모든 농산물의 관세 및 관세상당치를 1995-2000년(이행기간) 중 평균 36%를 감축(품목별 최소 15%감축)하되 매년 동일비율로 균등 감축토록 함.

- 개도국은 1995-2004년 기간중 평균 24%(품목별 최소 10%)를 감축
- 최소시장접근(MMA) 및 현행시장접근(CMA) 보장
 - <최소시장접근>
 - 현재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이행기간중 총소비의 3-5%를 최소수입량으로 정해 수입하되 동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세율 또는 양허세율을 적용함.
 - <현행시장접근>
 - 현재 3% 이상 수입되는 품목은 현행물량 이상으로 수입을 보장함.
- 특별 세이프가드
 - 관세 및 관세상당치 인하 등 시장개방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특정 품목의 수입물량이 기준이상으로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의 급락으로 내외가격차가 급격하게 축소되 국내 농민에게 피해가능성이 있을때 농업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관세부과가 허용됨.

국내보조분야

- 보조금을 허용보조금과 감축대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국내보조는 '95년부터 6년간 20%(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함.
- 농산물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며, 공공재에 의한 지출로서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됨.
 - 정부의 일반서비스(연구사업, 병충해방제, 유통 및 판매촉진 등)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시장가격에 의한 구매, 방출경우에 한함)
 - 저소득층에 대한 식량보조 및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한 직접소득보조, 환경보전 및 낙후지역을 위한 보조, 탈농지원, 휴경보상, 또는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 감축방식은 감축대상정책으로 인해 농민에게 수혜된 보조총액인 총 감축대상보조액(Total AMS ;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을 측정하여 이를 일정기간동안 점진적으로 균등 감축함.
 - 품목별 또는 특정보조금별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업보조액을 계산하여 총액을 감축하여 나가는 것임.
 - 뿐만 아니라 품목별 보조액이 해당품목 생산액의 5%이하 또는 품목불특정 보조액이 5%이하인 경우에는 AMS 계산에서 제외하여 감축의무면제(개도국은 10%이하)
- 국내보조에 관한 감축이행 약속에 따라 국내보조정책을 운영하는 한 당해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상계관세협정 등에 근거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

수출보조분야

-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95년부터 6년간 재정지출기준으로 36%, 물량기준으로 21%를 감축토록 함(개도국은 10년간 24% 또는 14% 감축)
- 구체적인 수출보조금의 유형으로 농산물 수출관련업체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 정부재원을 통한 수출보조 등 6개 유형을 제시
 -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합의될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함.
- 수출보조금과 관련, 우회적인 수출행위나 국제식량원조, 가공품에 대한 보조한도 등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수출국의 인위적인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도 규제하고 있음.
- 수출보조에 관한 감축이행약속에 따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한 당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 근거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없음.

위생 및 검역분야

- 지금까지 각국이 위생 및 검역조치를 자의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수입제한적 조치가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따라서 위생 및 검역협정은 이러한 농산물 무역상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수입제한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 하기 위하여 별도의 SPS협정을 성립시켰음.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새로운 세계무역기구 설립 및 동기구의 제도적, 절차적 구조를 명시한 핵심적 내용으로 UR 협상결과를 반영하는 WTO구조,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부속되는 4개의 부속서에는 상품교역,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nnex 1 A, B, C)과 분쟁해결절차(Annex 2), 무역정책검토(Annex 3), 복수국간 협정(Annex 4)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상품관련 다자간 협정에는 농업, 위생, 섬유, 기술장벽, 투자, 반덤핑, 관세평가, 선적전검사, 원산지규정, 수입허가절차, 보조금.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등 12개 협정이 있음.

Agricultural Subsidy(농업보조금)

WTO 농업협정상 보조금은 국내보조와 수출보조로 구분되며 동 협정상의 보조금 규정은 여타 협정상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한 그개념도 통상적인 보조금의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보조의 경우 그 규율대상이 일반적인 재정지출에 의한 지원보다 광범위한 실질적인 지원(Support)의 개념임. 그 이유는 WTO 농업협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내보조는 불특정 다수 농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하부구조 개선사업등 정부서비스정책,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감축대상 보조의 시장가격지지 지원액도 보조

지출이 아닌 [(관리가격 - 외부참조가격) × 지지물량]으로 산출하는 등 정부의 개입을 통한 전체 보호효과를 보조지원액으로 산출하도록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부문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도 농업협정의 적용대상으로 해석된다. 국내보조는 허용대상 정책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아니한 모든 보조는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 아울러 허용대상보조의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서비스 정책”과 농민에 대하여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징수를 감면하여 혜택이 주어지는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불정책”으로 나누어짐. 또한 수출보조금은 감축을 해야 할 보조를 6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며, 감축약속을 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 또는 이러한 보조금 감축약속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의 수출보조를 금지하고 있음. 수출보조도 재정지출에 의한 직접보조 뿐만 아니라 공공재고의 저가판매, 운송비의 할인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정상외의 보조금 규율의 이해는 징수감면, 금융지원, 정부수매를 통한 농산물 가격에 대한 개입 등 광의의 재정정책에 의한 개입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의 산출은 협정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산출토록 함으로써 단순한 재정지출의 개념과는 상이한 것임.

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보조총액측정치)

AMS(보조총액측정치)란 WTO 농업협정상 농업보조정책 수준을 계량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특정농산물에 제공된 보조 또는 농산물 생산자 일반을 위하여 제공된 품목불특정적인 보조로서, 화폐단위로 표시된 연간 보조수준을 의미한다. 단, 이 협정 부속서 2의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는 제외된다. AMS는 감축대상이 되는 품목별, 지원정책별 보조금 계산방법과 산출된 보조금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임. 감축기준 AMS의 산출내역은 양허표의 보조자료로, 앞으로 이행과정에서 매년 계산되는 AMS는 매년 WTO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Amber Box(감축대상 농업보조)

WTO 농업협정상의 농업보조금 분류방식으로 허용보조금(Green Box)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WTO 농업협정 이행기간내에 일정목표수준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음. Non-exempted Domestic Support(감축대상국내보조), Red·Amber·Green light(신호등분류방식)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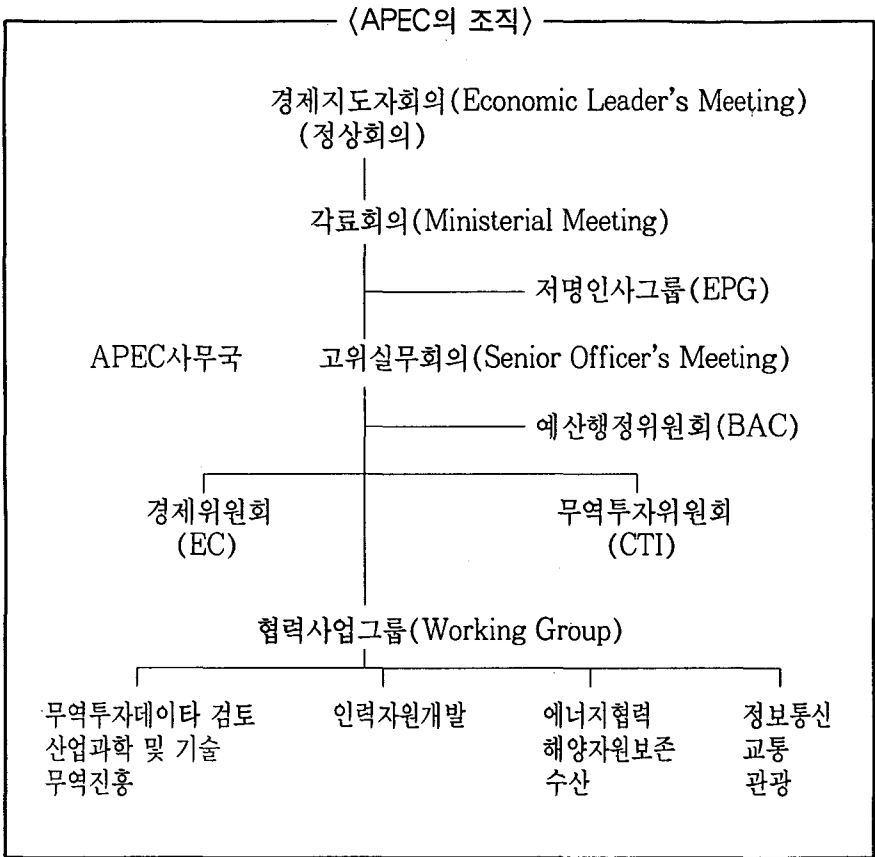
Anti-dumping duties(반덤핑관세)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함. 그동안의 각국 반덤핑 제도의 근거가 되어온 국제 반덤핑규범(GATT 제6조 및 반덤핑 코드)의 불명료로 반덤핑 조치의 남용사례 발생을 야기하였으며 덤핑사실 및 피해유무에 대한 판정, 조사개시 및 실시, 덤핑마진 산정, 반덤핑 관세의 종료기한 등 주요분야에서의 추상적 표현 또는 규정결여로 각국의 자의적인 해석 가능했었음. 선진국들의 반덤핑 규제 남발로 큰 피해를 입었던 우리나라와 같은 주요 수출국들은 UR 협상 과정에서 각국의 반덤핑 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새로운 반덤핑 규범 도입을 적극 지지하였던 반면 선진수입국들은 기업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우회덤핑 등 새로운 기업 관행에 대해 현행 반덤핑 규범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UR협상에서는 이러한 주요수출국과 수입국들의 상반된 입장을 절충하여 기존 협정을 보다 명료화 하고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제도는 1904년 캐나다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오늘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각기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은 1960년대말 이래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1980년대초 PECC(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를 기원으로 하여 '70~'80년대 아·태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지속적 경제활력유지 및 심화되는 상호 의존관계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제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상호협업 및 공동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89년 1월 호크 호주수상이 아·태지역 경제협력기구 창설제안, '89년 11월 개최된 제1차 APEC 각료회의(캔버라)에서 설립되었음. 그동안 APEC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89. 11. 제1차 아·태 각료회의(호주 캔버라) : 한국, 미국, 일본 및 ASEAN 6개국 등 12개국 대표 참가
- 1990. 7. 제2차 각료회의(싱가포르) : 각료회담 정례화에 합의
- 1991. 11. 제3차 각료회의(서울) : 중국, 대만, 홍콩 신규 가입 : APEC의 원칙, 대상, 조직 등을 규정
- 1992. 9. 제4차 각료회의(방콕) : 싱가포르에 상설 사무국 설치 합의 (1993년 2월)
- 1993. 11. 제5차 각료회의 및 제1차 정상회의(시애틀) :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신규 가입 : EU에 UR 합의 촉구
- 1994. 11. 제6차 각료회의 및 제2차 정상회의(보고르) : 칠레 신규 가입으로 모두 18개 회원국 : 자유화 완료 시한을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으로 합의한 보고르 선언 발표
- 1995. 11. 제7차 각료회의 및 제3차 정상회의(오오사카) : 보고르 선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Action Agenda)을 채택하는 오오사카 선언발표 ; 무역자유화의 대상은 국가별 경제발전 수준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신축성' 부여하기로 합의



우리나라는 '89년 출범당시 호주와 함께 APEC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각종 APEC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으며, '91년 제3차 각료 회의를 서울에 유치하여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역내의 주요경제지역인 중국, 대만, 홍콩의 가입을 성사시켜 APEC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음. '93년 시애틀 지도자회의에서 제2차 APEC 지도자 회의 개최를 제의, 연례화시킴으로써 APEC 강화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94~'95년 CTI 의 장국으로서 자유화 및 경제협력과제에 대한 세부분야별 구체적 활동계획 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음.

Appellate Review(상소검토)

WTO 분쟁절차상 상소는 제3국이 아닌 분쟁당사국만이 패널의 결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음. 일방당사국에 의한 상소의사의 공식적인 통보일로 부터 상소기구에 의한 판정일까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보고서 제출예정일을 서면으로 DSB에 제출하여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소는 패널보고서상의 법규 및 패널에서 제기된 법률해석에만 국한되어야 함. 상소기구의 검토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분쟁당사국의 참여없이 이미 제공된 정보 및 진술을 기초로 작성됨. 상소보고서에 기록되는 개별구성원의 의견은 익명으로 하며 상소기구는 패널의 결정사항 및 결론을 지지,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음. 상소보고서는 DSB가 채택하지 않을 것을 총의에 의해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들에 배부된 후 30일 이내에 채택됨.

ARP(Acreage Reduction Programmes ; 경작면적감축계획)

미국의 밀, 사료용 곡물, 면화 및 쌀 등의 생산농가가 생산보조정책으로 지급되는 가격지지 및 보조금 수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경작면적 감축계획에 참여하여야 하며, 경작면적감축은 농산물 잉여의 방지 및 감축을 위해 농무부가 이전의 기준경작면적에 따라 계산하여 매년 공포함. 1996년 개정된 농업법(Farm Bill)에서는 폐지되었음.

Article 8 Nation of IMF(IMF 8조국)

IMF규약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승인한 나라를 의미한다. IMF는 각국간의 환결제에 대한 제한 및 차별대우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여 자유롭고 안정된 국제적 환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동 규약 제8조에 일반적 의무로서 ① 동 기금의 승인없이 경상적 지급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을 것 ② 타국에 대하여 차별적인 통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③ 통화의 자유교환성을 확대할 것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는 국제간의 자유로운 환거래 관계의 유지에 협

조하고 있는 나라를 IMF 8조국이라 하며 14조국과 구별하고 있음.

Article 11 Nation of GATT(GATT 11조국)

수량제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GATT 11조를 수락한 국가를 말하며 선진국들이 이 범주에 속함.

Article 18 Nation of GATT(GATT 18조국)

생활 수준이 낮고 개발초기에 있는 나라는 GATT 18조에 관세양허의 수정, 철회가 인정되어 있는 외에,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도 인정되고 있는 바 이 조항을 채용하는 국가를 GATT 18조국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이 범주에 속한다.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태국·필리핀·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브루나이·베트남으로 조직된 정치협력체.

Automaticity(자동성)

WTO 분쟁해결기구의 패널설치, 위임사항, 패널의 구성 및 패널보고서 채택 등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자동적인' 시간적 진전으로 확정되는 개념을 말하며, 종전의 GATT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는 단계별로 엄격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등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었음.

Automatic Import Licensing(자동수입허가)

자동수입허가란 수입신청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수입승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WTO수입허가절차 협정에 의하면 회원국이 별도의 다른 적절한 수입허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자동수입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도입여건이 지속되는 한 자동수입허가는 유지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자동수입허가절차는 자동수입허가

의 대상인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규제효과를 가지는 방법으로 운용되어서는 않되며, WTO 수입허가절차협정 2조에 따르면 자동수입허가란 다음 요건에 일치되는 경우 신청에 대한 승인이 모든 경우에 있는 것으로 봄.

- 모든 개인, 회사, 기관에서 동등한 자격을 부여할 것
- 허가신청서는 상품통관 이전의 모든 근무일에 제출 가능할 것
- 허가신청서는 적절한 경우 이에 대한 승인이 가능한한 즉시, 최대한 10근무일 이전에 승인될 것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수출입공고에서 수입자동승인 품목과 제한승인품목을 정하고 있음.

[B]

Bangkok Agreement(방콕협정)

방콕협정의 정식명칭은 유엔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정이며, 현재 회원국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쉬, 라오스이며 한국이 동 협정을 주도하고 있음. 방콕협정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통한 ESCAP 역내 개도국간의 무역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WTO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유엔과의 관계에 의해 WTO체제하에서도 용인(79년 GATT 총회)되는 개도국간 무역특혜협정임. 동 협정은 '76. 6월부터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여 회원국간 R/O방식에 의해 진행되어 1차 라운드는 '75. 7월 방콕에서 타결되었으며, 2차 라운드는 '90. 5월 방콕에서 타결되었고, 중국 가입협상이후('96 하반기중) 3차 라운드가 예정되어 있음.

Base Total AMS(기준총보조총액 측정치)

WTO 농업협정상 기준기간동안('86-'88) 제공된 총감축대상보조액으로 국내보조 감축의 기준이 됨. 우리나라의 경우 Base Total AMS는 17,186억원임.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수은, 카드뮴 등 47종의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불법교역 및 처리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무역관련 환경협약, 우리나라는 '94. 1월 가입하였음.

Bilateral Negotiation(쌍무협상)

UR협상처럼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협상을 하는 다자간협상과는 달리 이해 관련 당사국 두나라가 벌이는 통상협상을 말함.

BISD(Basic Instruments and Selected Documents)

GATT의 공개된 문서시리즈로써 BISD 시리즈의 Volumes 2(개정), 3 및 4는 GATT의 본문을 수록하였다. Volume 2와 연간 증보판(Supplements)은 GATT활동의 이해에 필요한 법적 문서, 결정 및 보고서 등을 수록하고 있음.

Blair House Accord(블레이하우스합의)

1990년 12월 브뤼셀 회의 결렬이후 담보상태에 있던 UR협상은 1991년 연말타결을 목표로 각국간의 집중적인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1991년 12월 20일 GATT 던켈사무총장에 의해 독자적으로 최종협상초안(Draft Final Act)이 제시된 후 1992년으로 이어졌다. 최종초안(DFA)이 배포된 후 한국을 비롯한 EC, 일본 등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규정된 던켈초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표명하면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와 최종안이 각국의 합의없이 도출되었다는 제약으로 인해 1992년 1월 13일 개최된 TNC회의에서 향후 협상은 최종안을 기초로 하며 시장접근 그룹, 서비스 그룹, GATT규범 그룹, 협정초안 수정그룹 등 4원 협상체제(Four Track Approach)로 진행할 것에 각국이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2월부터 공산품분야의 시장접근 양허협상(Track 1), 서비스 양허협상(Track 2), 규범법제화작업(Track 3)에서는 협상이 일부 진행되었으

나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는 미·EC간 협의가 전혀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협정초안 수정협상(Track 4)은 개최되지 못했다. 이러한 교착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1992년 7월 6~8일 뮌헨에서 개최된 G-7정상회담에서 협상타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대를 걸었으나 메이저(Major) 영국수상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고 연내타결에 노력한다는 원칙에만 합의를 보는데 그쳤다.

또한 던켈초안 제시이후 곧 타결의 실마리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하에 재개된 1992년 UR 협상은 유럽각국의 EC통합조약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 미국의 대통령선거전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등 국내정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막후접촉을 통해 미·EC간 견해차가 많이 좁혀져 왔고, 미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모든 국가가 1992년도 말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협상의 원동력을 완전히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각국은 협상타결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에 따라 10월에 접어들어 협상 양대 세력인 미국과 EC는 수차례 걸친 각료회의와 고위실무회의 등을 통해 UR 농산물협상의 쟁점사항을 강도있게 토의해 나갔으며, 마침내 11월 20일 워싱턴에서 부시대통령과 메이저수상이 동시에 미·EC 쟁점해소합의(블레이하우스 협정)를 발표함으로써 그 동안 교착상태에 놓여 있던 UR협상에 대한 타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1992년 11월 20일 타결된 미·EC간 합의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국내보조감축은 품목별 AMS감축방식에서 Total AMS감축방식으로 전환하면서 EC의 공동농업정책의 주요골격인 생산통제하 직접보조를 허용대상화하였고, 둘째, 세계농산물 무역질서를 가장 저해하는 정책으로 인식되어 온 수출보조의 물량감축목표를 24%에서 21%로 축소하였다. 또한 미·EC간 분쟁의 불씨로 부각된 유지작물(Oilseed) 문제의 경우는 EC의 동작물에 대한 보조금지원 생산면적을 초기년도에 15%에서 매년 10%씩 줄여나가겠다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

〈단켈 최종초안과 미·EC간 합의사항 비교〉

구 분	단켈최종초안	미-EC간 합의사항
<p>시장개방분야</p>	<p>예외없는 관세화 3%→5% 중량 1986~88기준년도 수입수준보장 1993년부터 6년간</p>	<p>단켈 초안 수용 단켈 초안 수용 단켈 초안 수용 1994년부터 6년간</p>
<p>국내보조분야</p>	<p>공통기준 및 정책별 세부기 준 충족하 허용화 제시</p> <p>1993년부터 6개년 품목별 감축을 원칙으로 함 (Product Specific AMS)</p>	<p>EC의 생산제한하 직접보조 의 허용화 미국의 부족불지불제도의 허용화 1994년부터 6개년 모든 감축대상보조를 합계하여 감축(Total AMS)</p>
<p>수출보조</p>	<p>재정지출 36%와 물량기준 24% 동시감축 1993년부터 6년간</p>	<p>재정지출 36%, 물량기준 21% 동시감축 1994년부터 6년간</p>
<p>보호수준재조정문제</p>	<p>(Rebalancing) 불인정</p>	<p>불인정원칙하에 사료곡물 대체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 우 미·EC간 협의</p>
<p>분쟁해결절차규정</p>	<p>(Peace Clause) 일방적 보복조치 자제</p>	<p>일방적 보복조치 금지</p>
<p>Oilseeds 분쟁</p>	<p>UR의제가 아닌 기존 GATT규 정상 분쟁으로 인식</p>	<p>EC의 보조대상 생산면적 감 축에 합의 - 초기년도 15% 감축 - 차기연도부터 10%씩 추가감축</p>

Blue Box(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지불)

농업협정에는 농업생산을 축소하는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두가지의 보조정책을 인정하고 있음. 하나는, 허용보조에서와 같이 3년이상 상업적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의 휴경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생산계획하의 직접지불임.

농업협정은 생산제한 계획하의 직접지불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감축이행을 면제하고 있음.

〈WTO농업협정 제6조5항〉

5. 가. 아래의 경우 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은 국내보조 감축약속 대상에서 면제된다.

- (1) 이러한 지불이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또는
- (2) 이러한 지불이 기준 생산수준의 85%이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 (3)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나.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직접지불에 대한 감축약속의 면제는 회원국의 현행 총 감축대상보조액을 계산할 때 직접지불액을 제외시킴으로써 반영된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전체 협상 참여국간 협의를 통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고 미국과 EU가 이해의 대립상황을 최종단계에서 정치적으로 타협(Blair House Agreement)한 결과로 반영된 것이며 UR이행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임. 다만 감산을 전제로, 즉 정부지원을 통한 생산장려와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감축면제의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3가지 면제기준은 미국의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혁계획에 반영된 감산보상제(Compensatory payments)를 반영한 것으로서, 허용보조인 휴경보상과의 차이점은 반드시 3년 이상의 휴경이나 가축의 항구적인 처분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생산제한을 실시하는 전제하에 매년도 사업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생산제한이 어떻게 어느 정도 실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시행상 융통성이 있는 제도임. 다만, 이러한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WTO 농업위원회 통보 대상이며 타당성 여부가 점검될 것임. 이와 같은 직접지불은 또한 감축의 기준보조(Base AMS)에는 산입되어 있으나 이행기간 지원년도의 AMS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기존에 이러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해온 국가는 사실상 국내보조 감축을 위한 정책조정의 필요가 없게 되었음.

Bogor Declaration(보고르 선언)

'94. 11. 15, 인도네시아 Bogor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정상회의시 채택된 선언으로 APEC 역내 무역자유화 목표년도를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으로 채택, UR합의사항 이행의 가속화 및 UR결과의 심화, 확대, 보호수준을 협상에서 동결하고 새로운 보호조치의 증대 금지(standstill), APEC 무역 및 투자 활성화(facilitation) 프로그램의 확대,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보완하는 자발적이고 consultative한 분쟁 조절 서비스 창설가능성 검토 등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보고르 선언의 성과로는 역내 무역자유화 목표년도(2020년) 등을 포함한 보고르 선언 채택으로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비전실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APEC 국가간 인력자원, 교통, 통신, 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협력 등 역내 인프라 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WTO의 차질없는 출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세계무역체제 강화·발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APEC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을 약속하였음을 들 수 있음.

BOP Article(Balance of Payment Article : 국제수지보호조항)

GATT는 원칙적으로 수량제한을 금하고 있으나 GATT 제12조는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만약 수량제한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무차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국제수지의 어려움 이유로 무차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다. 한편 제18조 B항에서는 개도국의 BOP문제만을 특별히 다루고 있다. 이는 GATT 회원국들간에 BOP문제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분야였던 만큼 참가국들 사이의 여러가지 타협을 반영하고 있다. GATT 제12조는 수량제한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자국의 대외 자금사정과 국제수지방어 목적을 기본내용으로 하여 이 조치는 자국의 통화지급준비의 현저한 감소를 저지하거나 혹은 통화지급준비가 현저히 낮은 경우 동 통화지급준비의 합리적인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로 선진국과 수량제한 실시에 적용되고 있음. 1955년 GATT 조항이 수정되기 전부터 제18조는 개도국의 GATT의무이행 이탈을 허용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특정산업의 발전이라는 목적과 GATT의 사전승인이라는 전제조건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도국의 비판대상이 되어 1955년 GATT 제18조를 수정하여 개도국들에게 있어 국제수지상의 곤란은 경제개발 그 자체에서 연유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 어떤 체약국이 제18조 4(a)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 원한다면 제18조 B항의 발동권리를 가지게 되며 제11조의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원한다면 제12조를 사용할 권리도 가짐. 우리나라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등 142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제한 해 왔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면서 개도국으로서는 최초로 지난 '89. 10월 BOP조항을 졸업하고 '97. 7월까지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은 개방기로 약속하였으나 쇠고기는 UR 협상을 통해 2001에 자유화하기로 하였음.

Border Protection(국경보호)

UR농산물협상에서 국내보조.수출경쟁과 함께 3대과제로 다루어졌던 국경보호는 국제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모든 비관세조치등 자유로운 국경통과를 제한하고 있는 일체의 수입제도를 의미함.

Bound Tariffs(양허관세)

다자간 협상과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관세부과를 할 수 없게 됨. 불가피하게 양허관세를 올리려 할 경우 해당품목의 주요수출국의 양해가 필요하며 이때 양국간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수단등이 논의됨.

Brussels Ministerial Meeting(브뤼셀 각료회의)

1990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브뤼셀 각료회의는 107개 UR협상참가국중 95개국 및 5개 국제기구로부터 각료 117명을 포함 약 1,500명의 대표와 취재기자단 1,500명, 로비스트 1,000여명 등이 참가함으로써 통상관계로는 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였다.

당초에는 이번 각료회의를 통해 UR협상을 완전히 종결짓는다는 계획이었으나 제네바에서 진행되어온 사전 절충과정에서 특히 농산물 분야의 주요쟁점에 대한 타결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당초 본 회의가 지닌 성격을 바꾸어 회의기간 중에는 핵심 쟁점에 대한 정치적 결정만 내리고 기술적 사항은 추후 실무협상을 더 연장함으로써 UR협상을 종결한다는 방침하에 회의가 개최되었다.

4차에 걸친 비공식각료회의(Green Room회의)에도 불구하고 브뤼셀 각료회의가 결렬 위기가 대두되자 12월 6일 헬스트롬(Helleström) 그린룸회의 의장은 자신의 책임하에 타협안을 마련하고 이를 비공식 문서(Non-Paper)로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그 직후 개최된 제4차 농업협상그룹 그린룸회의에서는 이 비공식 중재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소극적인 협상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이를 협상의 기초로 채택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EC는 강력한 유보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한국, 일본 등 수입국들도 불만을 나타냄으로써 결국 협상의 기초로 채택하는데 실패하였다.

브랏셀 각료회의를 통해 농업협상 그룹의 타결이 전체 UR타결의 전제조건임이 재부각되었으며, 농업분야의 경우 비단 무역관련 국경조치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국내농업 정책까지도 협상대상으로 하고 있어 UR농업협상의 결과가 처음부터 우려되어 오던 것이지만 브랏셀 회의를 통해 그같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UR협상의 타결을 위해서는 당초 자신들이 세웠던 협상목표를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본 각료회의를 통해 협상 결렬의 파국은 피하고 협상을 연기하게 되었다.

BTL(Base Trigger Level ; 기초발동수준)

Trigger level(발동수준) 참조

[C]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 공동농업정책)

1957년 당시 로마조약에 의해 창설된 구주경제공동체(EEC) 각 회원국들은 경제공동체를 모색하는데 있어 고용측면의 농업의 중요성 인정, 농업부문의 소득향상 필요성 인정, 농업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개별적 개입으로는 공동시장의 목표달성이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농업분야에 공동농업정책(CAP)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기본 운용원칙으로 농산물의 단일시장형성, 역내농산물우선, 공동재정부담 원칙을 채택하였음. 단일시장형성을 통해 회원국간 관세 및 교역제한을 철폐하고 공동가격, 공동품질기준을 적용하며, 역내우선원칙에 따라 시장개입, 수출환불제 등을 통해 역내 농산물가격지지 및 판로를 확보하고 가변과징금 부과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며, 공동재정부담원칙에 따라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 ;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음. 공동농업정책의 도입으로 EU는 당초

목표로 삼았던 생산성향상, 식량의 안정적 공급체제 구축 등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하였으나 농산물 가격을 높게 지지한 결과 소비증가를 능가하게 되어 1980년 이후부터는 과잉문제가 대두되었음. 한편 농산물 과잉으로 인한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중 수출보조 및 가격보조, 저장비용 보조등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수입농산물의 감소로 인해 수입관세 및 부과금 징수액이 감소하여 EU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 EU는 가변부과금 및 수출보조금 등에 힘입어 세계농산물시장에 본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킴에 따라 여타 주요농산물 수출국들이 EU의 수출보조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통상마찰을 일으켰음. 이와 같이 가격 지지를 위주로 한 공동농업정책은 주로 농산물의 과잉공급을 초래하여 1970년대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조치가 시행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곡물과잉공급상태가 되어 농산물가격도 하락하여 재고증가 및 농업예산증가로 EU의 공동농업정책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됨. 1988년 제1차 공동농업정책 개혁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잉, 예산과다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재고처분을 위한 수출보조금 지급확대 등은 주요 수출국들과의 무역마찰로 이어져 UR 농산물협상의 타결여부가 EU의 농업보조금감축과 연계되어 진행되어 결국 UR농업협정은 EU로 하여금 수출보조금을 양허토록 하여 더이상 세계시장에 과잉농산물을 덤핑수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총보조금에 대한 감축약속제시로 EU의 가격지지에 제한을 가하게 되었음. 이와 같이 UR 농산물협상의 타결은 농산물 과잉, 예산압박, 소비자의 농산물가격 인하요구 등 EU의 공동농업정책을 둘러싼 역내 개혁 필요성과 역외의 개혁요구가 일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Cairns Group(케언즈 그룹)

농산물 수출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미미한 보조만을 지급하는 국가그룹으로서 1986년 호주의 동북구 케언즈(Cairns)라는 도시에서 공식 결성되어 케언즈그룹이라고 함. 회원국은 호주를 위시하여 뉴질

랜드,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피지, 헝가리 등의 14개국이나 피지가 UR농산물협상에서 거의 자국의 제안을 내놓지 않은 관계로 13개국으로 보기도 함.

CCC(Customs Cooperation Council : 관세협력이사회)

세계제2차대전 이후 유럽지역의 여러나라는 경제통합화를 위한 제1단계 조치로서 관세동맹의 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1947년 유럽경제협력위원회의 일부 국가는 유럽관세동맹의 설립을 위하여 유럽관세동맹연구단을 설립, 경제위원회와 관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각 경제문제와 관세기술상의 문제를 연구하였음. 경제위원회는 OECD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작업이 중단되었으나 관세위원회는 관세기술상의 제문제를 연구한 성과를 기초로 세계적인 규모의 관세기술협력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1952년 11월 관세협력이사회(CCC)의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 발표시켰음. CCC는 각국의 관세행정제도를 고도로 통일화하고 조화시켜 제반의 관세법규를 개선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관세제도,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 여러분야에서 필수적인 국제기구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CCC에 1968. 7월 가입하였음.

CCC(Commodity Credit Corporation ; 상품신용공사)

CCC(상품신용공사)는 미국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미국 농무성(USDA)산하에 있다. 상품신용공사는 농가소득과 가격의 안정, 지원 및 보호를 위해 1933. 10월 Dalaware 강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그후 1948. 7월 상품신용공사 설립강령법(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harter Act)에 의해 재설립되었다.

수정된 상품신용공사 설립강령법에 따르면, 상품신용공사는 융자, 구매, 보상 및 기타 활동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물자를 지원하며, 또한 다른 정부기관이나 외국정부에게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국내·외국·국제구호기관에게 식량원조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상품신용공사는 이사회 의장과 이사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농무장관의 일반적인 지휘·감독하에 있는 이사회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사회는 농무장관외에 7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는 상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명한다. 모든 이사회의 구성원이나 공사의 직원들은 농무성 직원임. 상품신용공사는 소속운영직원이 없으며, 공사의 가격지원, 보관, 비축 및 전환사업이나 가격지원상품의 국내 구입 및 처분은 연합농가지원처(Consolidated Farm Service Agency : CFSA)의 시설과 인력을 통해 수행되며, 상품신용공사 통제하의 비축물량의 수출 및 외국지원 업무는 해외농업지원처(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FAS)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CCC의 품목별 지원계획의 기본구조와 운영요령은 「1996연방농업개혁법」(The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 : the Farm Bill)에서 정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품목별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품목지원계획에는 밀, 옥수수, 면화, 쌀, 담배, 우유 및 낙농품, 보리, 귀리, 수수, 땅콩, 설탕이 포함됨. 대부이자율(loan rates)은 해당품목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설정되며, 목표가격(target price)은 생산비를 반영하여 설정됨.

농가소유곡물비축계획(grain reserve programme)은 농민들로 하여금 지정된 농산물의 재고가 국내나 수출수요보다 많은 때에는 비축했다가, 재고가 줄거나 가격이 유리할 때에 방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유 및 낙농품에 대한 지원은 버터, 치즈 및 무지방 건조우유를 가공업자나 처리업자들로 부터 구입하여 줌으로서 수행되며, 낙농품을 제외하고는 농산물 가공제품에 대한 CCC지원계획은 없다.

품목별지원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CCC는 비축된 물자를 인수(take-over)하거나, 구매(purchases)하는 방식으로 취득한다.

한편 CCC는 특정한 상황하에서 품목별지원계획이나 민간비축을 통해 구입될 식량을 연방,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에게 지원하는 국내 식량원조

계획도 수행한다.

또한 CCC는 판매, 수출업자 보전, 직접금융 및 기타 업무수행을 통해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제식량원조 및 지원계획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산 농산물의 수출을 증진하는 특히 CCC는 수출신용·보증사업과 여타 수출보조사업을 위한 재정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CCC는 3가지의 수출신용·보증사업을 관리하는데 여기에는 최단기 공급자신용사업(the very-short term supplier credit programme), 단기수출보증사업(the short-term export guarantee programme), 중기수출신용·보증사업(the intermediate 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me)이 있다.

EEP(Export Enhancement Programme : 수출촉진계획)하에서 CCC는 미국수출업자에게 수출장려금을 지불하여, 수출업자들이 구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농산물을 수출대상국가에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DEIP(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me : 낙농품수출진흥계획)하에서 미국수출업자에게 수출장려금을 지불하여, 수출업자들이 구입하는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농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EEP와 DEIP계획은 수출업자에 대해 직접현금보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MAP(Market Access Programme : 시장접근계획)하에서 미농무성은 해외시장개발사업을 이행하는 자격있는 무역기관들에게 비용분담보조를 통해 미국농산물의 수출시장 확장, 유지 및 개발사업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모든 MAP계획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CCC와 비영리 농산물무역단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FAS(해외농업지원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CCC는 또한 비축물량으로 부터 수출시장에 낙농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함. 그러나 CCC는 어떠한 품목의 수입도 관여하지 않는다.

Ceiling Binding(한도양허)

한도양허는 국제간의 관세양허 방법중의 하나로서 앞으로 세율을 인상하

는 경우 특정수준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인상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임. UR 농산물협상시 특히 개도국들에게 인정된 방식으로 미양허품목에 대해 현행 관세보다 높은 세율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는 올리는 않겠다고 양허하는 것을 말함.

Circumvention(우회덤핑)

우회덤핑이란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고자 완제품대신 부품을 수출하여 수입국내에서 조립하거나 혹은 제3국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관행으로서, 우회덤핑을 방지할 경우에는 반덤핑조치가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고 국제무역질서의 존립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 다만, 우회덤핑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에는 국제간 무역의 흐름 뿐만 아니라 각국의 해외직접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가 신중하게 거론되고 있음.

Circumvention of Export Subsidy(우회 수출보조)

WTO 농업협정 제10조 1항은 제9조에서 제시한 6가지 형태의 수출보조 이외의 농산물수출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음. 이는 계량화가 가능한 수출지원을 감축대상으로 분류하여 감축해 나가는 한편, 사실상 계량화가 어려운 여타 수출지원은 금지토록 하여 감축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수출지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어떠한 보조가 우회수출보조인지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규정하고 있는 금지대상 수출보조리스트에 제시된 수출보조가 하나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①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은 국제적인 합의 규율을 정립하여 준수, ② 국제식량원조는 FAO의 국제식량원조 규율준수, ③ 기타 수출지원은 수출지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지원금지임.

CMA(Current Market Access : 현행시장접근)

WTO 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를 초과할 경우, UR 이행기간동안 기준년도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

Commercial Consideration(상업적 고려)

GATT 제17조는 국영무역기업이 수출입시 가격, 품질, 입수가능성, 시장성, 수송 및 기타 구매조건 등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구매 또는 판매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무역투자위원회)

1994년 기존의 무역투자 자유화 특별작업반을 병합하여 신설되었으며 각 APEC 회원국 차관보나 국장급이 참석,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제반 절차와 문제점 등에 대해 협의, 검토,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임기 2년의 회장을 선출하며 초대 의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중재자 역할을 중시하여 우리나라 외무차관보가 선출되었음. 매년 고위실무회의와 연계되어 3~4회 개최됨.

Commitment(약속)

교역자유화에 따라 각종 보호 및 지원조치를 구체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약속

Compensation(보상)

한 국가가 GATT협정 제19조에 의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를 취하거나 제28조에 의하여 양허세율을 인상할 경우 주요 이해 당사국에 대하여 여타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내지 자유화 등으로서 제한조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뜻함.

Comprehensive Tarrification(포괄적 관세화)

예외없는 관세화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 UR협상을 통해 각종의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관세형태로 통합시킨다는 개념

Consensus(만장일치제)

GATT이사회에서 패널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서 제소국과 피소국을 포함한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방식임.

Consultation(협의)

WTO 분쟁해결절차의 초기단계로서 분쟁의 일방당사국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관계당사국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에 응하고 30일 이내에 협의에 임해야 함.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협의 요청국은 즉시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요청은 요청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DSB 및 관련 이사회와 위원회에 통보함. 협의결과, 협의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또는 협의기간중이라도 협의당사국 모두가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이 실패했음을 인정할 경우에 협의요청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부패성 물품이 관련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에 임해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협의요청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Contracting Party(체약국)

GATT 가입국을 의미함. 체약국 혹은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이란 두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전자는 개별 체약국을 의미하고 후자는 복수의 의미로서 2개 이상의 체약국이 함께 행동할 때를 의미함.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생물 다양성협약)

1992. 6월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합의된 협약으로 생물종의 감소방지와 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협약, 우리나라는 '94. 10월에 가입하였음.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종 생물 다양성의 보전(농업 목적용 재래종 포함)과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 및 관련기술의 이전과 이들의 이용으로 인한 수혜를 세계각국이 공유하며, 자국 관할하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엔 주도하의 협약을 뜻한다. 생물 다양성이라 함은 육상, 해상 및 기타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이는 종내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말함.(농업 목적용 재래종의 가축 및 작물종자류도 포함됨)

Countervailing Measures(상계조치)

WTO 보조금 상계조치협정 제10조-23조는 보조금 지급으로 GATT 6 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산업의 서면 신청으로 상계조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여타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상계조치 제소자격은 유사상품 국내생산자 혹은 대리인, 단 제소를 찬성하는 업체들의 합계 생산량이 찬반의사를 표명한 업체들의 합계생산량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조사가 진행되며, 이 경우에도 국내 총생산량의 25% 이하일 경우 조사불가함. 조사기간은 1년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최대 18개월을 초과 금지토록 하고 있음. 보조금액은 지분참여, 정부대출, 대출보증,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 등을 『수혜자 수입개념』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보조금액이 소액(De-minimis)이거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경우(일반적으로 보조금액이 가액대비 1% 이하)와 같은 소액보조액은 상계관세부과를 배제하고 피해의 누적적 평가를 인정하고 있음. 상계관세의 효력 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Country List(국별 농업보호현황자료)

농산물그룹 의장(Dezeeuw)은 1989년 UR 중간평가이후 푼타델에스테 각료회담 및 중간평가회의 합의사항인 농산물무역자유화 또는 농업개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각국의 농업보호현황자료(Country List)를 제출할 것을 의장초안에서 요구하였다.

협상참가국들은 농산물그룹 의장초안에 따라 각국의 농업보호현황자료인 Country List를 1990년 10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Country List는 국내보조, 국경보호, 수출보조 등 크게 세 분야에 대한 현황자료임. 주요국들의 CL을 분석해 보면 각국이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보호 현황자료를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Cairns 그룹중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출국의 입장에서 비교적 의장초안에 충실하여 자료를 작성했으나 수입국들은 의장초안의 해석상의 융통성 및 문제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입국의 어려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많은 수입국들이 국내 보조금 현황자료에 있어 대부분의 농업지원정책을 NTC 목적달성, 농업개발 목적 등의 이유로 허용대상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외에도 국내 보조자료는 물론 관세상당액 자료 등에 있어 구체적 숫자를 밝히지 않고 제출된 자료들도 있었음.

한국도 식량수입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장초안을 해석하여 CL을 작성했으며, 또한 UR 농업협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농업협상 및 농산물그룹 의장초안에 반대해 온 한국의 기본적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농업보호 현황자료중 국내보조 현황자료의 경우에 AMS 계측이 가능한 품목으로 제출한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에 대한 보조금 가운데 계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감액대상보조금(정책)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모든 비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15개 NTC 품목은 관세화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지의 표명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상당액을 CL에 표시하지 않았다. 수출보조금은 미미하여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Country of Origin(원산지)

물품이 생산되었거나 가공된 지역(국가)를 의미하며 당해물품을 단순히 조립한 조립국이나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은 경유국 또는 적출국은 제외

됨. 생산활동의 다국간 전개로 인해 원산지 결정의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음.

Country of Origin Marking(원산지 표시제도)

수입물품에 대해 물품의 생산국을 부착내지 표시할 것을 의무화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 물품구매시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Credit(기여실적)

UR농산물협상에서 EC 및 일본 등이 주장한 개념으로서, 농업보호 및 지원 조치의 점진적 감축에 있어서 기준년도를 UR 출범년도인 1986년으로 하여 그 이후 자유화 이행실적을 향후 감축약속의 일부로 인정해 주는 것.

CRP(Conservation Reserve Program ; 보존유보계획)

미국의 주요 곡물생산농가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초지와 산림보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존유보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 농지소유자와 정부 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농지소유자는 10년간 농경지를 생산목적(건급 가축방목용은 허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정부의 보조금 수혜대상이 되는 것을 말함.

C/S(Country Schedule ; 국별양허표)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 수출보조감축 등에 관한 양허교환 협상결과를 각 국별로 WTO에 제출하여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로 첨부된 약속이행일정표.

CSD(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유엔지속개발위원회)

1992. 6월 리우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지속개발위원회(CSD) 설치 권고와 제47차 UN총회시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개발위원회(CSD) 설치를 결의함에 따라 1993년 2월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로 발족됨. CSD는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대기, 해양,

토양, 담수 등 39개 분야로 구성된 『의제21』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을 감시, 평가하고, 『의제21』에 관한 각국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보고서 검토와 각종 국제 협약의 체결 및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산림원칙선언』 실천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1993년 UN 경제사회이사회는 CSD의 이사국으로 한국을 비롯한 53개국을 선출한바 있음(임기3년).

CSE(Consumer Subsidy Equivalent ; 소비자 지원상당치)

CSE는 농업지원정책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 및 납세자에 대한(예를 들면 경쟁수입품에 대한 관세수입) 이전가액을 말하며, CSE는 농업보조에 의해 소비자에게 부과된 암묵적인 세금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CSE는 보통(-) 수치로 표시하며, (-) 수치가 클수록 사용자에게 대한 암묵적인 세금이나 소비자로부터의 이전가액은 커짐. CSE의 구성요소는 시장가격지지로 인한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 대한 시장가격 이전가액과 기타 농정수행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예산지출액(보조금등)등 2가지 범주가 있음. CSE계산대상품목은 PSE대상품목외에 해바라기씨, 유채, 설탕가공품, 양모가 포함되며,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순수입에 의존하는 경우에도 포함됨. [CSE = -QC(DP - WP) + OT - (QC : 소비량, OT : 소비자 보조(Consumer Subsidies)]

CTE(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 무역환경위원회)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이 인근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불경제와 관련된 비용을 세금, 벌금, 환경기준의 강화 등을 통해 오염유발업소의 비용함수에 내부화시켜야 한다는 경제학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국가간에 있어서는 경제적, 정치·사회적 요인에 따른 규제형태 및 정도의 차이로 내부화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기술수준 등 여타 생산여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생산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비교우위에 영향을 주게 됨. 따라서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무역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게 되었음. 환경규제대상은 크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과 생산공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무역규제형태는 주로 기술규제, 수량제한 및 상계관세 등으로 분류됨. 그동안 환경과 무역문제는 상호 독립적으로 접근해 왔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이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여 상호보완적(Mutually Supportive)으로 추진키 위해 상호정책간의 조정·통합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GATT, UN, OECD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었음. GATT는 '71년 11월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작업반』(EMIT ; 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를 설치한 바 있으나 유명무실하였고, '79년 동경라운드에서 최초로 『개별국가가 환경목적하에서 환경조치관련 기술규정 및 표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술장벽협정(TBT ;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채택』한 바 있음. 이후 GATT내에서는 환경관련 작업은 '90년 11월 제1차 EMIT 그룹회의가 소집되어 '91년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시작되어 ① 국제환경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조치 ② 각종 환경조치의 투명성 제고방안, ③ 환경마크, 포장요건의 무역효과 등 3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 '94년 4월 15일 UR의 최종협정문에 대한 서명을 위해 마련한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을 채택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치키로 결의하였다.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에서 환경정책과 무역과의 관계,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과의 관계 등 10개 의제를 결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① 국제환경협약 등에 의한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조치와 국제무역규범과의 관계(의제 1)
- ②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치와 국제무역규범과의 관계(의제 2)
- ③ 국제무역규범과 환경부과금, 세금, 표준, 기술규정, 포장, 재활용, la-

- bellings중 상품조건과의 관계(의제 3)
- ④ 환경관련 무역조치의 투명성(의제 4)
 - ⑤ 국제환경협약과 국제무역규범의 분쟁해결절차(의제 5)
 - ⑥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제한(의제 6)
 - ⑦ 국내적으로 금지되는 상품의 수출문제(의제 7)
 - ⑧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환경관련조항(의제 8)
 - ⑨ 서비스교역(GATS)와 환경과의 관계(의제 9)
 - ⑩ NGO참여 및 자료제공 방안

지금까지 무역환경위회의 논의는 10개 의제에 대하여 공식회의를 통하여 이해당사국별로 의견을 개진하고 WTO사무국에서 취합·분석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재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는 공식회의와 비공식회의를 개최하여 토론하고 각 의제별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토의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새로운 작업계획이 작성될 때까지 각 의제별(Items) 토의보다는 핵심 쟁점사항(Issues)에 대하여 논의가 전개될 것이며, CTE사무국은 유용하고 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UNCTAD, 유엔환경계획(UNEP) 및 다른국제기구와 협력을 증진할 예정이다.

Customs union(관세동맹)

GATT 24조에 의거하여 역내 국가들간에는 관세 및 다른 장벽들을 모두 폐지하고, 역외국가들에 대해서는 공동대외관세를 채택한 국가들 그룹.

Customs Valuation(관세평가)

관세의 과세요건은 과세물품, 납세의무자, 과세율 및 과세율표의 4개의 요소를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세액을 실제로 산출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것은 관세율(Tariff rate)과 과세표준인 바,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의 경우)이나 또는 수량(종량세의 경우)을 의미함. 즉, 종가세(ad valorem duty)의 경우에는 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이 곧 과세가격(Customs Value)이 되는 반면에, 종량세(Specific duty)의

경우에는 성질상 그 과세표준이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수입시점 등에 따라서 달리 결정됨. 이와 같이 다양한 가격(Value)중에서 일정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법률상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고 함.

수입물품의 단위당 과세표준을 수입국내 세관당국이 100달러로 보느냐, 혹은 150달러로 보느냐에 따라 관세율은 일정하더라도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GATT 규정상 관세평가의 기준은 “실제거래가격”이나 “유사상품의 거래가격” 등이 된다. 쉽게 말하면 CIF 혹은 FOB로 표시된 수출상의 송장가격(Invoice Value)이 되는 것이다. 동경라운드에서 타결된 관세평가협약은 실제거래가격을 포함하여 순서별로 6가지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세평가협약에 1981년 1월에 가입했고, 1984년 9월부터 국내법에 반영, 시행하고 있음.

Current Total AMS(현행 총보조총액측정치)

WTO 농업협정상 이행기준의 특정년도 및 그 이후에 실제로 제공된 보조를 말하며, 매년 그 산출기초자료를 이행점검자료로 WTO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CVD(Countervailing Duty ; 상계관세)

상계관세란 수출국에게 제조·생산·수출에 관하여 직접·간접으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르 받을 우려가 있을때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관세이외에 당해보조금 등의 금액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함. 따라서 상계관세가 발동되려면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됨으로써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야 함. 그 절차를 보면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인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상계관세 부과 요청에 의거, 국내산업을 실질적인

피해나 국내산업개발의 실질적 지연여부를 조사·확인하여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당해보조금금액 이하의 관세로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음.

[D]

Decoupled Income Support(비연계소득보조)

WTO 농업협정상의 허용대상보조중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형태의 보조로서, 수혜대상자는 소득, 생산자, 농지소유자여부, 생산요소사용량, 생산수준등과 같은 명백한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기준기간이후의 특정년도 생산자의 생산량 또는 생산형태, 국내가격 또는 국제가격, 생산요소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해서는 않되며 일면 사회보장적 성격의 직접보조에 해당됨. 재해구호 및 농민 은퇴, 휴경, 투자지원 등을 위한 구조조정에 관련된 소득보조와 같이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교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작자에 대한 생산중립적인 소득보조 방법.

Deficiency Payments(차액 보상)

미국의 농업생산보조정책의 일환으로, 차액보상은 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단위당 일정한 총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평균시장가격이 의회에서 산정한 목표가격이하가 될 경우 정부가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시장가격 및 용자가격과의 단위당 차액을 생산농가에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함. 이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작면적 감축계획(ARP)에 참여해야 함.

Delayed Tarrification(관세화 유예)

관세화의 이행을 일정기간 연기한다는 의미로 WTO 농업협정 제4조 2항에 의해 인정된 예외없는 관세화라는 UR협상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농업협정 부속서 5의 Section A, Section B의 두가지 특별대우(Special

Treatment)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생산통제가 되고 있는 수입량 3% 이하, 수출보조가 없는 품목에 대해 6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은 4~8%를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개도국인 경우 상기 요건외에 전통적 주식이 되는 품목은 10년간 관세화로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 접근물량은 1~4%를 보장하는 방식임. 전자는 일본의 쌀이 해당되며 후자는 한국의 쌀이 해당됨.

De-minimis(의무면제)

“법률은 사소한 사항에 대하여 관여치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UR협정과 관련 덤핑 및 농산물보조금감축의무 면제 등에 적용됨. 덤핑의 경우 덤핑마진이나 덤핑수입량이 매우 미소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닐 경우 덤핑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농산물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총액이 총생산액의 5%미만인 경우 감축의무를 면제함.

Developing Countries(개발도상국)

UR 협상과정 중에서 개도국, 선진국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냐 하는 분류기준의 설정문제를 놓고서 선·개도국간에 많은 논란이 진행되었으나, 통일된 분류기준의 제시에 대한 의견차이로 UR협상 마지막 순간까지 미합의 상태로 종결됨. WTO 제반 협정문 중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만 개도국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협정상에서도 최빈개도국의 분류기준(1인당 GNP 1,000\$ 이하 국가)은 제시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일반개도국간의 분류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WTO 협정상 개도국 지위 부여 문제는 기존 GATT상의 일반 개도국 지위에 대한 자기선언원칙(Self-Declaration Principle)에 의해 개별 국가별로 결정됨. 우리나라는 WTO농업협정상 감축약속의 이행시기, 감축율에 있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이행하고 있음.

Dezeeuw Draft(드류의장 초안)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1989년 4월 제네바 중간평가회의(Mid Term Review)의 결의에 따라 각국의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 이러한 각국 제안에 기초하여 의견대립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수차례에 걸친 공식·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거의 모든 협상의제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상이 타결될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산물협상 그룹의 드류(DeZeeuw) 의장은 1990년 4월 이후 각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에 대한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각국의 대표를 개별 접촉하였으나 각국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어 있어 협상골격에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TNC회의에 합의초안을 제출·보고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드류 의장은 보고서함에 쫓긴 나머지 초안에 대한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그동안 공식·비공식 회의를 토대로 합의초안을 작성, 1990년 6월 27일 GATT 사무국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드류의장은 “농산물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합의초안”으로서 동년 7월 9~11일까지 미국의 휴스턴에서 개최되었던 선진 7개국 경제정상회담(G7)에 제출하여 7월 23일 개최되는 TNC회의에서 농산물협상 합의골격으로 채택되도록 정치적 결단을 유도하였으나 농업보호 및 지원수준의 점진적 감축이라는 협상목적의 재확인과 의장초안은 협상의 토대(Basis)가 아닌 “협상을 촉진시키는 수단(as a means to intensify the negotiations)”으로 권고한다는 공동성명으로 귀착되었다.

또한 7월 12~13일까지 진행된 “농산물그룹 제23차 공식회의”에서도 의장초안의 채택여부가 집중적인 논의대상이 되었는데 의장과 수출국들은 의장초안이 협상의 기초로 채택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스위스 등 수입국들은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력 제기하고 EC는 그동안 EC가 주장해온 국경보호 및 국내보조 그리고 수출보조를 포괄하여 점진

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Global commitment) 것과 보호 및 지원수준의 재균형화(rebalancing), 관세화에 따른 보정요소(corrective factor)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의장초안의 내용 합의에 강력 반대하여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하였음.

DFA(Dunkel's Draft Final Act ; 던켈초안)

브뤼셀 각료회의 결렬 이후 던켈총장에게 협상재개를 위한 막후절충에 대한 권한이 맡겨졌으며 이에 따라 1991년 1월 15일 개최된 TNC회의에서 각국은 협상재개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봄으로써 1991년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후 던켈총장은 주요 협상국과의 막후접촉을 통해 2월 25일 협상재개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각국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UR협상은 재개되었다.

던켈총장이 제시한 제안서에서는 국내보조, 국경조치, 수출보조 등 각 분야별 협상요소들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 협상분야별로 기술적 쟁점에 대한 협의가 3~6월까지 개최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협의결과를 종합하여 각 협상분야별로 쟁점이 되는 여러가지 대안들을 정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던켈총장이 농산물 협상그룹 의장자격으로 내놓은 6월 24일의 의장대안서(Options Paper)였다. 의장대안서(Options Paper)는 글자 그대로 여러가지 대안들을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입장만이 강조된 것은 아니고, 선택가능한 여러가지 대안들을 제시한 것이었다. 각 협상요소별로 제시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협상은 각국의 정치적 결단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써, 특히 농업이 갖는 각국의 정치·사회적 민감성은 주요 협상국들의 합의에 의한 조속한 타결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이상의 시간지연은 협상자체의 결렬이라는 인식하에 던켈총장은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11월 21일 작업초안(Working Paper)을 독자적 책임하에 제시하였다. 작업초안은 대안서에 제시된 대안들을 단일안으로 채택한 문서로서 특히 농산물 수출국측 주장을 주

로 반영한 단일안이었으나 감축폭, 이행기간 등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워낙 여러번에 걸쳐 협상초안이 제시된 뒤 주요국에 의해 거부되고 이때마다 협상타결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절충이 어려운 정치적 쟁점에 대해 공란으로 제시함으로써 가급적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포괄적 관세화(Comprehensive Tariffication)를 시장개방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작업초안에 대한 농산물 수출입국간의 논쟁은 더욱 가속화되어 던켈이 의도한 1991년대 타결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더이상의 협상진행은 무의미함을 판단한 던켈 총장은 전체 UR협상그룹의 최종안을 자신의 책임과 독자적 판단아래 제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2월 20일에 배포된 최종의정서 초안(Final Draft Act)이었다.

1991년 12월 제출된 던켈초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 협상과정에서 지배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것보다는 각 분야별 내용에 있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이는 모든 협상참가국들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하여 어느 나라도 완전한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협상종결을 이끌려는 의도의 일환이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본 최종의정서초안에 나타난 기본원칙 및 부분별 내용이 향후 협상의 기초와 골격이 되어 최종협정문에 반영되었다.

동 의정서 초안은 던켈총장이 이끌어 오던 1991년 협상의 종합적 결과이며 동시에 조기 협상타결을 위한 중재안의 성격을 띄고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협상여지없이 수용여부만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문서였다.

〈헬스트롬 중재안과 최종의정서 초안 비교〉

구 분	헬스트롬 중재안('90. 12)	최종의정서 초안('91. 12)
<p>시장개방</p> <p>관세 및 관세상당액 감축률 기준년도 이행기간 최소시장접근</p>	<p>30%</p> <p>1990년 1991~95년(5년간) 5% 이상</p>	<p>36%</p> <p>(최소 15%로 신축성 부여) 1986~88년 1993년~99년(7년간) 3%에서 5%까지</p>
<p>국내보조</p> <p>감축율 기준년도 이행기간 감축의무면제상한 (De-minimis)</p>	<p>30%</p> <p>1990년 또는 최근년도 1991~95년(5년간) 불인정</p>	<p>20%</p> <p>1986~88년 1993~99년(7년간) 5%</p>
<p>수출보조</p> <p>감축기준 감축율 기준년도 이행기간</p>	<p>재정지출액, 단위당 보조액, 물량 30%(물량) 1988~90년 1991~95년(5년간)</p>	<p>보조물량 및 금액 24%(물량), 36%(금액) 1986~90년 1993~99년(7년간)</p>
<p>개도국우대</p> <p>감축폭 이행기간</p>	<p>국내보조분야만 선진국의 1/2수준(*시장개방, 수출보 조 언급없음) 1991~2000년(5년연장)</p>	<p>국내보조, 시장개방, 수출보 조등에 선진국의 2/3수준. 1993~2002년(3년 연장)</p>

Dillon Round(딜론라운드)

1960년 5월부터 1961년 7월까지 개최된 GATT의 다섯번째 다자간 무역협상, 당시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의 국무차관이었던 Douglas Dillon의 제창으로 개시된 바,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다자간협상임.

Direct Payments to Producers(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현물지급, 징수감면 포함) 형태로 제공된 보조로써 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으로 부터 면제되기 위해서는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제1항에 명시된 기본적인 요구조건과 함께 제6항으로 부터 제13항까지 에 명시된 직접지불의 개별적인 형태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함.

Dispute Settlement(분쟁해결)

과거 GATT의 분쟁해결절차의 약점은 강대국을 제재하는 패널보고서 작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GATT협정 위반이라는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경우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기구가 없다는 점이였다. 따라서 일부 무역강대국의 경우에는 GATT 규정의 엄격한 해석에 따르기 보다는 자국의 경제력 행사를 통해 GATT 규범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GATT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절차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국가들이 공감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분쟁해결절차 마련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임. UR협정상 분쟁해결절차 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로는 GATT 산하 개별협정별로 각기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세계 무역기구(WTO) 산하의 분쟁해결기구로 일원화 하였고, 둘째는 패널진행이 과도하게 지체되지 않도록 패널절차의 단계적 시한을 설정하여 패널진행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셋째,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채택되도록 하였다. 넷째, 패널패소국은 상설 상소기구에 언제나 상소가 가능하도록 상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다섯째, 분쟁해결기구는 패널의 결정사항이 이행되는지를 감시하여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불이행국에 대해 피해보상 또는 양허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여섯째로는, 피해국은 양허정지 조치의 일환으로 상대국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분야 내에서 보복이 허용되며, 이것이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의 보복이 인정된다.

무역에 관한 분쟁해결절차가 WTO 산하 분쟁해결기구 주관하에 일원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 등, 일방적 보복수단이 통상압력으로 사용될 여지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 주요절차를 보면 협의절차, 패널절차, 상소절차, 권고 및 결정의 이행, 보복조치 절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DSB의 권고나 결정을 합리적인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소국의 요청에 의거 30일 이내 보복조치를 허용함. 보복조치는 동일한 분야에 우선 적용하나 여타 협정분야에도 적용(Cross retaliation ; 교차보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Domestic Subsidy(국내보조금)

WTO 농업협정에 의한 보조금 분류방식으로 Agricultural Subsidies(농업보조금) 참조. 국내보조분야에 있어서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원을 대상으로 먼저 감축이 면제되는 정책의 기준과 대상을 예시하고 동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원은 감축대상 정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감축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별 지원액(Product Specific AMS)과 품목불특정 지원액(Non-Product Specific AMS)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 지원액을 총액으로 합산(Total AMS)하고 이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허용기준에 합치되는 정책은 지원액 수준에 제한없이 지원가능하며 감축약속 지침에 부합되는 지원에 대하여는 상계조치 등 상대국의 보복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매지원 금액을 '89~'91년도를 기준으로 17,185억원에서 매년 228.6억원을 10년간 감축하여 최종년도에 14,900억원으로 13.3% 감축키로 C/S에 제시하여 이행하고 있음.

Down Payment(초기가시화, 자발적 선행조치)

APEC EPG(저명인사 그룹)의 제안의 하나로써 APEC 회원국이 무역·투자 자유화의 모범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야에서 자유화 선행조치를 하는 것(시장개방, 관세를 감축 등)

Drawback System(관세환급제도)

관세의 환급제도는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위약물품의 관세환급 이외에도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제도와 관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의 환급제도가 있다. 위약물품 등에 대한 환급제도는 ①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의 환급, ② 계약내용과 상위한 수입물품을 멸각하는 경우의 환급, ③ 수입면허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안에 있는 동안 멸실·변질·손상된 경우의 환급, ④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중에 있는 위약물품에 대한 부과 취소 등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이와 같은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제도, 즉 위약물품을 수출 또는 멸각하거나 수입면허된 물품의 보세구역에서 멸실·변질·손상된 경우에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그 물품들이 수입되었다 하여도 수입의 실효가 사실상 소멸되기 때문에 일단 징수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이고, 징수유예중이거나 분할납부 중인 관세는 납부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서 징수를 한 후에 환급을 하는 번잡스러움을 피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세의 부과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다. 1974년까지 수출용 원자재는 수입시 사후면제제도에 의해 관세를 현금으로 물지 않고 관세지불의 유예를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대신하고 나중에 수출면장이 발급되면 그것으로 관세담보를 해제하였는데 1975년부터는 수출용 원자재도 수입시 일단 모든 관세를 일반자료와 같이 지불하고 수출이 이행되면 지급한 관세만큼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DSB(Dispute Settlement Body : 분쟁해결기구)

WTO에 설치된 회원국간 제기된 분쟁문제를 다루는 상설기구

DSU(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 분쟁해결양해)

분쟁해결을 규율하는 규칙·절차에 관한 WTO 회원국들간의 양해사항으로 WTO 설립 협정 부속서 중의 하나임.

Due Restraint(적절한 자제)

Peace Clause(평화조항 참조)

Dumping(덤핑)

1994년 GATT 제2조에 의하면, 덤핑이란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을 경우,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함(덤핑=정상가격-수출가격).

(E)

Early Warning System(조기경보제도)

무역상대국이 도입할 무역조치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국가들이 사전에 그들의 유감 또는 관심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Economic Leader's Meeting(APEC 경제지도자회의, 정상회의)

APEC의 정상회의로서 1993년 미국의 클린턴행정부의 주도로 시애틀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의 제2차 정상회의에서 보고르 선언을, 1995년 일본 오오사카의 제3차 정상회의에서 오오사카 선언을 발표하였음. 중국과 대만 문제로 인해 정식 명칭은 “경제지도자회의”로 불리며 공식 의제없이 역내 경제협력과 번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함.

EEP(Export Enhancement Program ; 수출진흥계획)

특정수출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은 EC의 농산물수출과 경쟁하기 위해 주어지는 미국의 수출보조금계획.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아이슬랜드 등 북구제국으로 구성된 비공식 그룹.

EMS(Equivalent Measurement of Support ; 보조상당액측정치)

EMS는 WTO 농업협정상 농업보조정책 수단을 계량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통하여 기초농산물의 생산자에게 제공된 보조이나 AMS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이 불가능한 보조로서 화폐단위로 표시한 연간 보조수준을 의미한다. 단, 농업협정 부속서 2의 감축으로부터 면제되는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는 제외된다. 보조상당액측정치(EMS)는 시장가격지지를 받고 있으나 보조액을 산출해 내는 데 있어서 품목특정적보조 계산방법으로 보조액을 계산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기초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산출방법임.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는 기초농산물의 경우 시장가격지지 EMS는 적용 관리가격과 동 가격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량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 생산자 가격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재정지출을 사용하여 계산함.

－ AMS : (관리가격 - 고정외부참조가격) × 지지물량

－ EMS : 관리가격 × 지지물량, 또는 재정지출액

여타 당해품목에 대한 직접지불 및 기타 감축대상보조액 계산, 이의 합산방법 등은 품목특정적 AMS 산출방법과 동일하며, AMS로 보조액을 계산해 낼 것인가 또는 EMS로 계산해 낼 것인가는 당해 국가가 지원정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임.

Enabling Clause(권능부여조항)

GSP(일반특혜관세제도)가 1970년대부터 시행되었으나 이와같은 대개도국 특혜대우는 GATT 최혜국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법적인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동경라운드에서는 GATT 1조가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특별하고도 우대적인 대우를 공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내용의 Framework Code를 제정, 선진국으로 하여금 혜택을 공여할 수 있도록(Enable) 하였으므로 동 Code의 제1부를 통상 권능부여조항이라 부르고 있음.

Enquiry Point(문의처)

WTO/SPS 협정상의 각회원국들은 이해당사 회원국으로 부터 제기되는 모든 합리적인 질의에 답변 또는 관련문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를 담당할 하나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SPS 협정상의 문의처를 농림수산부 국제농업국 기술협력과로 지정하였음.

EPG(Eminent Persons Group : APEC 저명인사그룹)

1992년 APEC 방콕회의에서 구성을 결정하였으며 APEC의 역할과 추진방향등에 대해 각료회의를 이론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함. 최근 50% 규칙을 제안하는 등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건의하였으나 1995년 오사카회의를 끝으로 해체되었음.

Equivalence(동등성)

WTO/SPS협정(식물 및 식품위생조치 협정) 제4조는 만일 수출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이 정한 위생 및 식물위생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수입회원국은 자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해야 하며 관련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조치의 동등성 인정여부에 관하여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RA(Effective Rate of Assistance : 유효지원율)

ERP(유효보호율) 참조

ERP(Effective Rate of Protection : 유효보호율)

정부 정책의 국내산업보호에 대한 영향 평가 즉 국내 산업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s)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처음개발된 개념은 유효보호율(ERP) 개념이다. 처음 동개념이 개발되었을 당시 국제무역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정부지원 형태는 관세(Tariffs)에 의한 교역적인 장벽(Trade Barriers)이었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관세로 무역의 방향이나 교역의 왜곡 즉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이를 측정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세계와 함께 일

반지원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그 측정수단도 이러한 다양한 지원형태를 포함할 수 있는 유효지원을(ERA) 개념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편, OECD와 같은 기관에서는 국내산업지원을 평가하는데 있어 약간 다른 방법으로써 생산자 지원상당치(Producer Subsidy Equivalents/PSE)와 소비자지원상당치(Consumer Subsidy Equivalents/CSE)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명목지원계수(Nominal Assistance Coefficient/NAC) 개념이 소개되고 있음.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은 1947. 3월 UN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의거 ECAFE(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로 발족하였으나 1974. 3월 제30차 ECAFE 총회에서 ESCAP으로 개명되었음. ESCAP은 역내 제국의 경제재건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기술적 문제를 조사하여 연구사업을 실시하거나 원조하고, 역내 경제문제에 관하여 UN 경제사회이사회를 보좌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현재 정회원국은 역내국가 43개국과 역외국으로 미, 영, 불, 화란, 러시아 등 5개국을 포함하여 48개국이며, 10개국의 준회원국을 가지고 있음.

Escape Clause(면책조항)

면책조항이란 GATT의 각종 의무로부터 예외될 수 있도록 허용한 GATT조항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GATT 제19조를 GATT 의무에 대한 면책조항이라고 간주하고 있지만 GATT상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몇개 조항이 있음. GATT 제12조는 특정상황에서 국제수지문제상 한 국가의 재정사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량제한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제수지 방어에 관한한 제19조보다 유용한 방책이며, 제18조는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이유상 필요한 경우 적절한 협의와 발동시간에 대하여 체약국단의 동의를 얻는 한 GATT의 어떤 의무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저개발국가에게는 제18

조가 제19조보다 더 폭 넓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19조의 핵심규정은 1항(a)로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체약국이 부담하는 의무로 인하여 어느 상품이 당해 체약국내의 동종 또는 직접경쟁산품의 국내생산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증가된 수량과 조건으로 당해체약국의 영역내에 수입되고 있을때 일정한 방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empted Domestic Support(허용대상 국내보조)

WTO 농업협정상의(농업협정부속서 2) 감축약속으로 부터 면제되는 국내보조조치를 말함. 기본적인 요구 조건으로 당해보조가 소비자로 부터의 소득이전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공적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정부의 계획(징수감면포함)에 의하여 제공되며, 당해보조는 생산자에 대한 가격 지지 효과가 없어야 하며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일반서비스(연구, 병해충 방제, 훈련, 지도, 자문, 검사, 시장정보제공, 하부구조사업 등),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국내식량원조이며, 생산자에 대하여 재정적 혜택이 직접 부여되는 보조사업중 생산중립적 소득지지, 소득안정화 계획 지원, 자연재해구호, 탈농지원, 휴경보상, 구조조정 투자지원, 환경보전지원, 낙후지역지원 등이 해당됨.

Export Credits(수출신용)

일반적으로 수출금융이라 하면,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여신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대출, 수출품 생산업자에 대한 생산자금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보증 및 보험 등이 포함됨. 수출신용(Export Credits)이란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용자하는 제도로서 용자기간에 따라 단기 수출신용과 중장기 수출신용으로, 지원대상자에 따라 공급자 신용과 구매자 신용으로 구분됨. UR농산물협상에서는 수출신용의 운용을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port Credit Guarantees(수출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이란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에 대해 수입업자측 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정부가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보증제도는 수출업체나 거래은행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UR 농산물 협정에서는 수출신용보증운용을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port Credit Programme(수출신용보증계획)

미국 상품신용공사(CCC)의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주로 곡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년동안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최장 3년동안 신용을 보증하는 단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2), 둘째, 신용보증기간이 3년에서 10년인 중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3)이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용자에 대해 신용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상품신용공사가 직접 용자해 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WTO 농산물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직접수출보조금의 감축에 따라 미국은 수출확대를 위해 WTO 농산물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수출보조금 대신에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이것은 특히 곡물, 유지작물 및 기타 품목이 또 다시 과잉 생산되어 각국의 치열한 수출경쟁을 야기할 경우에 주시해야 할 중요한 분야가 될 것임.

Export Competition(수출경쟁)

UR. 농산물협상에서 다루었던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등 3개 의 제종의 하나로 농산물 수출관련 각종의 보조 및 지원조치 모두를 망라해서 이의 금지 및 감축을 다루는 분야.

Export Insurance(수출보험)

수출보험이란 상품수출, 해외투자, 해외건설공사 등 대외경제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중 해당보험만으로는 도저히 보상될 수 없는 위험, 즉 외국에서의 전쟁, 혁명, 정변, 내란, 외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수입제한 등 비상위험(Political risk)이나 수출계약의 파기, 수출불능, 수출대금의 회수불능 및 지체 등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 부터 수출업자, 수출품 생산자, 수출자금지원 금융기관, 해외투자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비영리정책 보험제도를 말함. 농업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제도는 단지 농산물 수출에 지원되는 제도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각국의 관행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나 UR 농산물협상에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port Price(수출가격)

반덤핑협정상 덤핑마진을 산정시 정상가격에 대비되는 가격으로서 1961년 GATT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국에 반입되는 시점에서의 가격이 아니라 동종상품이 수출국을 떠나는 시점에서의 가격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동보고서는 수출가격은 수출을 위한 공장도가격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FOB가격도 적절한 것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음.

Export Subsidies(수출보조)

정부가 상품 수출자의 수출실적이나 수출 조건을 기준으로 수출업자나 생산자에게 재정에서 직간접으로 지원하여 주는 각종 혜택(융자 및 무상 지원 등)을 의미한다. 이런 수출보조는 UR협상결과에 따라 농산물에 적용되는 기준(농업협정)과 공산품 및 수산물에 적용되는 기준(보조금.상계관세)이 다르게 협상이 종결되었다. 농산물의 경우는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한 직접보조, 수출유통비용 절감지원, 수출수송비 지원, 수출상품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등은 감축대상에 해당되도록 했다. 반면, 공산품과 수산물의 경우는 수출연계 및 수입대체성이 있는 정부지원은 금지

하고 있음. UR 농산물 협상과정에서는 수출에 대한 직접재정지원 및 기타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의 감축 및 철폐가 협상 의제로 논의되었으나 농산물 수출보조금 관계로 참여한 대립을 보였던 나라는 수출보조금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수출보조금을 이용하지 못했던 케언즈그룹이 아닌 수출보조금을 이용하고 있던 미국과 EU였다. 미국은 농산물의 수출보조금, 수출규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완전히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다. 즉, 5년만에 걸쳐 모든 수출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상품목 및 해당 보조금의 내용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단 진정한 의미에서의 식량원조는 예외로 한다는 유보조건을 부가하고, 단기적인 공급부족을 이유로 한 수출제한과 수출금지규정인 GATT 11조 2(a)항을 폐지하고, 5년 이내에 수출부과금의 차별철폐를 주장하여 형식상 완전 자유화를 제안하였음. EU는 수출보조금에 대하여 미국과 반대로 수출보조금의 철폐에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공동농업정책(CAP) 수출보조금이 제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상 EU로서는 공동농업정책을 포기 또는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EU는 수출보조금을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를 초과해서는 안되도록 보조금의 양에 관한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현행 GATT 16조 3항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규정중 과거 대표적 기간을 최근 5년간의 3년 평균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케언즈 그룹은 수출보조금을 감축, 철폐해 나가는 이행방법으로서 우선 현재수준에서 수출보조금을 동결하고 합의된 일정 및 공식에 의거 점진적 감축, 궁극적으로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미국안과 유사하다. 이에 비해 한국 및 일본은 수출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아 비교적 소극적 입장이었으며 원칙적으로는 수출보조금 지급이 국제농산물 시장을 가장 왜곡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수출보조금을 다른 보조금에 우선하여 철폐하자고 주장하였다. UR 농산물협상결과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95년부터 6년간 재정지출기준으로 36%, 물량기준으로 21%를 감축토록 하였으며(개도국은 10년간 24% 또는 14%감축) 구체적인 수출보조금의 유형으로 농산물 수출관련업체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정부재원을 통한 수출보

조 등 6개 유형을 제시하였음. WTO 농업협정 제9조 1항에 제시된 6가지 유형을 보면, ①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기업, 산업, 농업 생산자, 이러한 생산자 조합이나 다른 협회 또는 유통위원회에 대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지급을 포함한 직접보조금의 제공, ② 국내시장의 구매자에게 동종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의해 농산물의 비상업적 재고의 수출목적의 판매 또는 처분 ③ 관련 농산물 또는 수출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지분을 포함하여, 공공회계의 부담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의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분 ④ 취급, 등급향상과 여타 가공비용 및 국제운송 비용을 포함하여, 농산물수출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의 제공(광범위하게 이용가능한 수출증진 및 자문서비스는 제외) ⑤ 국내 수송물량에 비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가 제공하거나 의무화한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 운송비 ⑥ 수출상품에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농산물보조금 등임. 한편,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합의될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함. 수출보조금과 관련, 우회적인 수출행위나 국제식량원조, 가공식품에 대한 보조한도 등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수출국의 인위적인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도 규제하고 있음. 수출보조에 관한 감축이행약속에 따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한 당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상계관세 협정 등에 근거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였음. 우리나라는 '89~'91년간 감축대상이 되는 수출보조 지원실적이 없어 농산물이행계획서에 감축약속을 제시하지 않았음.

External Reference Price(외부참조가격)

국내가격지지 효과나 관세상당액(TE)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국제가격으로서 UR 농산물 협정에서는 '86~'88 평균 세계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F]

FA(Final Act : 최종의정서)

UR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이 최종적인 UR 협상결과를 확인하고 WTO 설립협정을 국내비준절차에 회부하겠다는 약속 문서로서 WTO협정의 제일 앞부분에 있으며 6개항으로 구성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최종의정서에 서명하고 필요한 국내절차 회부, '95. 1. 1 혹은 '95. 1. 1이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WTO협정이 발효되도록 노력, WTO협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키 위해 '94년말 이전 별도의 각료급 회담 개최 등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1943년 7월 UN이 식량농업을 위한 유엔임시위원회를 설립하고 FAO 헌장을 마련함에 따라 1945년 10월 제1차 UN총회에서 정식 발족된 유엔전문기구임. FAO는 모든 국민의 영양기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량 및 농업생산물의 생산 및 분배능률증진, 농민생활수준개선, 각국 정부가 요청하는 기술원조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현재 FAO 회원국은 164개국이며 준회원국으로 프에르토리코가 속해 있음. FAO 총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회원국 대표로 구성됨. 우리나라는 1949년 11월 제5차 총회시 가입하였음.

FMDP(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 ; 외국시장개척정책)

이 정책은 미국이 농산물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에서 교육 및 수출촉진활동을 수행하는 협회, 기업 및 기타 단체 등에게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무역협회의 일부 기금이 총기금에 보태진다. 이 제도는 대체로 장기간에 걸친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판로확대와 수입품의 사용방법을 수입국에 홍보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밀, 옥수수, 콩, 유제품, 면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채소 및 견과류 등의 생산자를 대표하는 협회가 이 분야에서 가장 활동적임.

Food Security(식량안보)

식량문제에 대한 시각은 그 나라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식량이 부족한 수입국들은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부족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관심을 두며, 식량생산이 과잉상태인 식량수출국들은 해외식량시장 개발을 통한 과잉농산물의 수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어 '72-'73년도의 세계 식량위기를 계기로 더욱 구체화되었음. UR협상 과정에서도 시장가격의 크기로 반영되지 않는 국내농업의 소위 비교역적기능(NTC ; Non Trade Concern)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기능으로 식량안보문제가 논의된바 있음.[NTC(비교역적 고려사항)참조] 식량안보에 대해서는 각국의 식량생산능력, 식량수급상황 등에 따라서 국내외 여러학자나 단체가 내린 정의가 다양한바, 이를 요약하면, 국민에게 만족할 만한 품질의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접근기회가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이르기까지 보장되어야 하며(여기서 만족할 만한 품질의 식량이란 식품의 안전성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선호에 적합한 식품을 가리킴), 이러한 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농업자원이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음. FAO(세계식량농업기구)는 '96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인 “세계식량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식량이 항상 확보 가능하고, 모든 사람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으며, 양·질·다양성의 관점에서 영양적으로 적절하고, 주어진 문화내에서 수용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를 시도한 바 있음.

Formula Approach(공식적용방식)

국제교역관련 협상 등에서 특정공식이나 인하폭을 결정하여 회원국의 모든 대상품목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세율 및 보호정도를 일괄적으로 인하는 방식임.

Free-rider(무임승차국)

GATT의 최혜국대우원칙 하에서 체약국들이 협상하여 관세를 인하하고 양허함으로써 상응하는 양허를 제공하지 않고 이득을 얻는 체약국을 일컬음.

Free-Trade Area(자유무역지대)

GATT 24조에 의거하여 역내 국가들간의 거의 모든 무역에 대하여 관세 및 다른 장벽들을 제거한 국가들의 그룹, 관세동맹과는 달리 역외국가들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각자의 관세를 유지하는 등 각자의 통상정책을 보유함.

FTA(Fast Track Authority ; 신속승인권한)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의회의 수정없이 가부만 표결케 함으로써 행정부의 결정사항에 대해 시의성 있는 심의를 보장해 주는 미국 통상법상의 입법 메카니즘으로서, '74년 통상법에서 최초 규정되었으며, '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수정·보완되었음. 이는 미국 행정부가 외국정부와 체결한 다자·쌍무간 무역협정의 국내시행을 위해서 시행법안 제출후 60일(단, 세입의 경우는 90일) 이내에 의회가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있음.

[G]**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최근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서비스 교역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하였으나 서비스교역에 대한 국제규범의 부재로 대부분의 국가, 특히 개도국들은 서비스 교역을 광범위하게 제한함에 따라 UR협상 출범시 선진국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서비스 교역자유화 문제를 협의키로 합의하고, 서비스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품교역에 관한 협정(GATT)과는 별도로 서비스 일반협정(GATS)을 체결하였음. 서비스

일반협정(GATS)은 6부 28조, 8개 부속서(MFN 예외, 자연인 이동, 금융, 통신, 항공, 기본통신, 해운, 금융Ⅱ)와 각국의 양허표로 구성되어 있음. 서비스 협정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조치에 적용되며, 이들 조치는 중앙, 지역, 지방정부 및 이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비정부기관에 의한 조치도 포함됨. GATS 제1조에 따르면 서비스 교역을 ① 서비스 자체의 국경간 이동(Cross-border Supply) ② 서비스 소비자의 국경간 이동(Consumption Abroad) ③ 서비스 공급자의 타국에서의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및 ④ 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음. GATS(서비스 일반협정)은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정발효일로 부터 5년이내에 후속 양허협상을 시작하며 그 후 정기적인 협상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GATT 분류기준 11개분야 155개업종중 교육·보건사회·문화오락 등 3개분야를 제외한 사업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건설, 유통, 금융, 운송 등 8개분야 78개업종을 개방하였음. UR협상 타결로 인하여 양허된 품목들은 당장 95년부터 개방되는 것은 아니며, 분야별로 개방시한이 각기 다름.

GATT47(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in 1947 : 1947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동협정은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 전체의 번영을 목적으로 1947년 10월 제네바에서 조인됨으로써 발족했으며 한국은 1967년 4월에 정식가입하였음. GATT는 상호주의 및 무차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산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관세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기타의 방법 특히 수입수량제한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GATT 94(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in 1994 : 1994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의 하나로서 1947년 채택된 기존의 GATT 규정, 관세 양허의정서, 가입의정서 기존 GATT 체제하에서의 일부 결

정사항, UR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GATT 2조 1항(b), 17조, 19조, 24조 waiver, 28조, 35조의 양허 및 1994년 GATT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로 구성됨

General Council(일반이사회)

WTO의 일반이사회는 기존 1947 GATT의 GATT이사회 기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WTO 각료회의가 비회기중일때 개최되는 회의로서 회의의 성격에 따라 의장의 지정에 따라 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 검토기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음(WTO협정 4조). 일반이사회 산하에는 특별이사회로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복수국간 협정에 의한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음.

Geographical Indications(지리적 표시)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제22조는 지리적표시를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라고 정의하면서, 당해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수단의 사용을 금지하고, 회원국은 그러한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거나 동 표시로 구성되는 상표의 등록을 거부 또는 무효화(refuse or invalidate)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G77(Group of 77 ; 77그룹)

1964년 6월 제1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시 77그룹이 공동 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이로 부터 77그룹으로 불리게 되었음. 1967. 10 알제리아의 수도 알지아에서 제1차 각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설립되었고, 매년 UN 총회를 대비하여 외상회의를 개최하며, UNCTAD총회를 대비하여 전체 및 지역별 각료회의를 가지고 있음. 77그룹은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협력촉진 및 제3세계의 경제적 공동이익 강구와 신국제경제질서 수

립을 위한 선진국과의 교섭능력의 제고를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재 회원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3개지역 그룹으로 구성, 126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개도국간 실질협력책의 일환으로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GSTP)를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64. 6월 가입하였음.

Global Approach(총체적인 감축방식)

UR 농업협상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농업보조 및 지지수준의 감축방법의 하나로, 분야별 감축방식(Sectoral Approach)에 대응하는 개념임. 총체적 감축방식이란 분야별 감축방식과 달리 국내보조, 국경보호, 수출경쟁등을 포괄적 단일개념의 총 보호수준으로 파악, 이를 분류치 않고 전체적으로 보호총량만을 감축해나가는 접근방식이며 EC가 강력히 주장했었음. 이에 대하여 수출국들인 미국, 케언즈그룹은 EC의 총체적 감축방식은 그들의 수출보조금 감축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였음.

Global Quota(총량 쿼타)

한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자국으로 수입될 상품의 가치 또는 양에 대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선정한 수량제한 조치.

GNS(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 : 서비스협상그룹)

1986년의 푼타 델 에스테 선언 제2부를 이루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 관할권을 가지는 UR협상그룹. TNC(무역협상위원회)참조

Good Offices, Conciliation, Mediation(주선, 조정, 중개)

WTO분쟁 해결절차상 주선, 조정, 중개는 분쟁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절차이며, 동 절차는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개시되고 종결될 수 있음. 동 절차의 종결시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 절차가 협의요청일로부터 60일의 기간을 허용해야 하나, 그 이전이라도 동 절차가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패널절차중에도 분쟁당사국의 합의하에 동 절차는 지속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직권으로 동 절차를 제공할 수 있음.

Government Procurement(정부조달)

원래 정부조달분야는 GATT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분야(GATT 3조 8항, 17조 2항)로 국제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이나, 1960년대 이후 각국에서 차지하는 정부조달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세계무역자유화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동 분야의 자유화가 추진되어 왔음. 이에 따라 '79년 동경라운드에서 제정(시행은 '81년 부터)된 정부조달협정은 전체 정부조달시장 중 일부인 중앙정부기관의 일정금액(하한선 : 13만 SDR)이상의 물품 구매만을 규율하는데 한정되어, 지방정부나 통신, 전력, 상·하수도, 운송분야등 주요 공공부문이나 서비스, 건설구매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79년 구협정은 미국·EC 등 23개국이나 신흥정에는 홍콩·싱가폴이 미가입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함으로써 22개국임. 정부조달 확장협상은 WTO협상과 같은 맥락에서 정부조달 부문에서도 자유화의 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해 '87년부터 시작된 가입국간의 협상으로 자유화 대상을 기존의 『중앙·지방정부기관 및 통신, 전력기관 등 정부영향력하의 공공기관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구매』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음. WTO체제에서는 정부조달협정을 포함한 기타의 4개의 다자간 협정을 별도의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으로 취급하고 있음. 정부조달협정은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대하여는 GATT의 기본원칙인 내국민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공개 경쟁입찰을 또 다른 원칙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12월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조달시장이 개방되어 국내조달제도가 개선되고 우리 기업이 여러 선진국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 정부조달협정은 '96. 1. 1부터 발효되나 우리의 경우 '97. 1. 1부터 적용되며, 이 경우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구매가 모두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

Grandfather Clause(조부 조항)

GATT 제2부의 제규정은 원칙적으로 수출입 제한의 철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은 국내법령을 GATT 가입과 동시에 GATT 제규정과 일치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당초 체약국의 경우는 잠정적용 의정서(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에 의거하고, GATT 성립 이후의 체약국의 경우는 가입의정서(Protocol of Accession)에 의거해 국내법령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GATT 제2부를 수락하는 편법이 인정되었다. 의정서상 GATT 제2부의 잠정적 적용에 관한 조문이 바로 GATT에 우선하는 “Grandfather Clause”로 불리워지는 것이다. 과거 선진국의 잔존 수입제한의 대부분은 이 조항에 의거한 것임.

Green Box(허용대상농업보조)

WTO 농업협정상의 농업보조금 분류방식으로 농업보조중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을 의미함. Exempted Domestic Support(허용대상 국내보조), Red, Amber, Green light(신호등 분류방식) 참조

Green Room(그린룸)

GATT 본부에 있는 소회의실(방의 벽지색깔이 옅은 녹색이어서 명명). 그린룸 회의라고 하면 보통 각국의 협상수석대표를 1인으로하여 중요한 건을 다루는 회의이며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의제에 대한 최종토론 및 결정의 성격을 갖고 있음. GR회의는 대체로 각료급/고위급/실무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치적 타협과 결정을 요하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각료급이나 고위관리급 GR회의가, 기술적 검토사항 및 이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급 GR회의가 열림. GR 회의 참가국은 주요국가로 한정되며 사무총장의 초청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GR의 좌석수에 따라 20여개국 정도의 초청대상국가가 결정되나 이는 유동적임. 한 국가의 참가인원은 1+1(대표와 보좌관 각 1명)으로 한정되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1+2가 되기도 함.

Grey Area Measure(회색지대조치)

GATT 19조의 Safeguard 조치는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보상의 무와 보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동국은 많은 부담을 안게된다. 따라서 수출이 급증한 국가에만 선별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유리한데 GATT 19조로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대상국가에게 Safeguard 발동이 나 반덤핑, 상계관세부과를 유보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선별적인 규제 협정을 맺는 경우가 많다. 이는 수출자유규제협정(VER), 시장질서유지협정(OMA) 형태로 맺어지는데 이러한 협정들은 불법적이라는 점에서 회색지대조치라고 불렸으나 UR협상의 주요 논의대상이었음.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일반특혜관세제도)

일반특혜관세란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 공산품의 제품·반제품에 대하여 대상을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관세의 적용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즉 일반특혜제도는 1968년 2월 1일~3월 29일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차 UNCTAD 총회 의결21에 “System of Generalized, Non-reciprocal and Non-discriminatory Preference” 라고 언급하여 통상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약어로는 GSP)라고 칭하는 것으로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 특혜제도를 의미한다.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법적지위문제에 대해서 선진국 측은 동제도가 GATT 제1조에 규정한 세계무역에서의 자유·무차별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GATT 제25조 5항에 의한 Waiver를 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개발도상국 들은 GATT 제1조를 수정하거나 또는 GATT 제4부에 의하여 합법성을 증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UNCTAD 결의(II) 『조기 Waiver 획득』에 의하여 1971년 6월 25일 GATT 제25조 5항의 GATT 1조에 대한 Waiver를 포괄적으로 얻게 되었으며 이후 1979년 MTN Framework 협약의 채택에 따라 80년부터 GSP는 GATT Waiver 취득부여에 관계없이 합법적 무역규범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일반 특혜관세 공여국은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서방 선진국과 러시아, 체코, 우크라이나 등 일부 동구권 선진 경제국이며, 수혜국은 최빈개도국 및 일반개도국으로서 UNCTAD 회원국이면 WTO 비회원국(중국 등)도 수혜국에 해당됨. 특혜관세공여에는 확실적인 공여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OECD 회원국인 선진 경제국이 자국의 경제사정과 개도국들 경제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최빈 및 일반개도국에 대해 경제사정에 따라 “0”세율(비민감품목)을 적용하거나, MFN세율에 비해 20~50%정도(민감품목) 인하적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국의 GSP 운용현황을 보면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GSP 공여를 중단하고 있음. 미국('89), 호주('91), 캐나다('95)는 이미 GSP 공여를 중단했으며, 스위스('97), 뉴질랜드(조만간)는 중단예정으로 있음. GSP를 계속 공여하고 있는 국가로서 일본은 민감농수산물이 아닌 일반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HS 6단위기준 173개 품목에 대해 140여개 이상 개도국에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으며, 특혜관세 공여율은 품목의 민감정도에 따라 무세 또는 MFN세율보다 10~90% 인하적용(선진국에 비해 통상 20~50%정도 저렴)하고 있음. 이중 우리나라는 93개 품목이 특혜관세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일 총수출액 대비 38.7%가 수혜대상임. 주요 수혜품목으로는 김치, 인삼제품, 김류, 조미오징어류, 주류, 가공식품, 수산물 등이 있음. 한편 EU는 '96. 3월 UR농산물 협상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농산물 GSP운용제도를 공표, '96. 7.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확실적인 국별 및 총량쿼타제에서 품목별, 국가별 특혜관세를 차등 적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초민감, 민감, 준민감, 비민감 품목으로 특혜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특정 개도국이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일정기간후(99년) 또는 일정수준 시장점유율(25%) 초과시 특혜관세공여중단 및 공여기간중 특혜관세 50% 인하적용하고 있음. 한편, 러시아, 체코, 슬로바크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은 “0”세율 또는 MFN 세율에 비해 25~50% 인하적용하여 일부 민감농산물(과채류, 주류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농수산물(HS 1~24류)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음.

GSTP(Agreement o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ment Countries ;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

GSTP는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으로 개도국간 상호무역장벽 완화를 목적으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주관 하에 1976년부터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1988년에 유고 각료회의에서 개도국간 협정으로 체결됨. 현재 GSTP 참가국은 한국, 페루, 유고, 칠레, 태국, 수단, 이란 등 40개국임. GSTP 제1라운드 협상은 '86. 5~'88. 5(2년간) 있었으며 총1,550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0~30%를 인하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어 '91. 11월 부터 시작된 GSTP 제2라운드에서는 '96. 6월말경 협상종료를 목표로 '95년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각국의 관세율 수준에 따라 10~30%인하하여 주요 관심국별로 Request/Offer를 교환하였음.

[H]

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원산지규정의 조화)

WTO 각료회의는 원산지규정이 세계무역 수행에 있어서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협력이사회(CCC)와 함께 원산지규정의 동등한 적용, 최종적 실질적 변형주의 채택, 객관적, 이해가능성, 예측가능성 확보, 일관적·통일적·공정·합리적 운영, 적극적 기준 기초 원칙을 통해 각국의 원산지 규정을 조화시키는 작업을 WTO 협정 발효이후 가능한 조속히 개시하여 개시후 3년이내에 완결하도록 하고 있음.

Harmonization of Tariffs(관세조화)

각 나라마다 동일품목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이 현격히 다른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삼아 각국의 관세율을 평준화 하고자 하는 관세인하방식

Havana Charter(하바나 헌장)

1947년 11월부터 1948년 3월까지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개최된 「국제연합무역고용회의」에서 채택된 국제무역헌장으로서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헌장이라고도 한다. 세계무역을 자유무역체제하에서 재건·촉진하려는 목적으로 1945년 11월 1일 미국무성이 제안한 「세계무역 및 고용확장에 관한 제안」에서 발단되었고, 그 초안은 1946년 11월 런던에서, 1947년 1월 뉴욕, 그리고 1947년 4월 제네바에서 여러차례의 수정 끝에 1948년 3월 하바나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전문 8장 106조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① 관세인하와 특혜관세의 폐지 ② 할당제와 차별대우의 금지 ③ 환통제의 철폐 ④ 사적 카르텔의 금지 ⑤ 잉여물자처리법의 규제 ⑥ 수출보조금의 폐지 ⑦ 완전고용의 유지 ⑧ 국제무역기구(ITO)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헌장의 내용이 너무나 자유무역의 이상에 흘렀기 때문에 조인제국에서 인준을 얻지 못하여 발효되지 못하고 말았으나, 그 이념의 일부는 1947년 10월에 성립된 GATT규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음.

HS(Harmonized System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관세협력이사회(CCC)의 가장 큰 업적중의 하나는 복잡한 각국의 관세율표를 공통의 분류방식으로 변경하게 한 BTN(Brussels Tariffs Nomenclature)제도의 편성이다. BTN은 관세부과의 목적으로 상품을 가공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서, 이는 각국의 관세율을 파악하는데 무역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정부간의 관세교섭에도 편리하게 되었다. BTN은 당초 CCC사무국이 위치한 브뤼셀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BTN이라고 하였으나 1976년부터는 그 명칭을 바꾸어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이라고 하였음. 그후 관세협력이사회에서는 세계무역량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당시까지 국가 및 산업부문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던 상품분류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일·적용하기 위하여 CCCN을 골격으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

제인 HS(Harmonized System) 방식의 상품분류체계를 1983년 CCC에서 채택하였음. 우리나라도 1988년부터 관세율표에 HS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1)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 국제농업 개발기금)

개발도상국의 농업개발 및 식량생산증대 촉진, 이를 위한 용자 및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77년 12월 발족된 UN 산하기구. 우리나라는 '78년 1월 가입하였음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 문제에 관한 협의와 협력을 촉진 함으로써 국제통화금융질서를 확립하고, 국제무역의 확대와 균형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47년 11월 발족된 UN산하기구. 우리나라는 '55년 8월 가입하였음.

Import Licensing Procedures(수입허가절차)

수입허가절차란 수입국 관세영역으로의 수입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관련 행정기관에서 신청서나 기타서류(관세 목적으로 요구되는 것 제외)의 제출을 요구하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행정절차를 의미함. 이러한 수입허가의 절차가 객관적 자료에 의한 투명성과 공정성·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 분류되어 왔음. 이에 따라 수입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협정이 동경라운드에서 MTN Code중의 하나로 성립되었으나 여기에는 미, 일, EC 등 29개국만 가입하고 우리나라 등 30개국은 옵저버로 참여하였음. UR협상을 통하여 수입허가절차 협정내용이 좀 더 명료화되고 규율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포괄적 수용원칙(Single undertaking)에 따라 그 동안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가입하게 되었음.

Income Insurance and Income Safety-net Programmes(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

WTO 농업협정상의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형태의 재해보험적 성격의 보조로서 허용대상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혜대상은 농업으로 부터 파생되는 소득중에서 이전 3개년 또는 이전 5개년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조수익 또는 순소득 기준으로 30%를 초과하여 손실을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보상수준은 수혜년도의 생산자 소득 손실의 70% 미만을 보상하며, 생산자가 동일년도에 자연재해보상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총소득손실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INR(Initial Negotiation Right : 최초협상국 권한)

GATT 28조의 양허철회 재교섭시 양허철회국은 종래 관세협상에서 당해 양허세율을 선정할 때 직접 협상을 행한 상대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무로서 최초교섭국에게는 권한이 됨.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 지적재산권)

새로운 물질, 새로운 제조기술, 새로운 용도 등의 발명과 새로운 상품디자인, 상품의 새로운 기능개발, 상품의 상징표시선정 등과 같은 산업적 발명과 새로운 문학 미술 음악작품의 저작과 새로운 연출 공연 제작 및 방송 등의 문예적 창작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총칭함.

Item by Item Formula(품목별 협상방식)

관세인하협상 이해관계자끼리 테이블에 앉아 관세인하품목과 인하율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요구하고 또한 자국이 타국에게 관세를 인하해 줄 수 있는 품목과 세율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제시하면서 협상을 진행시키는 방법.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국제무역기구)

1948년 GATT 원서명국인 23개국이 UN 전문기구로서 창설하고자 하였던 국제무역기구. ITO의 창설은 Havana 현장이 미국 의회에서 비준

되지 못함에 따라 무산되었으며, ITO현장 초안의 일부분에 주로 근거한 GATT가 세계무역에 책임있는 국가들이 수락한 무역규범을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 다자간 국제문서로 남게 되었음.

[K]

Kennedy Round(케네디라운드)

1963년부터 1967년까지 개최되었던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 케네디 대통령의 제창에 의해 개시되어서 그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명명되었으며 동 다자간 협상에서는 공산품 평균관세의 35% 인하, 반덤핑 협정문 제정 등의 합의를 도출하였음.

[L]

Like Product(동종상품)

덤핑의 정의에 대한 표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문으로서, 동종상품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타 GATT 조항에서는 다소 넓은 의미로 해석되기는 하지만 반덤핑협정(GATT 6조)상의 개념은 동일상품(same product)을 가리킬 정도로 상당히 제한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덤핑이란 오직 동종상품의 가격비교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임.

Lisbon Agreement(리스본협약)

WIPO(세계지적 재산권 기구)의 주관하에 원산지명명과 그 국제적 등록의 보호를 위해 체결된 조약.

LLDCs(Least Developed Countries : 최빈개도국)

NFIDC(식량순수입국 개도국) 참조

[M]

Madrid Agreement(마드리드협약)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주관하에 기만적인 상품산지표시를 억제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

Market Access(시장접근)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히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외국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함. UR 농산물협상의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에 따라 모든 농산물의 시장을 관세 상당치(TE)에 의해 개방을 할 경우, 수출국의 상품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하여 일정물량은 현행의 낮은 관세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시장접근물량이라 하며, 현행 시장접근물량(CMA)과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구분함.

Marks of Origin(원산지 표시)

GATT 제9조는 한 체약국의 원산지 표시요건이 다른 국가의 상품에 대해 제3국이 동종상품에 허용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규를 제정 또는 실시함에 있어서는 자국의 소비자의 보호와 수출국의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해당 상품의 현저한 손상이나 가치의 실질적인 감소 또는 관련비용의 부당한 증대를 야기시켜서는 않되도록 요구하고 있음. 한편, 체약국들은 다른 체약국이 입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독특한 지리적(지역적) 상표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해야 함.

Mark-up(수입차익 또는 수입이익금)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수입, 판매에 소요된 총비용을 공제한 수입이익금으로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상에 따르면 97개 품목

은 국영무역운영과 Mark-up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Mark-up 운영의 의미는 수입물품에 Mark-up을 부과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므로 시장접근물량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현행 수준에서 유지되어 국내생산 농가를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수입이익금을 정부관련기금에 납입하여 생산자 지원이 가능하게 됨.

MERCOSUR(Mercado Comun del Sur)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간에 1992년 11월 29일 발효한 무역협정으로 최근에 Chile가 새로 가입하였음.

MFA(Multi-Fiber Arrangements ; 다자간 섬유협정)

1974년 체결된 섬유류무역에 대한 국제협약으로 3회 연장을 거쳐 현재 MFA(IV)(1986년 8월 - 1991년 7월)에 이룸. 수출국과 수입국간 쌍무협상을 통하여 교역량을 제한하고 수입국의 일방적인 수입제한조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개도국 수출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수단으로 활용됨.

MFN(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 최혜국대우)

국제관계에서 최혜국조항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14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서 MFN원칙이 이용된 것은 대체로 17C부터 18C에 걸쳐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MFN원칙이 일반화된 것은 19C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음. ITO 현장 및 다자간 무역협정에 MFN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2차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주요선진국에 의해 구체화되었음. GATT 제1조는 MFN 원칙의 적용에 따르는 의무사항으로 『체약국은 다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또는 다른 국가에 적송되는 상품에 대해 허용하는 편의, 특전, 특권 또는 면제를 다른 모든체약국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동종상품과 동영역에 적송되는 동종상품에 대해서도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FN원칙은 GATT 전규정을 망라한 무차별원칙이며, MFN원칙에 대한 예외조치로는 우선 GATT상의 어떤

의무에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예외” 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25조 5항의 웨이버권한, 20조의 일반적예외, 21조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 19조의 면책조항 등이 이에 속한다. 이밖에 MFN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조항은 14조의 국제수지악화를 이유로 한 수량제한에 대한 예외, 24조의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협정에 따르는 예외, 35조의 특정국가간의 협정부적용, 23조를 근거로 한 의무의 정지 등을 들 수 있음.

Mid-Term Review(중간평가)

1987년 2월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농산물이 갖는 각국의 정치·사회적 민감성 때문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참가국이나 협상의 목표인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 확대”에는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었으나 세계농산물시장의 수급불균형 및 가격침체 원인에 대한 수출입국간의 근본적인 시각차로 주요 의제인 보조금철폐 및 협상대상으로서의 장단기 조치에 대해 참가국들이 첨예한 이해 대립을 보임으로써 협상과정이 순탄치 못하였다. 특히 1988년 12월 UR의 중간평가를 위해서 Montreal에서 개최되었던 무역협상위원회(TNC) 각료회의에서는 농업보조금의 완전철폐(Elimination)를 주장하는 미국과 점진적인 감축(Progressive reduction)을 주장하는 EC의 입장대립으로 농산물 협상분야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GATT의 중재 및 각국의 의견조정을 거쳐 1989년 4월 Geneva에서 재개된 TNC 고위각료회의에서 농산물분야의 중간평가 합의안이 정식으로 채택되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후반기 실질적 협상에 돌입하였다. 농산물분야 중간평가에서는 장기조치 및 농업개혁지침(Long term Elements and Guidelines for Reforms), 단기조치(Short term Elements),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 및 동식물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Regulations) 등의 3개 분야에서 중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장기조직 및 농업개혁지침에 대해서는, UR 농산물

협상의 장기적 목표를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산물 교역체계의 확립 (establish a fair and market oriented agricultural trading system)”이라는 데에 합의하고 먼저 농업지원 및 보호조치에 관한 금번 중간합의는 향후 협상에서 채택될 구체적 방법에 의해 “상당한 수준으로 점진적 감축(Substantial Progressive Reduction)”을 행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대해서만 우선적인 합의를 보였다. 이는 지난 몬트리올 중간평가회의시 결렬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에 대한 미국과 EC의 의견차이였기 때문에 이같은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중간합의는 위의 합의된 일반원칙(상당한 수준으로 점진적 감축)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써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국의 특정정책 및 조치별 협상에 의해 농업지원 및 보호수준을 삭감하는 방안 둘째, 총량농업지원측정방법(AMS)에 의해 농업지원 및 보호수준을 삭감하는 방안, 셋째, 양자를 혼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GATT규율의 원칙의 강화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보면 중간합의에서는 수입접근(import access) 및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한 GATT의 규율 및 원칙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 이 경우 개도국 특히 식량순수입 개도국에게는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측면에 대해서도 협상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Ministerial Conference(WTO 각료회의)

기존의 GATT에서 1년에 한번 개최되는 GATT 체약국단 회의기능을 대체하는 WTO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최소한 2년에 1회 개최됨. 각료회의는 타기구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의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구체적인 의사결정요건에 따라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보유(WTO협정 4조 1항)하며, 다자간협정하의 기관에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료회의 또는 일반이사회에서 표결처리가

능함. WTO발효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각료회의는 '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됨.

Ministerial Decision and Declaration(각료결정 및 선언)

WTO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협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내용을 명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덤핑협정과 관련된 결정 및 선언, 통보절차에 관한 결정,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결정 등 12개 분야에 대한 결정 및 선언이 있음.

Ministerial Meeting(APEC 각료회의)

1989년 호주의 캔버라에서 APEC 제1차 각료회의가 열림으로써 APEC이 출범하였으며 매년 1회 개최되어 현안을 상호 협의함. 실질적인 의미에서 APEC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1993년 이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상징적인 위상은 약화되었으나 아직도 고위실무회의(SOM)에 작업 지침을 하달하고 보고를 받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

MMA(Minimum Market Access : 최소시장접근)

농산물협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년도 3%에서 최종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C/S에 반영됨. 최소시장 접근물량에 대해서는 C/S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됨

Modalities(실행지침)

하나의 협정이 실행될 방식을 규정한 지침

Modification of Schedules(양허표의 수정)

GATT 28조에 의거하여 관세양허가 수정되거나 철회될 때 보상의 협상을 위한 절차에 대한 합의, 문제가 된 상품이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에 대한 새로운 협상권의 창설도 포함됨.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s, Halon 등에 대한 생산 및 사용규제에 관한 협약으로 총95종의 규제대상물질을 지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92년 5월에 가입하였음.

MPP(Market Promotion Programm ; 시장촉진정책)

미국이 농산물수출시장 촉진을 위해 기업 및 협회에게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로 고부가가치 가공농산물을 대상으로 단기간의 시장개척 및 판매촉진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시장개척 및 촉진정책은 허용대상 정책이므로 WTO 농산물협정의 제한을 받지 않음. 따라서 미국 농민들은 수출진흥정책의 예산감축에 따라, 이들 정책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96 Farm Bill에서는 MPP는 MAC(Market Access Programme : 시장접근계획)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MTN Code(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Code : 다자간무역협정)

동경라운드에서 체결된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정부조달,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기술장벽 등 6개의 비관세분야와 낙농, 쇠고기, 민간항공기 등 3개의 상품관련분야의 다자간 협정을 총칭함.

Multilateral Negotiation(다자간협상)

통상협상방식의 하나. 통상문제를 양자간 해결하는 쌍무협상과는 달리 UR협상처럼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

[N]

NAC(Nominal Assistance Coefficients ; 명목지원계수)

한나라 경제의 경제활동별, 분야별 지원구조의 차이가 더 벌어질수록, 동 지원에 의해 야기되는 경제의 비효율성은 커지는 것이다. 경제의 비효율성이 생산자나 소비자 결정에 미치는 예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OECD는 명목지원계수(NAC) 개념을 개발했다. 생산에 대한 명목지원계수(NAC on Production)는 비보조국경가격에 단위당 PSE를 합한 가격의 국경가격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소비에 대한 명목지원계수(NAC on Consumption)는 국경가격에 단위당 CSE의 절대가액을 합한 가격의 국경가격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생산 명목지원계수 소비명목지원계수는 국내지원구조에 의한 국내외 가격차이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 두가지 명목지원계수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국내정책에 의한 생산 및 소비에 있어서의 왜곡 효과는 커지는 것임.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 북미자유무역협정)
미·캐나다·멕시코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National Treatment(내국민대우)

GATT에서 규정된 여러가지 의무 가운데서 각 가맹국의 국내정책과 가장 직접적으로 충돌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제3조에 집약되어 있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관한 의무이다. GATT상의 “내국민대우”란 각국은 조세 및 정부규제등에 있어 수입품을 국내제품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입품을 공평하게 취급하되 국내제품은 유리하게 취급될 수도 있는 최혜국대우원칙에 비해 훨씬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MFN원칙하에서는 A국은 X국과 Y국의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만하면 되는데 비해 내국민대우 의무는 A국으로 하여금 X국과 Y국의 상품을 자국생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인 내국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관세에 버금가는 보호주의적 도구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형태의 정부규제도 국내제품을 보호하고 수입품을 자국 시장에서 몰아내는데 있어 관세보다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혼한 예로서 수입품에 대해 특별한 상표표시방법이나 포장을 요구한다든지 건강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행정적규제가 수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내국민대우의무는 가맹국정부의 조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GATT의무에 비해 내국정치문제와 쉽게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내국민대우의무에 위배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 한편 GATT 초안작성과정에서는 내국민대우에 관한 조항을 GATT에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 특히 그 적용범위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일부 협상대표들은 GATT의 내국민대우의무는 양허표에 명기된 상품에만 국한하여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협상대표들은 내국민대우조항의 목적은 양허표의 보호뿐 아니라 내국세나 각종 정부규제가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기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47년 10월에 채택된 GATT협정문의 내국민대우조항은 1948년 『하바나』 회의에서 전면개정함에 따라 수정되었으며, 1948년 가을의 『제네바』회의에서 GATT 체결국들은 『하바나』회의에서 수정된 ITO현장안의 어떤 부분이 GATT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내국민대우규정을 그대로 GATT에(제3조)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GATT수정의정서에 포함시킴으로서 같은해 12월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Negative System(네가티브시스템)

점진적 자유화 추진방식의 하나로 개방이 불가능한 부문이나 사항만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부문이나 사항은 자동적으로 개방되는 방식임.

New Round Negotiation(뉴 라운드협상)

세계경제에서 점점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R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환경과 무역문제, 노동과 무역문제, 공정경쟁과 무역문제 등을 규율하는 새로운 다자간 협정 틀을 만들기 위해 지금 세계무역기구(WT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등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통상문제에 관한 다자간 논의를 뜻함.

NFIDC(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 식량순수입개도국)

'96년 WTO농업위원회에서는 그 결정사항으로 최빈개도국 및 식량순수입개도국에 포함될 국가들의 목록을 선정함에 있어서 최빈개도국은 UN의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서 인정된 국가들(1인당 GNP 1,000불이하 국가)을 들고 있으며, 식량순수입개도국은 제시할 수 있는 최근 5년 중에서 특정 3개년간의 기초식량(Basic Foodstuffs)의 순수입국(Netimporter)인 개도국 회원국으로 바베이도스, 코트디브와르, 혼두라스, 케냐 등 15개국을 들고 있음.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WTO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결정 및 농업 협정 제16조에 의거하여 선진회원국들이 WTO협정에 규정된 후속 조치와 적절한 감시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Non-Actionable Subsidies(허용보조금)

보조금·상계관세협정에서의 허용보조금은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중 연구, 지역개발, 환경보조금 등 3종이며, 동 조항은 5년간 적용된 후 재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제31조) 허용보조금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수출국은 수입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60일 이내에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보조금·상계관세 위원회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120일 이내) 한편 여타 보조금의 경우에는 분쟁해결기구(DSB) 제소가 가능하나 허용보조금은 위원회에만 문제제기 가능함.

Non-Automatic Import Licensing(비자동수입허가)

WTO 수입허가제한의 시행절차협정 제3조에 따르면 제2조의 자동수입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수입허가절차를 말함. 동 허가절차가 수량제한이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허가의 부여 또는 배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함. 수량제한이 목적일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회원국의 요청시 제한의 시행, 최근기간동안 부여된 수입허가 및 공급국간 배분, 수입통계(단, 개도국은 이로 인한 행정·재정상 부담을 지지 않음)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하며, 쿼타의 총량, 개시일, 마감일, 이에 대한 모든 변경, 쿼타의 공급국간 배분내용, 쿼타를 조기개시할 경우 그 일자에 관한 사항은 발효일 21일 이전에(늦어도 발효일 전에) 통보가 필요하며,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선착순일 경우 30일, 모든 신청자가 동시 고려될 경우 6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허가의 배분에 있어서는 신청자의 수입실적, 경제적인 물량허가여부, 개도국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Non-Exempted Domestic Support(감축대상 국내보조)

WTO 농업협정은 농업관련 국내보조조치중 허용대상정책 및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않는 모든 보조는 감축대상보조로 분류하고 있음. 감축대상보조조치는 무역왜곡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당해 품목의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경보호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정부가 농산물가격에 개입하는 시장가격지지, 농업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업생산자에게 농업생산 또는 가격등을 기준으로 직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감축대상 직접보조, 생산자의 생산비 절감, 유통비용 절감 등 농업생산, 유통에 수반되는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허용보조 이외의 모든 여타 지원조치(영농자금지원, 자재지원, 유통비용지원 등) 등을 말하며, 감축의무면제 대상으로는 개도국우대보조, De-minimis 보조, 생산제한 계획하의 직접보조 등이 있음.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비특혜 원산지 규정)

무역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되는 규정

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 운용

-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의 허위표시 또는 오해의 우려가 있는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유통 수입을 방지하는 등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

② 반덤핑·상계관세제도 운용

③ 수량제한 및 할당 관세제도 운용

- Quota, 수출자율규제제도, 시장질서협정, 다자간 섬유류협정, 긴급 수입제한

④ 수입지역 제한제도 운용

- 국민보건위생 보호, 수입선 다변화제도,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Non-Product-Specific AMS(품목불특정적 보조총액측정치)

품목불특정 AMS란 WTO 농업협정상 허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농업생산자에 대한 보조이나, 특정 농산물 생산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품목별 지원액을 구분 계산하기 어려운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원대상품목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원하는 농업용 자재지원, 영농비용지원, 유통비용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이들 품목의 보조액은 지원정책별로 재정지출액 또는 농가수혜상당액을 계산(품목별 AMS 계산 방법과 동일)하고 각각의 보조액을 합산하여 산출함.

Non-Recourse Loans(비상환용자)

미국의 주요 농업생산보조정책에는 비상환용자정책(non-recourse loans)과 차액보상(deficiency payments)로 대변할 수 있는데, 지난 30년동안 밀, 사료용 곡물, 면화 및 쌀에 대한 가격지지는 생산농가에 대한 비상환용자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작물을 담보로 기존 용자가격으로 비상환대출을 받고, 시장가격이 용자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원리금을 상환하고 수확물을 판매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때는 담보로 한 작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 이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작면적감축계획(ARP)에 참여해야 함. 최근에는 시장가격이 용자가격보다 낮게 유지되어 생산농가는 용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상품신용공사(CCC)가 잉여농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이때의 잉여농산물은 상품신용공사가 시장에 판매하거나 식량원조형태로 처분하기도 하지만 종종 손실처리함.

Non-tariff measures(비관세조치)

국제교역에 있어서 쿼타, 수입허가제도, 위생규제조치 등 관세가 아닌 조치들.

Non-violation case(비위반사건)

GATT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으로서의 이익의 무효화 내지 침해를 야기하는 조치 또는 상황.

Normal Value(정상가격)

정상가격이란 반덤핑협정상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당해물품의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말함. 다만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 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봄.

NTB(Non-Tariff Barriers : 비관세장벽)

관세이외의 무역장벽을 의미하는데 ①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및 외환할당 등) ② 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보건위생 규정 또는 내국세제도 등)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음.

NTC(Non-Trade Concerns : 비교역적 고려사항)

NTC(비교역적 고려사항)은 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교역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농업이 지닌 고유한 역할로서 이에선 식량안보, 환경보전, 고용유지, 지역개발 그리고 사회적 혹은 문화적 측면과 관련된 기능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휴전상태로부터의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농업의 취약성 때문에 그 중요성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 크다고 하겠다. NTC에 대한 GATT

규정으로는 GATT 제21조(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b)의 (iii)을 들 수 있으며, UR 농산물협상시 TNC(무역협상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협상초기부터 각국의 농업정책수행상 무역정책 이외의 요소들이 고려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논의되었으나 각국의 입장은 상이하였음. 미국은 NTC를 식량안보로(Food Security) 한정하고 이는 모든 국가의 관심사항이나 식량자급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식량안보는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국내 비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NTC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였으며 단지 수출국입장에서 수출규제 및 금지조항을 개선할 수 있으며 식량비축을 위한 보조금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케언즈 그룹도 미국안과 유사하며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농산물생산 및 무역이 왜곡되어서는 안되며 식량안보는 곡물 및 사료곡물의 적정재고유지와 공급선다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식량자급을 통한 식량안보는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비용이 들고 수출국에 대한 이익침해를 초래한다는 것이었음. 일본은 최대수입국으로서 NTC중 식량안보는 특별하고도 중대한 관심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적정한 국내생산기반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일본이 제안하고 있는 식량안보의 개념은 국민 기초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국경조치(GATT 11조 2항 (c) i)는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식량안보에 염두를 두고 있는 품목은 쌀로써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쌀 만큼은 자유화품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배후에 깔려 있었음. 스위스는 비상업적 목적(Non-Commercial Objective)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보호비용은 해당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국내농업수준 유지는 각국의 고유한 주권사항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합의된 전체자급을 범위내 보조 및 보호조치 수단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11조의 개정을 통해 이를 GATT에 명백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우리나라는 기초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하며 이는 최저시장접근율 또는 최소자급율로 표시되며 그 범위내에서 필요한 국경 및 국내보호

조치를 GATT규범에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한국을 비롯한 일본, 스위스 등 수입국측은 NTC가 GATT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입국마다 관심사항 및 보호 품목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어 공동보조를 취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음. 우리나라가 NTC품목으로 제시하여 관세화 예외를 요구하였던 쌀, 보리, 쇠고기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쌀에 대해서만 관세화 원칙에 대한 특별대우를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14개 품목중 9개 품목은 이미 '89년에 '97년 7월까지 현행관세로 자유화하기로 약속했던 품목(BOP 품목)들로서, 해당품목의 관세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자유화 시기를 최대한 늦췄음. 쇠고기는 수입 제한기간을 2000년까지 3년 연장하고 관세율은 두배이상 (20→43.6%)으로 인상하였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및 오렌지 등 3개 품목은 관세율을 인상하면서 '97년 7월부터 자유화하기로 하였고, 그밖에 유제품, 고추, 마늘, 참깨 등 5개품목은 '95년에 자유화하되 관세를 대부분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였음. 그밖에 특별법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어온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등 5개품목은 국내외가격차 만큼 관세화하여 시장접근물량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Nullification or Impairment(무효화 또는 침해)

GATT 제23조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 다른 체약국이 동 협정에 의한 의무불이행, 특정조치 적용결과 및 기타 상태존재 결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에 부여된 모든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본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인정할때 상대 체약국과 조정을 하든가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음. WTO 협정은 회원국간 이익침해 조치로 인한 분쟁을 모두 분쟁해결절차로 통합하여 대상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무효화 또는 침해 사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여 회원국의 권리·의무간의 적절한 균형유지를 위해 분쟁해결기구를 활용하고 있음.

[O]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이 공산진영과의 대결구도하에서 유럽 경제부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부 유럽국가들에 대해 『마샬플랜(Marshall Plan)』에 의한 원조를 실시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유럽국가간 협력체로서 1948년에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 구주경제협력기구)를 창설하고, 그후 미국이 전후 최대의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의 지위변화, 유럽의 급속한 경제부흥에 따라 보다 광역적인 경제협력체의 창설 필요성을 인식하고 OEEC를 확대발전시킨 OECD를 1961. 9. 30 설립함. OECD 현재 회원국은 27개국으로 유럽지역 21, 아메리카 3, 아시아 및 대양주 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가입을 신청중에 있는 나라는 슬로박('94. 1), 폴란드('94. 2), 한국('95. 3. 29), 러시아('96. 5. 20)이고, 차기 가입대상국으로 한국이 가장 유력하며 현재 분야별 심사가 진행중임.

—————(OECD회원국 현황)—————

- 유럽(21) : 오스트레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체코('95. 12), 헝가리('96. 3)
- 아메리카(3) : 미국, 캐나다, 멕시코('94. 5)
- 아시아 및 대양주(3) : 일본, 호주, 뉴질랜드

OECD는 포괄적인 국제경제협의체로서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방향과 원칙, 지침을 채택하여 시행하는 협의기구이며, WTO와 같이 국제규범을 직접 교섭하거나 제정하는

기구가 아님. 즉 OECD는 협상을 위한 기구가 아니고 회원국의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정책을 토의하고 협조조정하기 위한 기구임. 다른 국제기구가 무역, 통화, 환경, 지역개발등 특정분야만 다루는데 반해, OECD는 경제정책은 물론 경쟁, 에너지, 고용, 교육, 소비자보호등 모든 경제 및 사회문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경제협의기구임. 주요사항 결정은 각 회원국이 “자유로운 정책선택의 원칙”을 토대로 하여 컨센서스(CONSENSUS)에 의한 결정을 추구하며, 결정된 사항은 회원국간 신뢰관계에 의해 준수되는 클럽적성격을 가지나, 회원국간 『동료간의 압력(Peer Pressure)』을 통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감. OECD는 기본적으로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기구이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막중한 경제적 비중과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과 세계경제질서 구축을 주도하여 왔으며, 이러한 역할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무역이슈에 대한 개념정립기반을 마련하는 범세계적인 무역·경제관련 규범의 선도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즉, 투자상의 장벽제거, 농산물생산보조감축등과 같은 개념도 OECD에서 먼저 논의된 후 UR에서 국제규범화 되었으며, 무역과 투자, 환경, 경쟁정책, 노동, 규제완화, 뇌물공여방지, 국내정책의 상호조화 문제를 새로운 국제무역 이슈로 논의중에 있으며, 범세계적인 경제기구인 WTO, IMF는 물론 EU, NAFTA, APEC등 지역협력체의 구성원이므로 기구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OECD 협정문 제16조에 의하면 신규회원국의 가입 결정은 『이사회에 초청에 의하여 전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요하며, 가입효력(정식가입)은 『가입서를 프랑스정부에 기탁』함으로써 발생함.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7월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96년말까지 OECD가입기로 결정하고, '94년 5월 외무장관 서한을 통하여 가입의사를 공식전달한바 있으며, '95. 3. 29일 공식가입신청서를 외무부장관 명의로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95년 12월부터 아국의 가입협의자료(Memorandum)제출 및 분야별 정책검토가 계속되고 있음.

OECD/Committee for Agriculture(OECD 농업위원회)

OECD 농업위원회는 1961. 9. 30 설립되었으며, 현재 27개 전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읍서버국으로는 한국, 폴란드, 알제틴, 슬로박등 4개국과 국제기구(FAO, WTO, EU)등임. 농업위원회 산하에는 3개의 작업반(Working party), 3개의 작업그룹(Group), 4개의 회의(Meeting)가 있음. OECD 농업위원회는 회원국간 농업정책에 대한 협의 및 농업의 발전도모, 회원국의 농업현황 조사, 농산물시장 및 유통기능향상에 관한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하며, 농업정책·시장 및 무역의 모니터링, 농업개혁 및 구조조정에 관한 활동, 농업표준·통계 및 연구에 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94년 9월 OECD/농업위원회에 읍저버가 입을 신청 하였으며, '94년 11월 OECD 제119차 농업위원회의 결정과 '94. 12. 19 OECD이사회 승인으로 읍저버로 가입, '95년도부터 OECD 농업관련 각종회의 참가 등 OECD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음. OECD 농업위원회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관련하여 '96 중반부터 '97년까지 한국농업에 대한 국별검토(Country Review)를 실시할 예정임.

OECD/Committee & Working party(OECD위원회 및 작업반)

OECD이사회는 필요에 의해 각 전문분야별 위원회(Committee)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농업위원회등 26개의 전문위원회와 보조성격의 4개의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200여개의 작업반(Working party)이 있음.

OECD/Convention(OECD 협정)

전문과 21개조로 구성된 OECD협정은 OECD의 설립목표와 동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방향, 활동방법, 규범제정, 이사회등 기본조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협정의 수락은 OECD의 기본설립 목표에 대한 수락을 의미함.

OECD/Council at Ministerial Level(OECD 각료이사회)

OECD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의 각료로 구성되어 매년 1회(5월

말이나 6월초) 개최되며, OECD의 주요정책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선언문(Communique)을 발표함. 특히, G-7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한 사전입장 조정, OECD의 지난 1년간의 활동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지침을 확정함.

OECD/OLIS(On-line Information Service ; OECD 온라인 서비스망)

OECD/OLIS는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기구인 OECD회원국과 대표단들에게 OECD관련정보를 제공하는 On-line 서비스망으로서 OECD/컴퓨터 및 통신위원회(DCC)가 1985년 통계자료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나, 1986년에 OECD가 발표하는 대부분의 문서(Documents) 및 전자우편(E-mail) 서비스를 추가하게 되었음. '95. 6에는 기존 OLIS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OLISⅡ를 개발하여 운용중에 있으며, 아국은 '95년 11월부터 일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OECD/OLISⅡ를 설치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가입기관은 대부분이 중앙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 국책연구기관이며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수산청, KREI가 가입 운영중에 있음.

OECD/Special Executive Committee(OECD 특별집행위원회)

OECD 회원국의 차관 또는 차관보급으로 구성되며, 금융, 무역, 투자등 국제경제상의 주요문제를 검토함.

OMA(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 시장질서유지협정)

미국은 섬유 이외의 품목에 대한 수출국별 선별적인 양자간 규제협정을 OMA라고 칭하고 있다. 수출자유규제와 유사한 것이지만 협정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GATT의 무차별대우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VER(수출자유규제)과 함께 회색지대조치의 전형임.

Osaka Declaration(오사카선언)

'95. 11. 19 일본의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상회의시 채택된 선언으로 APEC은 경제발전수준과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할 경우 성공적인 협력강

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무역투자 자유화와 행동지침(Action Agenda)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은 선진국형 자유화 모델을 APEC에서 무차별적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각국의 다양한 사정과 발전단계, 취약부문 등을 고려한 신축적이고 자발적인 개방정책 추구를 주장하였음. 한국은 APEC 무역투자자유화의 행동지침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유화가 진전되고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입장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 등 아시아 개도국의 관심분야에 있어서는 그들의 입장을 선도적으로 대변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이러한 입장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은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APEC의 목표와 발전방향으로 공동번영, 경제협력, 자발성 및 다양성 고려 등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대통령이 제시한 APEC의 목표와 발전방향에 대해 각 회원국 정상들이 공감함으로써, 이 방향이 21세기를 겨냥한 APEC의 활동과 무역투자 자유화의 추진방향으로 정착되었고, 농업 부문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본 및 중국과의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다각적인 교섭 노력을 끈질기게 기울인 결과 농업 등 각국의 어려운 여건을 배려할 수 있는(신축성을 부여하는) 일반원칙(행동지침 8항)이 경제지도자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자유화의 방식과 기간 등에 대해 우리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

— (Action Agenda 내용) —

8. FLEXIBILITY

Considering the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among the APEC economies and diverse circumstances in each economy, flexibility will be available in dealing with issues arising from such circumstances in the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process.

[P]

Panel(패널)

WTO 분쟁해결 협의결과,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에 실패하거나, 협의기간중 당사국 모두가 협의에 실패했음을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요청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패널설치의 요청은 서면제안으로 이루어지며 동 요청서에는 협의이행 여부 및 문제가 된 특정조치를 명시하고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포함되어야 함. 패널은 분쟁당사국이 패널설치 후 20일 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위임사항을 설정하여야 함. “관련협정상의 규정에 의거……DSB에 회부된 사안을 검토하고, DSB가 관련협정하에서 권고나 결정을 내리는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실발견을 함.” 패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정부 및 (또는) 비정부 인사로 구성됨.

- 패널업무 및 패널에의 제소경험이 있는 자
- WTO나 기존 GATT 회원국의 대표로서의 경험이 있는 자나 혹은 사무국(Secretariat)에서 종사한 바 있는 자
- WTO하의 제반 관계협정이나 그 이전 협정하의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회원국의 대표로서의 경험이 있는 자
- 국제무역법이나 국제무역정책에 관한 강의나 논문발표 경험이 있는 자
-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관한 고위실무 경험이 있는 자

분쟁당사국이나 당해분쟁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의 국적을 가진 인사는 당사국간의 합의가 없는 한, 패널리스트로 선정될 수 없음. 사무국은 패널리스트 선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정부 및 비정부인사 목록을 보유하여 상황에 적합한 패널리스트를 선정할 수 있음. 패널은 설치후 10일 이내에 5인의 패널리스트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3인으로 구성함.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분쟁발생시에는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최소한 1인의 위원을 개도국인사로 위촉하여야 함. 부패성 물품 등의 긴급한 상황하에서는 보고서가 3개월내에 분쟁당사국에 제시

되는 것을 목표로 함.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혹은 긴급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패널은 연장사유 및 보고서 제출예정일을 서면으로 DSB에 통보하여야 하나, 9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패널의 심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패널보고서에 기록된 개별 패널리스트의 의견은 익명으로 함. 패널은 분쟁당사국으로부터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후 동 국가들에게 패널의 서술부문과 조사부문 및 결론 등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제시해야 하며, 분쟁당사국들로부터 견해표명이 없을 경우, 중간보고서는 최종보고서로 간주됨. 패널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일방당사국이 DSB에 공식적으로 상소의사를 통보하거나 DSB가 총의에 의해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동 보고서는 배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택됨. 일방당사국이 상소의사를 통보하면 동 보고서는 상소가 종결될 때까지는 DSB에서 채택될 수 없음.

Paris Convention(파리협약)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주관 아래 체결된 조약으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상호, 산지표시 및 원산지명명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동 조약은 불공정경쟁을 억제하는 것도 추구함.

Pest-or Disease-Free-Area(병해충 안전지역)

WTO/SPS 협정의 병해충 안전지역이란 국가전체 또는 일부, 수개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주무당국에 의해 확인된 지역을 말함.

Peace Clause(평화조항)

WTO농업협정 13조의 적절한자제(Due Restraint)관한 내용으로써 국내 및 수출보조 감축이 동 협정의 요건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각회원국의 양허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는 동 협정이행기간(선진국 6년, 개도국 10년)동안 보조금규정에 의한 규제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복수국간 무역협정)

WTO협정에 부속된(Annex 4)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민간항공기, 정부 조달, 국제낙농, 국제우육에 관한 협정 등 4가지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정부조달협정에만 가입하였음.(’97. 1. 발효예정)

Positive System(포지티브 시스템)

점진적 자유화 추진방식의 하나로서 개방이 가능한 부문 및 사항만을 열거하고 점차적으로 협상을 통해 개방가능한 부문 및 사항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임.

Preferential Rules of Origin(특혜 원산지 규정)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상에 의한 특혜무역협정인 EFTA, LAFTA, NAFTA, AFTA,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특정 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풀기 위해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으로서 특혜를 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이 수혜대상국산 물품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특정 국가군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운용할 때 적용하는 규정도 여기에 해당됨. 이는 수혜국을 정확히 식별하여 비수혜국이 부당한 혜택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Preshipment Inspection(선적전 검사)

선적전검사제도는 농산물 및 특히 공산품의 자국수입과 관련하여 동 상품의 품질(성능, 규격, 재질, 제작형태, 상태 등), 수량, 수입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수입국 정부기관 또는 중앙은행이 지정한 선적전 검사기관이 선적전에 수출국 현지에서 검사하고, 동 검사결과에 따라 수입국 도착후 통관처분 및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관세평가 능력이 없는 후진국이 실시하는 제도임. 선적전 검사제도는 그동안 국제규범이 없는 상태에서 각국의 검사기관의 운영과정에서 자의적인 가격검정 등을 가능케 하고, 이에 따라 개도국내 수입자의

부정무역행위에 선적전 검사기관이 영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며, 또한 선진수출국측의 입장에서도 동 제도가 자국의 수출에 규제적인 걸림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따라서 이러한 자의적인 선적전 검사제도가 야기하는 무역왜곡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국제규범의 제정이 강력히 주장되어 UR비관세 협상그룹에서 가장 먼저 타결을 본 협약중의 하나임. 선적전 검사제도는 UR협상의 타결여부와 관계없이 종래부터 GATT 관세평가 협약에 미가입한 후발개도국들을 위주로 하여 27개국이 활용하고 있음(인도네시아, 필리핀, 콩고, 가나, 나이지리아, 잠비아, 기니, 케냐, 코트 디부알, 마다가스칼, 자이레,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앙골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과테말라, 에쿠아돌,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등).

선적전 검사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 ① 수입국정부가 자국의 공무원을 수출국현지에 파견시켜 검사종료후 선적
- ② 수입국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위탁하여 행사하는 방법
- ③ 상기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이 있음.

대부분은 공인기관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수입국 공무원이 수출국 현지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도 있음. 선적전 검사전문기관은 세계적으로 6-7개의 다국적 회사가 있고, 한국에는 스위스계의 한국현지법인인 있음. 선적전 검사기관과 수출자간의 수출물품검사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종전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으나, 선적전검사협정 제 4조(독립적 심사절차)를 설치하여 선적전 검사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와 수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된 독립기관에 의하여 분쟁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음.

Principle of comprehension(포괄성 원칙)

'95년 APEC 동경 정상회담에서 다시 대두된 국제무역 및 투자 자유화 추진원칙으로서, 이 포괄성의 원칙은 UR농산물 협상과정에서 논의된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원칙과 유사한 개념이다. APEC에서는 이 원칙을 APEC이 추구해 나가고 있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한 추진목표

를 모든 분야에서 예외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APEC의 15개 행동강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회원국은 자국한테 불리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서 이행해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함.

Principle of flexibility(신축성의 원칙)

'95년 APEC 동경 정상회담에서 다시 대두된 국제무역 및 투자자유화 추진원칙으로서, 이 신축성의 원칙은 APEC이 지향해 나가는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회원국 정부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 기업가 및 무역당사자의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APEC 각 회원국간에 무역 및 투자가 자유스럽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자는 원칙을 뜻함.

Producer Retirement Programmes(생산자 은퇴계획)

WTO 농업협정상 직접지불형태의 은퇴농, 이농대상 보조로서 허용대상 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혜자격을 상업적 농업생산에 종사하던 사람이 은퇴 또는 비농업활동으로 이농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명백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수혜자가 상업적 농업생산으로 부터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은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함.

Product Specific AMS(품목특정적 보조총액추정치)

품목특정적 AMS는 시장가격지지, 비면제 직접지불, 감축약속이 면제되지 아니한 그밖의 보조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농산물별로 보조금 지원내역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임(A 품목의 AMS : 시장가격지지 + 감축대상 직접보조 + 기타 감축대상 보조). 다만, 농업협정에 제6조5항에 규정된 생산제한정책하의 직접지불은 감축기준보조(Base AMS)에는 산입하여 계산되나 이행기간 당해년도 Current AMS 계산시에는 이를 AMS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감축의무이행을 면제하고 있음.

Prohibited Subsidies(금지 보조금)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부속서 I에 예시된 바와 같이 수출성과, 수입대체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을 말하며, 금지보조금이 공여되는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과 협의를 거친 이후 DSB(분쟁해결기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수출국은 DSB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철회해야 하며, 피해국은 수출국의 불이행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금지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금지보조금의 존재 자체만으로 구제절차 적용이 가능함. 수입국과 수출국의 협이가 30일 이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DSB에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패널은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함(조치가능 보조금의 경우는 각각 60일과 120일임)

Protocol(의정서)

UR협상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협상결과와 동 협상결과를 구체화시키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협정문, 결정문, 양해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Protocol of Accession(가입의정서)

한 국가가 GATT에 가입할 때 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법적 문서(Grandfather Clause 조부 조항) 참조.

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잠정적용 의정서)

Grandfather clause(조부 조항) 참조.

PSE(Producer Subsidy Equivalent ; 생산자 보조 상당치)

PSE는 일정 시점에서 농정의 결과 소비자 및 납세자로 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된 금액 즉, 농정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보조의 총화폐금액을 측정하는 것임.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농업정책의 중단시 발생하는 생산자의 소득 손실액을 지칭하며, 이는 정부개입시와 정부개입이 없을 때에 가상적인 상태간의 비교임. 여기에는 정부지출이 수

반되는 농민에 대한 보조와 저리융자, 세금감면등 정부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농민에 대한 보조도 포함됨. PSE의 구성요소는 생산자 및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시장가격지지조치, 가격상승없이 납세자로 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되는 직접지불조치, 생산에 사용되는 투입요소비용을 낮추는 모든 투입비용보조조치, 생산자에게 지불되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갖는 일반서비스정책등 5가지 범주이며, 지방정부보조 및 세금감면도 포함됨. PSE 계산시 제외사항으로는 농민들이 수령하지 않은 예산지출(식품가공과 유통분야에 대한 보조), 농업 부문과 관련이 없는 지출, 농업부문에 자원을 탈농시키는 조치와 관련된 지출임. OECD 연례보고서에서 매년 측정 발표되는 계산대상 표준품목수는 밀, Coarse grain(옥수수, 보리, 귀리, 사탕수수), 쌀, 유지작물(대두, 유채, 해바라기씨), 설탕(refined equivalent),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양모, 계란등 12개품목임. OECD Country Study시 PSE 계산에서는 각국의 농업사정을 고려하여 생산자자격으로 농업생산액의 1% 이상인 품목을 모두 포함됨. 아국의 경우는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고추, 마늘, 양파 등 13개품목임.

[$PSE=Q(DP-WP)+S-LV-FA$, Q : 생산량, DP : 국내생산자 가격, WP : 국제가격, S : 정부보조(직접지불 및 기타 모든 정부예산지원 포함), LV : 생산부과금(Production Livies), FA : 사료보정(가축에만 해당)]

Punta del Este Declaration(푼타 델 에스테 선언)

1986년 9월 푼타델에스테 선언은 크게 상품분야의 13개 협상분야와 GATT 기능분야, 서비스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품분야에는 관세, 비관세조치, 열대산품, 천연자원기초상품, 섬유 및 의류, 농업, GATT 조문, 긴급수입제한조치, MTN codes, 보조금 및 상계조치, 분쟁해결, TRIPs, TRIMs가 포함되었음.

[Q]

QR(Quantitative Restriction : 수량제한)

국제무역에 있어서 비관세장벽 가운데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분야로 일명 쿼타(Quota)라고 한다. 쿼타란 일정기간동안에(보통 1년) 특정상품에 정해진 수량(또는 가액)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한도를 넘는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도 금지됨. 쿼타제도가 국제무역에 널리 사용된 것은 1930년대초로서 국제관세협정하에서는 수입급증을 이유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인상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쿼타제도로 눈을 돌리게 됨에 따라 국제무역이 침체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GATT 발족이후 최대의 노력이 수량제한의 철폐에 주어졌음. 수량제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GATT조항은 제1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4개 조항임. 제11조에서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와 14조에서는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밖에도 수량제한과 관련된 GATT조항으로는 제15조와 18조가 있는데 제15조는 국제수지방어를 이유로 한 예외와 밀접하게 관련된 GATT와 IMF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예외조항(국제수지문제와 관련)을 포함하고 있음.

Quad(주요 4국)

UR협상을 주도했던 세계최대무역국으로 구성된 그룹을 지칭하며 미국·EC·일본·캐나다를 포함.

Quota(수입할당)

특정상품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보통 1년)에 정해진 수량(가격) 만큼만을 수입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한도를 넘어선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라도 금지되는 수량제한의 대표적 조치. 그 종류에는 총량쿼타(Global Quota), 쌍무쿼타(Bilateral Quota), 그리고 관세할당(Tariff Quota)등이 있음. QR(수량제한) 참조.

Quota Auction(수입권공매)

수입권공매제도는 GATT규정이나 WTO협정에 근거규정이 없으나 과거 호주·뉴질랜드가 UR이전에 사용했던 적이 있다. WTO농업협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에 있어 동 수입권을 높은 응찰가격을 제시한 무역업자에게 낙찰시키고 그 이익금을 정부가 환수하기 위한 새로운 수입권 판매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제도로서 당초 이행계획서에 국영무역으로 표시하였다가 검증과정에서 제외된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밤, 대추, 참기름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소수의 특정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시장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제도는 현재 WTO 농업위원회에서 제도 정립차원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음.

[R]

Red·Amber·Green light(신호등 분류방식)

국내농업보조에 대한 UR협상의제는 소득 및 가격지지를 포함한 무역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내보조금에 관한 GATT규율강화와 점진적인 감축수준을 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음. 신호등 분류방식은 UR협상초기 미국이 제안한 방식으로 모든 국내보조정책을 철폐대상(Red), 규제대상(Amber), 허용대상(Green)으로 분류하고, 철폐대상(Red)정책은 10년내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1989년 중간평가회의 이후에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음. 감축대상(Amber)정책에는 정부수매와 같은 정부관리가격,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농가소득지원, 투자 및 수송 등에 대한 보조등이며, 허용대상(Green) 정책은 생산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득보장(decoupling), 환경보존 및 유지, 재해보상, 선의의 식량원조, 식량비축 등에 대한 보조이며 규제대상(Amber)정책은 AMS를 통해 감축한다는 것임. 예컨대, 미국의 의도는 농산물에 대해 국내외 가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경보호조치와 국내보조정책 등에 의해 생기는데 그중 국경조치에 의한 부분은 관세화로 수용

하고, 나머지 국내보조정책부분인 국내재정지출은 AMS에 의해 감축해 나간다는 것임.

Resource Retirement Programmes(자원폐기계획)

WTO 농업협정상 직접지불형태 보조로서 정부의 감산정책 시행에 따른 소득보상적인 성격으로 그 수혜자격은 토지 또는 가축을 포함한 그밖의 자원을 상업적 농업생산으로 부터 제외시키기 위하여 입안된 명백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농지의 경우 최소한 3년 이상의 휴경을 하거나 가축의 경우는 도살 또는 확정적인 영구처분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어야 함.

Rebalancing(관세율 재조정)

UR 협상과정에서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 방침에 대한 EC의 관세화 수용의 전제조건으로써 기존에 EC가 유지류 등 몇몇 품목에 대하여 무세 또는 저세율로 GATT에 양허해 놓은 것을 철회·재조정하겠다는 주장.

Reciprocity(상호주의)

GATT의 기본원칙중의 하나로, GATT체약국이 무역자유조치를 취할 경우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동 조치를 상호교환하는 주의로 상호주의라고도 한다. 즉, 무역면에서 자국과 상대국은 공평하고 평등한 시장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주의에 대한 예외로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개도국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GATT협정문 제4부의 개도국조항(37조)과, 이와는 반대로 개도국도 경제개발의 진전정도에 따라 GATT의 권리의무를 점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동경라운드의 Framework협정 및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 관세제도(GSP)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상호주의 개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경제발전단계에 상응하여 상품시장개방등 국제무역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GSP혜택도 줄여나가거나 GSP에서 졸업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기인하고 있음.

Request List(시장개방요구서)

R/O 방식에 따라 제출하게 되는 상대국가에 대한 관세율인하 내지 개방 요구 등의 자유화 사항 요구서

Residual Restriction(잔존수입제한)

GATT상 위법인 수입제한조치로서 대부분의 선진국에 있어서 GATT가 입후 기존의 수입제한조치를 완화키로 잠정 협정 의정서나 또는 가입의 정서 상에서 약속해 놓고 자유화하지 않은 품목을 소위 잔존수입제한품목이라고 하는데 GATT의 특정 상대국이 이의제기를 않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묵인되었던 수입제한조치를 말함.

Retaliation(보복)

한 체약국이 취한 관세인상 또는 기타 무역제한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 체약국이 취하는 대응조치로서 GATT 23조는 양국이 협의에 실패했을 경우에 한해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Reverse Consensus(역만장일치제)

WTO 분쟁해결기구는 GATT의 전통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결하지만 패널이나 상설항소기구의 판정이나 권고안을 의결할 경우에는 회의 참석 회원국중 어떠한 회원국도 그 결정에 대하여 공식적인 반대를 하지 않을 경우 만장일치로 간주하는 제도를 역만장일치제라 함.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 참조

Risk Assessment(위험평가)

WTO/SPS협정(식물 및 식물위생조치협정) 제5조는 각회원국은 자국의 동·식물위생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위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야 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평가에서는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가공 및 생산방법,

관련검사, 표본추출 및 시험방법, 특정병해충의 발생을, 병해충 안전지역의 존재,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조건, 검역 또는 기타 처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R/O(Request & Offer System : 시장개방요청 및 제안방식)

국제적으로 관세·비관세 장벽 등의 양허협상에 있어서 개별국가끼리 관심있는 품목을 상호제시하여 품목별로 관세율 인하나 개방정도를 협상하는 방식.

Rollback(규제철폐)

GATT에서 말하는 Rollback은 GATT에 위배되는 현존 규제조치를 철폐하거나 GATT에 일치시키는 것(Phasing out or bring into conformity with GATT of existing measures which are not in conformity with GATT)을 의미하고 있다. 광의로 해석할 때 Rollback은 이미 GATT가 성립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GATT의 궁극적 목표중 하나가 관세의 완전철폐에 있으며, 이미 7차례에 걸친 다자간협상에서 관세인하협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반면 협의로 해석할 때는 동경라운드 때부터 Rollback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즉, 동경라운드 이전까지 행해진 6차에 걸친 관세인하협상 결과 관세에 의한 장벽은 거의 소멸된 반면, 각종 비관세적인 규제조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의 거래가 실질적인 무역 자유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 동경라운드 협상에서는 수량제한소그룹(QR-Sub-Group)이 설치되어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협상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경라운드 협상결과 비관세장벽 분야에서 실질적인 Rollback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80년대 접어들면서 뉴라운드 협상의 필요성과 더불어 82년 GATT각료선언은 GATT위배 조치를 유지하지 않도록 하는 약속(Refrain from maintaining any measures inconsistent with GATT...)를 포함함으로써 Rollback의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되기 시작했다. 제네바에서 86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진행된 뉴라운드 준비위원회에서 나타난 선·개도국이 보는 Rollback입장은 다음과 같다. 선진국은

Rollback을 “모든 무역조치를 철폐하거나 GATT제규정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선후진국 모두가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개도국은 “GATT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수입제한적 조치의 철폐”를 Rollback으로 간주하면서 선진국만이 실시해야 하며, 정해진 시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다 엄격한 개념의 도입으로 맞서왔으며 일반적으로는 늦어도 UR 협상종료시까지 합의된 시한 내에 GATT와 불일치하는 무역상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함.

Rules of Origin(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이란 특정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은 각국의 명백하고 예측 가능한 원산지규정 및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며, 원산지규정 자체가 무역에 대한 장애요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다른 회원국의 권리를 무효화 또는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각국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법률·규정 및 관행 등이 공정, 투명, 예측 가능하며 일관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마련되고 적용되도록 요구하고 있음. 기존 GATT협정 제9조는 원산지 표시문제와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가 국제무역에 있어 비용증가효과 등으로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본래의 원산지 규정은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현존하는 거의 유일한 국제협약으로서 관세협력이사회(CCC)가 주축이 되어 마련한 교도협약(Kyoto Convention)은 특별한 원칙 채택보다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원칙을 나열하고 있으며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D1), 원산지 증명서류에 관한 부속서(D2), 원산지 증명서 관리에 관한 부속서(D3)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원산지 규정상의 주요 기준으로 ① 완전생산기준과 ② 2개국 이상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에 대해서는 ‘실질적 변경(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가져오는 공정이 발생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제시하고 실질

칙적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Schedule),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a), 주요 공정기준(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이 있음. 그러나, 동 부속서를 수락한 국가는 20여개국에 지나지 않고 미국도 가입하지 않아 국제협약으로서의 규범성이 약하였음. UR협상과정에서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지역주의 확대로 말미암아 각국의 원산지규정의 상이성,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무역장벽적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EC의 자의적인 원산지규정 적용에 대해 명료하고 통일성 있는 조화로운 원산지 규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명료하고 통일된 원산지규정 제정을 목표로 협상을 전개하였으나 협정상의 원산지 규정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각국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특히 특혜 원산지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0년 5월 교포협약의 원산지 관련 부속서중 원산지규정(D1), 원산지증명(D2) 부속서에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 원산지규정은 교포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음. 과거에는 수출과 관련된 원산지 증명 발급 제도에 치중하였으나 '91. 7 유통시장 개방이후 수입질서 내지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원산지 표시제도 실시, 수입선다변화 제도에서도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강화된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음.

{S}

SAB(Standing Appellate Body : 상설상소기구)

WTO 분쟁절차상 패널판정에 대한 상소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DSB에 의해 설립되며 7인으로 구성됨. 상소기구의 작업절차에 따라 한사건에 3인씩 교대로 상소업무를 담당함. 구성원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재지명될 수 있음. 구성원은 법률과 국제무역 및 협정상의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는 자로서 어떠한 개별국가의 정부와도 관계를 맺어서는 안되며,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식물 및 식물위생조치)

WTO/SPS 협정(식물 및 식물위생조치협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의 모든 SPS조치(관련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 포함)에 대하여 동 협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에는 최종생산물에 대한 요건, 가공요건, 검사, 인증, 소독 또는 식품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포장 및 상표부착을 포함함.

- ①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②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③ 동물,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또는
- ④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

또한 SPS협정 제2조는 SPS조치는 생명과 건강보호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즉, SPS조치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야 하며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될 수 없으며,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기존의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임시적으로 SPS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증거가 사용가능하게 된 경우에 재검토 또는 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SPS조치는 각국의 특정위생조건(동식물을 포함)을 이유로 하지 않는 한, 상품을 국별로 차등대우하여서는 안되며, SPS조치를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사용하여서도 안됨.

SBS(Simultaneous Buy and Sell : 업계간 자유통매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쇠고기 수입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일정범위의 국내수요자에게 기본쿼타의 일부분을 배정하여 정부나 축산물유통 사업단의 개입없이 국내 수요자가 직접 상담·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Selectivity(선별성)

무역조치가 모든 나라들에 대해 비차별적으로(MFN 대우)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또는 몇 나라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취하여 지는 것을 말함. 예를들면 제한된 소수의 수출국들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이것이 수입국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이 국가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Serious Prejudice(심각한 손상)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6조에 따르면 일반이 총가대비 5%를 초과하는 보조금지급, 특정산업 또는 기업의 영업손실보조, 직접적인 채무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보조금 지급으로 상대국(제3국)에서 수입대체(수출감소), 보조품목의 가격하락, 시장점유율 변화 등 사항 발생시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심각한 손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입증없이 대응조치가 가능함.

SG(Safeguard Measures :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제도의 의의는 GATT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동 수입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경쟁산업으로 하여금 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있음. 보존조항, 도피조항(escape clause), 면책조항 이라고도 하며 공정무역관행

에 의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규제제도 보다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보상 및 보복조치가 규정되어 있음. 선진 수입국들은 종전 GATT체제 하에서는 세이프가드 조항의 요건이 까다로와 동 조치 사용을 기피하고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OMA) 등 양자차원에서의 자의적·선별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선호하였음. 이런 조치들은 GATT 체제밖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회색조치(Grey area measures)라고 불리우며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을 위협하였음. 따라서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회색조치를 GATT 규범안으로 흡수하는 문제가 70년대부터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동경라운드('73~'79)시 본격적인 협상을 하였으나 협상타결에 실패하였으나 UR협상에서는 SG조치의 발동을 쉽게 하는 대신 회색조치를 철폐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선진국으로부터 VER, OMA 등의 규제를 많이 받아온 우리나라로서는 회색조치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으나 반면, 선별적인 SG 조치에 의한 규제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SG조치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3년동안만 보복이 면제될 수 있는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회색조치에 비해서는 남용이 어려울 것임. 본 협정은 GATT 1994 제19조 이외의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섬유, 농산물, 서비스 등), 섬유류는 TSG(Transitional Safeguard)를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GATT 1994로 복귀하는 과도기 동안 미복귀된 품목에 한해 적용되며, 농산물은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 중 이행계획서에 SSG로 표시된 품목에 SSG(Special Safeguard)를 적용토록 하였음. 서비스분야는 Emergency Safeguard를 적용하고 있으며, 무차별 원칙에 기초한 SG 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상은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내에 완료되어야 함.

〈WTO협정상의 Safeguard 비교〉

UR 분야별	SG 협정	섬유·의류협정	농산물협정
명칭	Safeguard	잠정 Safeguard (Transitional Safeguard)	특별 Safeguard (Special Safeguard)
대상품목	제한없음	GATT 미복귀품목 (기규제품목 제외)	관세화대상 농산물 (아국: 보리 등 118개)
제도의 존속기간	무차별 발동(수량제한시 수입급증 국가에 대한 선 별적 적용가능)	국가별 발동	무차별 발동
발동요건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 업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발생 또는 우려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 업의 심각한 피해(Seri- ous injury)발생 또는 실질적 우려시	물량이나 가격이 발동기 준 초과 · 수입물량이 시장접근 기회(10%이하, 30 %초과)를 초과한 경 우(각각 125%, 110 %, 105%) · 수입가격이 '86~'88 평균 가격보다 10%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절차	SG 위원회 통보 및 이해 관계국과 사전 보상협의 (최초 3년간 보복면제)	TMB 통보 및 이해관계국 과 규제수준 사전협의(미 합의시 TMB의 권고)	농업위원회 조치 10일이 내 통보 및 이해관계국과 적용조건 협의(보복면제)
조치수단	관세율조정 및 예외적 수 량제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조치존속 기간	4년이내 피해구제필요기 간(8년까지 연장가능)	연장없이 3년간 또는 당 해품목의 GATT복귀 시 점중 먼저 도래시까지	- 물량기준: 당해년도말 - 가격기준: 별도제한 없음
조치한도	관세율 조정: 피해구제 범위내	최근 1년간 수입량 보장 (초년도 수준을 매년 6 % 증량)	- 물량기준: 당해년도 관세의 1/3범위내 추가 - 가격기준: 하락정도에 따라 일정비율

※ 서비스협정: 긴급(Emergency) Safeguard는 WTO 발효후 3년내 협상종결 예정

Single Undertaking(일괄수락원칙)

UR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WTO협정문에 서명하는 경우 WTO협정문 및 부속문서를 전체적으로 수락하는 원칙. 따라서 일부수락은 불가능하며 어느 조항에 대해서도 유보를 행할 수 없음.

SOM(Senior Officer's Meeting : APEC 고위실무회의)

APEC 각료회의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핵심 운영기구로서 각국의 차관보 또는 국장급이 참여하여 매년 각료회의 개최전에 공식 및 비공식 회의를 4 내지 5회 개최, 주최국 관료가 의장을 맡으며 무역투자위원회, 경제위원회 및 10개 협력사업을 관장하고 그 내용을 각료회의에 보고함.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특별대우)

보통 개도국들에 GATT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시켜 주는 것과 같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조치를 뜻함. WTO 농업협정 제15조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가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인식을 상기시키면서 개발도상국은 감축 약속의 이행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최빈개도국에게는 감축약속 이행을 면제하고 있음.

Specific Duties(종량세)

종량세는 수입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제도(보통 원/Kg로 표시) 수입가격이 1,000원/Kg인 농산물 수입시 관세가 100%일 때 관세는 1,000원임 그러나 농산물 가격은 시기, 품질에 따라 가격진폭이 심하므로 국제가격이 500원으로 하락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세가 100%라 하여도 500원의 관세만 부과되므로 보호효과가 미약하나 종량세는 Kg당 1,000원이 부과된다면 가격의 하락에 상관없이 1,000원이 부과되어 높은 보호의 효과를 갖게됨.

국 제 가 격	종 가 세 (100%)		종량세 (1,000원/kg)	
	관 세	수입원가	관 세	수입원가
1,000(원/kg)	1,000	2,000	1,000	2,000
500(원/kg)	500	1,000	1,000	1,500

UR 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고추, 마늘, 양파등 63개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하여 종량세와 증가세중 높은 세율(액)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음.

Specificity(특정성)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수혜자격 및 금액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을 사전에 설정하고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으나 특정기업이나 산업에만 수혜자격을 한정하거나 불공평하게 금액을 할당하는 경우, 특정지역내의 특정기업이나 산업에만 수혜자격이 부과되는 경우,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본다. 특정성이 없는 경우는 허용보조금의 요건이 됨.

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지금까지 각국은 위생 및 검역조치를 자의적으로 운영해 오며 따라 수입 제한적 조치가 남용되는 사례가 많았음. 이에 따라 WTO협정에서는 농산물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위생 및 검역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생 및 검역조치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수입제한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별도의 SPS협정을 제정하였음. SPS협정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취해지는 식품위생, 동식물 검역조치의 운용에 관한 WTO 부속협정으로서 동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일반 원칙, 적정보호수준, 판정기준, 조화 및 동등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SSG(Special Safeguard :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농산물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치(TE) 감축이행 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시 관세인상을 허용 하도록 한 관세화한 농산물에 한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피해구제제도

Standing Committee(WTO 상설위원회)

WTO의 상설위원회에는 무역개발위원회(the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수지위원회(the Committee on Balance-of-Payments Restrictions), 예산·행정위원회(the Committee on Budget, Finance and Administration), 무역·환경위원회(th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가 있음.

Standstill(규제동결)

원래 GATT상 Standstill은 모든 회원국이 GATT 가입과 동시에 GATT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무역제한조치를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 (Obligation not to introduce trade restrictive measures not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agreement)는 의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47년 GATT가 설립된 이후로 많은 회원국들은 GATT에 위배되는 무역제한 조치를 취해 왔다. GATT에서 최초로 Standstill에 대한 문제가 논의된 분야는 보조금 분야이다. 즉, GATT체약국은 GATT가입당시 1958년 1월부터 1차산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공감한 체약국들은 이러한 보조금 철폐약속을 1957년 11월 30일 개최된 GATT총회에서 연기하기로 결정함과 더불어 1955년 1월에 존재하고 있는 보조금 수준을 넘어서거나 새로운 보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소위 Standstill(규제 현수준 동결)을 약속하게 되었다. 이처럼 보조금 분야에서부터 제기된 Standstill은 GATT회원국간 새로운 무역제한 조치가 확산되면서 전무역분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Standstill의 확대적용은 1960년 GATT의 제5차 무역협상인 Dillon라운드 당시 협

상지침에 관한 각료선언에서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GATT에 위배되는 관세 및 기타 보호조치의 증가를 중지하는 것(Shall refrain from increasing tariff and other protective measures inconsistently with the principles of the general agreement)”을 협상 전제조건으로 명시함에 따라서 Dillon라운드 협상기간중 Standstill은 하나의 협상원칙이 되었다. 한편 이러한 Standstill원칙은 GATT 제6차 무역협상인 케네디라운드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었는데, 케네디라운드 협상계획에 관한 1963년 5월 21일자 각료선언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수출에 반하는 새로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인정할 수 없다(No new tariff or non-tariff barriers should be erected by industrialized countries against the export trade of any less developed country)”라 명시했다. 이러한 「보호무역조치의 동결(Standstill)」 원칙은 70년대 최대 다자간 무역협상인 동경라운드에서는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상품이 이미 관세양허가 이루어졌으며 관세에 의한 규제수단보다는 비관세에 의한 수입규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 Standstill없이 막바로 「수량제한의 철폐」 등을 포함한 비관세장벽 제거 협상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경라운드 협상시 이러한 구상은 계속되는 보호주의 추세로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80년대 뉴라운드 협상의 추진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Standstill이 대두되었다. '82년 GATT 각료선언은 Standstill을 GATT가 취해야 할 중요 행동계획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Standstill을 “GATT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유지하거나 도입하지 않으며 국제무역을 제한 또는 왜곡하는 조치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무(Undertake to refrain from taking or maintaining any measures inconsistent with GATT and to make determined efforts to avoid measures which would limit or distort international trade)”로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 이같은 정의 아래 개도국은 뉴라운드협상의 전제조건으로서 선진국의 약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협상의 대상으로서 Standstill원칙의 적

용이 선·개도국 모두에 형평의 원칙에 맞게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대립 속에서 선·개도국들은 뉴라운드 추진을 위한 고위실무회담과 '86년 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뉴라운드 준비위원회」에서 의견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의장은 Standstill을 “현상황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Preventing deterioration of an existing situation)”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한편 '86년 9월 말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각료회의에서는 신국제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를 개시기로 합의하였으며 동시에 협상기간중 Standstill 및 Rollback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약속이 참가국간에 이루어졌으며 이의 감독을 위해 GATT무역협상위원회에 다자간 특별감시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하였음.

State Trading(국영무역)

일반적으로 국영무역이란 국가기간품목에 대한 무역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재정, 안보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국내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무역형태를 말함. 원래 GATT 17조에는 국영무역기업 운영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잘 준수되지않아 UR협상을 통해 국영무역기업의 정의, 통보의무 및 역통보 등 그 운영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국영무역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영무역 작업반을 설치 각회원국의 국영무역 기업활동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쌀, 보리, 콩,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등 19개 농산물의 시장접근 물량을 수입함에 있어 국영무역 기업이 관리 운영하겠다고 이행계획서에 표시하여 이행하고 있음.

State Trading Enterprises(국영무역기업)

WTO협정의 GATT 제 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을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Exclusive and special rights or privileges) 행사를 통하여 수출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국은 매3년마다 전면통보를 해야하며 매년마다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C/S에 근거하여 쌀, 보리, 쇠고기등 19개 품목의 관세커타 물량의 관리를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유통사업단,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 8개 기관을 국영무역기업으로 WTO에 통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Subsidies(보조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조금의 개념은 “특정사업을 개발·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단체, 사적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돈”으로 정의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보조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용자금에 대한 것에 한함)·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함)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그러나 WTO 제협정상에 규정된 보조금이란 이와 같은 정부재정의 이전적 지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WTO 협정상의 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보조금에 관한 일반규정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을 규율한 “농업협정”, 그리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있으며, 이들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의 정의를 살펴보면, 첫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다음의 경우 WTO 규율대상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됨.

- ① 특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보조금 (금지 보조금) ; 부속서 1에 예시된 수출보조금을 포함하여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 ② 다음의 지원이 동 협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성을 띠고 지원되는 보조금(상계조치 가능보조금) ;
- i)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협정에서는 “정부”라 한다)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즉
-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책임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
 -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
 -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할 경우
 -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위에 예시된 3가지 기능의 유형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며,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아니한 경우
- ii) GATT 1994 제16조의 의미의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 ③ ②항에 제시된 보조금이 존재하나 특정성이 없거나 또는 특정성은 있으나 협정 제8조 2항에 제시된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낙후지역 지원 등은 허용됨(허용보조금)
- 둘째, “농업협정”에서는 보조금을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와 수출

보조(Export Subsidy)로 분류하고 국내보조는 농업생산자를 위한, 농업 농촌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조치로서 정부, 정부대행기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지출과 징수감면조치 (Revenue forgone)를 포함함. 수출보조는 직접적인 수출보조 등 6가지 유형(제9조 1항)의 감축대상보조와 이를 우회하는 여타 수출보조로 보조형태를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정의 적용을 받은 지원 조치인가의 여부는 지원목적, 대상자, 기대효과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사항임. 셋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는 구체적인 보조금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만 제15조에서 “특정상황에서 보조금이 서비스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자간 규율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WTO 서비스교역 이사회에서 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Sunset Clause(일몰조항, 자동소멸조항)

수입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덤핑관세가 종료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WTO 반덤핑협정은 반덤핑 관세부과일이나 덤핑 및 피해에 관한 가장 최근의 재심일로부터 5년이내에 반덤핑조치가 자동적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있음.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한 개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참조.

Surveillance Body(감시기관)

GATT 동경(Tokyo)라운드 등에 의거 체약국단이 채택한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에 관련된 일국의 무역정책 및 현상유지, 점진적 철폐약속을 감시하는 GATT상의 기관으로 1986년에 설립됨.

Standstill(규제동결)참조.

[T]

Tariff(관세)

상품의 수입에 대해 세관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종가세(가액의 백분율), 또는 종량세(예 : 100kg당 10원)로 부과됨. UR 시장접근분야 협상은 농산물·공산품·수산물 등 모든 교역물품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수입제한·보조금지급·검사·과세·통관 등)을 완화함으로써 교역의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① 농산물과 ② 공산품·수산물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음. 농산물은 시장개방(수입제한품목의 관세화), 국내 및 수출보조금의 축소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중점을 두었으며 공산품·수산물은 일부 품목의 관세철폐(무세화), 관세의 하향 동일화(관세조화) 등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음. 농산물의 경우 각종 비관세장벽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함께 관세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여 선진국의 경우는 협정발효후 6년 동안에 품목별로는 최저 15%, 평균 36% 이상, 개도국의 경우는 협정발효후 10년동안에 품목별 최저 10%, 평균 24% 이상 감축하도록 하였음.

Tariff binding(관세고정·관세양허)

합의된 수준 이상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 일단 관세율이 고정되면 영향받는 국가에 보상하지 않고는 관세율을 인상할 수 없다. GATT 2조는 관세양허(표)와 관련된 규정이고, 28조는 양허표의 수정에 관한 규정임.

Tariff Concession(관세양허)

GATT 협정에서 체약국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무는 관세양허이다. 관세양허란 체약국이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Commitment)으로 이 약속은 해당국가의 양허표(Schedule)에 나타나 있다. 이때 양허표에 명시된 품목을 양허품목이라 한다. 관세를 양허하는 방법은 ① 현행 세율을 단순히 인하하는 관세

인하(Reduction) ② 현행세율을 더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현행 세율의 거치(Binding) ③ 앞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준이 상으로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인상 한계점(Ceiling)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음.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품목의 관세를 양허하는 경우에는 양허된 세율보다 관세율 수준을 더 완화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양허한 범위를 초과해서 관세장벽을 강화할 수는 없음. 일단양허된 품목의 세율은 협상상대국과 협상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합의된 관세를 양허관세(bound tariff)라고 하며 이것이 우리나라 관세체계에 수용될 때 이를 총괄적으로 국제협력관세라고 함.

Tariff Escalation(관세상승)

상품의 가공정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관세구조, 즉 원료품의 관세율은 무세 또는 저세율로 하고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고관세율로 하는 관세의 경사구조를 뜻함. 이는 자원수입국의 가공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자원수출국의 가공업 발전을 저해하는 효과를 갖고 있음.

Tariffication(관세화)

UR 농산물협상에서는 대원칙으로서 예외없는 관세화를 전제로 관세이외의 각종 비관세 조치를 통한 보호 효과를 관세의 형태로 전환하였음. 즉 모든 농산물 수입규제를 철폐(수입자유화)하는 대신 갑작스런 수입자유화로 인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농산물 수입국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입가격이 국내가격과 같게 되도록 관세를 높게 조정하는 것을 말함.

Tariff Increase(관세인상)

수입되는 상품의 관세율을 인상시키는 것으로 특정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GATT에 양허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 수입국이 자의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으나, 양허된 품목의 경우는 Safeguard나 당초 관세인하 교섭 상대국 및 주요 이해관계국들과의 재협상을 통해 결정함.

Tariff Quota System(관세할당제도)

특정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즉 수량 및 가격의 양면에서 규제하는 이중과율제도이다. 우리나라는 UR협상결과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등 67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할당 물량과 저율관세를 C/S에 명기하여 시행하고 있음.

TBT(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포장, 표시, 등급표시 요구를 포함한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을 평가하는 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함. 표준화(Standardization)는 어떤 상품의 기술명세를 정하는 것으로서 강제성 여부에 따라 표준(Standards : 비 강제적),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 강제적) 2가지로 분류함(제1조). 적합판정절차(Conformity assesment procedures)란 어떤 상품이 표준과 기술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서, 인증(Certification)과, 시험·검사(Testing & inspection)가 주요 분야임. TBT는 동경라운드 MTN Code 중의 하나였으나 TBT 협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 기술장벽과 관련된 통상마찰이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 UR협상의 결과 WTO체제로 이관되었음. 동경라운드에 따른 TBT Code는 '80. 1. 1 발효하였고, 우리나라는 '80.10. 2 가입하였음. 한편, TBT협정의 적용 예외로서 ① 인간·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② 안전, ③ 환경보전 ④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명세인 강제규범분야(normative practice areas)가 인정되고 있음. TBT협정은 공산품과 농산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서비스는 제외)에 적용됨.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새로이 출범하는 SPS협정이 적용되는 부문은 TBT협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조달 관련도 TBT협정이 적용되지 않고 정부조달 협정에 따름.

TDE(Trade Distortion Equivalent : 무역왜곡상당치)

TDE(무역왜곡상당치)는 1989년 UR중간평가시에 농업보호를 위한 총량측정치(AMS)를 계산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 미국이 PSE(생산자 지원상당치)방식으로 모든 가격지지 및 소득지지정책을 통해 지원되는 농업보조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Cairns그룹중 캐나다에서 주로 주장한 것으로 그 내용은 미국과 유사하나 PSE가운데서 무역왜곡적인 조치만을 고려하자는 일종의 수정된 PSE개념을 말함.

TE(Tariff Equivalent : 관세상당치)

UR 농산물협상에서 모든 비관세조치의 관세화를 위한 수단으로 국내의 가격차로 계산한 비관세 보호 효과에 상응한 관세를 의미함. [TE = (국내가격 - 국제가격)/국제가격 × 100(%)]

Third Parties(제 3국)

WTO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분쟁당사국 이외의 제 3국이 협의참여를 희망할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당사국 및 DSB에 통보하여야 함. 제 3국은 관련협정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협의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협의참여가 가능하며 협의참여요청이 기각될 경우, 제 3국은 그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분쟁당사국 및 분쟁사안과 관련된 기타 협정회원국의 이해관계는 패널진행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패널에서 제기된 조치가 관련협정하에서 제 3국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해당국은 본 양해하의 정상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가능한 한 기존의 패널에 회부됨.

TMB(Textile Monitoring Body : 섬유감독기구)

WTO 섬유 및 의류협정의 목적수행을 위해 상품교역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서 협정이행의 감시, 각국의 조치의 협정에의 일치여부 검토, 분쟁해결 등을 그 목적으로 하며 1명의 의장과 10명의 인원으로 구성됨.

TNC(Trade Negotiations Committee : 무역협상위원회)

UR협상의 전반적 활동을 감독했던 각료급 최고의결기관을 말함. UR협상체계를 보면 무역협상위원회 산하에 크게 상품협상그룹(GNG)과 서비스협상그룹(GNS)로 나누어져 있음. 상품협상그룹은 다시 시장개방분야, GATT 규율분야, 신상품분야 등으로 나뉘어 14개 세부협상 그룹이 있으며 서비스협상 그룹은 상품협상그룹과 별도로 서비스교역에 관한 국제규범정립을 담당하였음. 각 그룹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TNC회의에 상정되고 TNC회의에서는 각 협상그룹에서 올라온 결과를 놓고 그룹간의 조정을 통해 최종 의사를 결정함.

Total AMS(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총보조총액 측정치)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규정에서는 산업지원제도의 성격에 따라 금지되느냐 또는 상계조치 대상이 되느냐가 검토되지만 농업협정은 농업보조의 계량화를 통하여 감축해 나가야 하므로 보조효과의 계량화가 협정이행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다양한 정부지원효과가 단일의 수치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지원정책과 지원방법에 따라 보조금의 계산방식을 달리하여 협정문에 제시되어 있음. WTO 농업협정은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보조정책 수준을 계량화해서 보조금감축 기준설정, 이행평가, 또는 감축의무면제 수준의 결정 등을 위해 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EMS(Equivalent Measurement of Support) 및 Total AMS라는 보조금 계량화 방법을 마련하였음.

Total AMS란 농업생산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국내보조를 합한 것으로서 기초농산물에 대한 모든 감축대상보조액과 모든 품목불특정적인 감축대상보조액,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모든 감축보조상당액의 합을 의미한다. 또한 동 총감축대상보조액은, 기준기간동안 제공된 보조 즉, 기준총보조총액측정치(Base Total AMS), 이행기간중 연간 및 최종 양허약속수준(Annual and Final Bound Commitment Levels), 이행기간 중

의 현행 총보조총액측정치(Current Total AMS)는 회원국의 양허표 제 4부에 명시됨. Total AMS의 산출은 품목특정적 보조(Product-Specific AMS) 및 보조상당액(EMS)이 선진국은 당해년도 품목생산액의 5%, 개도국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 품목의 AMS와 품목불특정 보조가 당해년도 농업총생산액의 5%(개도국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이 품목불특정 보조를 합산한 것이 Total AMS임. 이 Total AMS가 당해 국가의 국내보조 감축의무의 표시이며 양허표에 명시되고, 매년도 보조이행 실적의 점검도 이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됨. 따라서 감축대상 품목특정적 보조품목이 다수일 경우 품목별 보조금의 감축은 이 Total AMS 범위내에서 '92 유통년도 보조수준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신축성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품목별 감축폭을 달리할 수 있음.

TPRB(Trade Policy Review Body : 무역정책검토기구)

WTO협정상 TPRM(무역정책검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서 WTO가 과거의 GATT기능과 다른점은 WTO내에 분쟁해결기구(DSB)를 설치하여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를 설치하여 회원국의 무역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임.

TPRM(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 무역정책검토제도)

무역정책검토제도는 UR협상의 15개 의제중 하나인 GATT 기능강화분야 협상에서 가장 먼저 합의된 분야로서 '89년 이후 시행중임. TPRM은 '70년대 이후 세계경기의 침체로 GATT 규정을 이탈하거나 예외규정을 남용한 보호주의 조치가 만연하여 GATT체제의 한계점이 노출됨에 따라 각국 무역정책 및 관행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각국 제도의 명료성을 강화하고 이해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 기능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TPRM의 결과가 특정 GATT규정상 의무이행을 강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의도로 사용되지는 않음.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의 TPRM

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그 검토주기는 세계교역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다르다. 즉, 4대 교역국(EU는 하나의 국가로 간주)은 매 2년을 주기로, 그 다음 5위~20위까지의 16개국은 매 4년마다 검토를 시행함. 여타 회원국은 매 6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나 최빈개도국의 경우는 더 긴 기간이 설정될 수 있음. 예외적으로 어느 회원국의 무역정책이나 관행이 변경되어 교역상대국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무역정책 검토기구(TPRB)의 요청에 따라 차기 TPRM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음.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는 ① 검토대상 회원국이 작성하여 제출한 보고서와 ② WTO사무국이 작성한 별도 보고서의 두 보고서를 기본검토 자료로 하여 시행함. TPRB에서의 논의주제는 TPRM의 목적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각 회원국의 무역관련 정책 및 관행들임. 우리나라에 대한 1차 TPRM은 1992년 7월 8일~9일에 스위스 제네바 GATT에서 40여개 회원국의 참가하에 특별이사회 형식으로 실시되었음. 당시 TPRM 회의시 외국의 논평에 의하면 한국은 80년대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입자유화, 관세인하 등 개방화 정책이 세계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과 한국경제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교역규모에 맞는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희망하면서, 세부분야별 개선과제로서 복잡한 관세체계, 위생 및 검역기준의 불투명성 및 자의성 등 비공식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시장개방의 저해, 수입선다변화 정책과 국산화 정책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특정국가만을 차별우대하는 통상관행이 존재, 농업분야의 과보호 등을 지적하였음. '96년에 실시될 TPRM은 '92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의 무역정책 운영상 개선실적 등을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성격을 가짐.

Transparency(투명성·공개주의)

무역정책, 관행 및 이들이 수립되는 과정의 공개, 예측가능성을 말하며 이를 모든 회원국에게 명료하게 공개, 공표되거나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는 WTO의 일반적 원칙을 말함.

Trigger Level(발동수준)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SSG) 발동시 적용되는 기준으로써 품목별 당해 연도 수입량이 시장점유율에 따른 기초발동수준(Base Trigger Level)에 과거 3개년간의 수입물량을 곱한 량에 최근년도 국내소비량의 변화물량을 합한 물량을 초과할 경우 당해연도 품목별 관세의 1/3 이하를 추가관세로 부과됨.

Trigger Price(발동가격)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SSG) 발동시 적용되는 기준으로써 품목별 CIF 수입가격이 발동기준가격(참조가격 : '86~'88간 평균 CIF 수입가)의 90%를 하회할 경우 가격차별로 가격차의 30~90% 누진관세로 부과됨.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란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무역의 흐름을 제한 혹은 왜곡시킬 수 있는 규제나 유인(Incentive)을 말함.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업내 무역의 비중이 증대하는 등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간의 연계가 심화됨으로써 이에 관한 적절한 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UR 협상과정에서 선진국은 외국인 직접투자시 기술 이전의무, 외국인지분제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철폐를 주장하였으며, 개도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정한 제한은 주권국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할 것과 다국적기업의 불공정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음. TRIMs 협정은 상품무역(Trade in goods)과 직접 관련된 투자조치에 적용됨. 따라서 서비스무역 관련 투자조치는 GATS 에서 관할하며, 무역과 무관한 투자조치는 TRIMs의 적용대상이 아님. 회원국은 WTO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본 협정에 위배되는 자국의 모든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상품교역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위의 통고된 조치를 WTO협정 발효후 선진국은 2년이내, 개도국은 5년이내, 최빈개도국은 7년 이내에 폐지해야 하며, WTO 협정 발효후 5년 이내에 상품교역이사회는 본 협정의 기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의 수정을 제안하기

로 함. WTO/TRIMs협정의 발효로 상품교역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① 수출의무 ② 국산부품 사용의무 ③ 외환수지·무역수지 균형의무 등이 금지되었으나 선진국이 금지를 주장한 기술이전의무, 외국인지분제한 등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도국이 주장한 다국적기업의 경쟁제한행위규제도 협정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본 협정에서는 향후 수정·보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현재 OECD, APEC 등에서 보다 강화된 TRIMs 관련 규범 제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94. 6월 OECD 각료회의에서는 무역·투자문제를 자유화의 진전과 다자간 체제의 강화를 위한 향후 작업부문의 하나로 선정하였고,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설립을 위해 5개의 Working Group 작업 진행중이며, '94. 11월 APEC에서는 비구속적 투자원칙(Non-binding investment principle)에 합의함으로써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94. 7월 G-7 회의에서도 무역·투자문제 등 4개 의제의 논의진전 상황을 차기 회의에서 검토기로 합의하였음.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미 협상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관련 자유화를 추진해 왔음.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제법의 발명과 같은 산업적 발명과 문학·미술 등에서의 예술적·문화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하며, 발명과 창작이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실용화되어 유형적 형태를 지닐때 비로서 권리화가 가능함.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같이 양도권, 지분권 및 포괄적 지배권을 갖게되고 지적재산권자는 법적으로 배타적 지위를 부여받게 됨. 지적재산권은 크게 나누어 법체계에 따라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적재산권의 분야로 분류되며 성질에 따라 창작보호(Idea 보호와 Expression 보호) 및 공정경쟁 보호로 나누어짐.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의장권, 상표권 등으로 구분되며,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분류하고, 신지적재산

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산업저작권, 동·식물 및 신생물 관련 생명공학기술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기술에 관련한 첨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재산권 등을 포괄하고 있음. UR협상 과정에 있어 지적재산권(IPR)이 상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교역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선진국들이 IPR 보호를 자국의 무역수지 및 국제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하게 됨. 그러나 국제무역에 관한 기본규범인 GATT는 IPR을 규율하지 않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IPR을 협상분야로 채택하여 IPR 보호가 정당한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GATT규정을 명료화하고 새로운 규칙과 규율을 마련하고 위조상품의 국제 교역문제를 취급할 다자규범을 개발하게 되었음. WTO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IPR) 보호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다자간 국제규범으로서 기존의 관련 국제협약을 최저보호수준으로 하여 기존의 국제협약의 보호수준보다 높은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음.

Tropical Products(열대상품)

천연 및 가공상태에 있는 다음 일곱 그룹의 상품들은 UR 협상초기 열대상품에 대한 협상의 기초를 구성하였음. 열대음료(커피, 차, 코코아); 향료, 꽃 및 식물, 특정유지종자; 야채오일 및 오일케익(예:야자 및 코코넛 오일); 담배, 쌀 및 열대뿌리(예:마니옥); 열대과일 및 견과(예:바나나, 오렌지 및 파인애플); 열대목재 및 고무, 황마(jute) 및 마섬유, 그러나 이 목록은 유연하게 해석된다. 예컨대 쌀은 특정 쌀생산국에서는 열대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음.

[U]

UNCED(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유엔환경개발회의)

세계각국은 그동안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및 산업화의 지속으로 자연 생

태계의 자정능력저하로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기에 이르러,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조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대동되게 되었음. '73년에는 인간환경에 관한 UN회의에서 채택된 스톡홀름선언을 시초로 지구환경논의가 시작되었고, '72년 유엔환경계획(UNEP) 창설, '82년 『세계자연현장』 제정 및 '83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구성 및 “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통해 인류공영을 위한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제창, '84년 세계자연현장제정, '89년 제 44차 UN총회에서는 인간환경선언채택 20주년이 되는 '92년 환경개발회의를 소집키로 결의하게 되었음. 지구환경문제는 동서냉전체제의 붕괴후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적질서를 규율하는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환경오염의 피해 및 영향은 한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 해양오염) 각 국가의 개별적인 대응노력과 함께 선진국, 개도국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적 협조체계(Global Partnership)가 필요함. '92년에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어 사상 처음으로 각국 정사간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규범에 합의하고, 지구환경보호와 개발의 동시달성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감대를 구축하게 되었음.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의 주요결정사항을 보면 첫째,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세부 실천계획으로서 『의제 21』을 채택하여 에너지, 토지, 자원관리, 생물다양성 보호 및 여성, 교육 등 경제,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총체적 규범으로서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최대 쟁점사항인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에 대한 기본원칙을 설정하였으며, 둘째 『리우선언』 및 『의제 21』의 이행을 평가·감시하기 위해 지속개발위원회(CSD ;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치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유엔의 총괄적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화석연료 사용규제 원칙을 담은 『기후변화협약』, 생물종의 다양성과 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하고,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인 『산림원칙성명』을 채택하였음. 리우 무역환경 개발회의 이후 미국·EU 등 선진국의 환경중시 정책과 더불어 UN을 중심으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OECD, GATT, UNCTAD 등 국제기구도 환경과 무역의 연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와 GATT 자유무역 원칙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음.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의 설립 배경을 보면 1950년대 중반부터 지구의 북반구에 위치한 공업화 된 선진국과의 현격한 경제격차를 인식한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국들은 이를 국제문제화 하기 시작하였음. 저개발국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남북간 격차해소문제에 대해 GATT에 건의하였으나 GATT의 대응이 미온적인 결과, 저개발국들의 무역확대문제는 UN의 주관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저개발국 대표들은 1962년 카이로 선언을 통해 국제무역회의 개최를 호소하기에 이르렀음. 이에 UN 경제사회이사회는 저개발국들의 건의와 선진국들의 동의를 얻어 준비위원회를 구성, 3차에 걸친 준비위원회 끝에 프레비쉬(Prebish) 보고서를 발표하고, 1964년 3월 전세계 120여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UN 무역개발회의(UNCTAD)를 개최, 동년 12월 개최된 UN 총회에서 항구적인 상설기구로 설립되었음. UNCTAD의 설립목적은 국제사회의 경제발전과 특히 개발도상국 무역의 확대 및 이에 관련한 경제개발상의 제문제의 총합적 검토이며, 우리나라는 1965년 1월 가입하였음.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유엔환경계획)

유엔환경계획(UNEP)은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문제 전담기구의 설립을 결의함에 따라 1972년12월 제 27차 UN총회 결의에 의거 설립되었음. UNEP는 환경분야에서의 국제협력촉진과 권고, 환경관계유엔활동의 방향설정 및 조정에 관한 정책지

침제공, 환경보호에 관해 각국 정부에 조인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86년12월 UNEP 아시아지역 관리이사국으로 피선된바 있음.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1992. 6월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합의된 협약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대기중 배출을 억제하여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우리나라는 '92.12월에 가입하였음.

UPOV(Inter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식물종자 보증제도 등을 국제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국제 식물종자보호연맹으로서, 1961년에 조약이 발효되어 1968년부터 보호업무가 개시되었으며, 최근인 1991년에 조약을 개정하여 보호제도를 보다 강화시켰다. 현재 회원국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2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비회원국임.

UR(Uruguay Round : 우루과이라운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농산물 시장은 구조적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과잉재고 농산물의 처리를 위한 수출국간의 수출보조금 과다지불경쟁, 그리고 수입국들의 자국농업 보호정책등으로 인해 구 교역질서가 크게 왜곡되었다. 그리고 농산물 무역에 많은 예외적 조치를 두고 있고 구속적인 규정이 없는 GATT체제로서는 이와 같은 세계 농산물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장질서의 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국제교역상의 왜곡된 질서를 회복하고자 1986년 9월 GATT회원국각료들이 우르과이의 푼타델에스테(Puntadel Este)에 모여 GATT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 (선언)함에 따라 시작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이다.

여기서 ① 각국의 시장개방 확대 ② GAT체제 강화 ③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등 신분야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을 목표로 86년 9월 116개국이 우루과이 Punta del Este에서 시작. 출범당시에는 '90년말을 협상시한으로 했으나 2차례에 걸친 연장 끝에 '93년12월15일 협상이 타결되어 WTO를 탄생시켰음.

UR Acceleration(UR 가속화)

APEC EPG(저명인사그룹)의 제안의 하나로서 APEC이 UR 합의사항을 앞당기는 선도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50% 규칙을 적용하라고 권고함.(개방시기 50% 앞당김. 관세율 50% 감축 추가)

[V]

Variable Levy(가변과징금)

과일이나 농산물의 수확기 및 출하기에 맞추어 수입과징금을 많이 징수하기도 하고 적게 징수하기도 하는 제도이다. 말하자면 어떤 농산물이 수확되어 출하량이 갑자기 많아질 기간동안에는 수입을 그만큼 줄이기 위하여 수입관세나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고 그 상품의 출하량이 적은 계절에 필요한 만큼 수입을 허용할 목적으로 관세나 과징금을 인하, 적용하는 제도임.

VERs(Voluntary Export Restraints : 수출자율규제)

수입국의 수입제한조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국 스스로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회색규제 조치로서 미국, EC 등 선진국들이 주로 신흥공업국들의 주종 수출품목인 철강, 전자제품, 자동차, 신발 등에 대해서 양자간협상을 통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였으며 이는 발동요건이 엄격한 GATT 19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회피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Grey Area Measures 참조)

[W]

Waiver(의무면제)

GATTT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예외적 상황에서 GATT 체결국단이 투표의 2/3 찬성(전체투표의 과반수이어야 함)으로서 범위 및 기준을 정하여 어떤 가입국의 특정 GATT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함. 어떤 국제적인 협정이나 국내법규를 막론하고,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특수한 상황에서 일부 규정의 효력을 완화시키는 예외조항이 없이는 그 협정 또는 법규는 오래 존속할 수 없다. GATT에 있어서도 초기 제약에서부터 웨이버나 면책조항을 포함한 여러가지 예외조항들이 만들어 졌으며 이밖에도 특정국가들 사이의 이해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수의 예외조항도 도입되었다. 흔히 GATT를 일컬어 “온갖 예외조항으로 뒤범벅이 된 복합체”로 표현되고 있으나 이들 예외조항들은 GATT에 필요한 융통성을 제공해 주었으며 만약 이러한 조항들이 없었더라면 GATT의 발족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GATT의 예외규정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외조항의 효력발생방식에 따르면 첫번째 형태의 예외조항은 체결국단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것으로서, 웨이버(25조 5항), 환율조정후의 종가세조정(2조 6항), 경제개발과 관련한 특정조치(18조), 일부반덤핑조치(6조 6항(b)) 등이 이에 속한다. 두번째 형태는 GATT의 사전승인을 요하지는 않지만 GATT에의 통보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예외(12조 및 18조),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24조 7항), 긴급수입제한조치(19조) 등이 있다. 그리고 세번째 형태의 예외조항들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자유로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서 20조의 “일반적 예외”와 21조의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가 이에 속한다. GATT상 체결국단에 부여된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25조에 규정된 웨이버권한일 것이다. ITO현장 및 GATT에 이같은 일반적인 웨이버규정을 포함시킨다는 구상은 협상의 극히 초기단계에서부터 나타났으며 준

비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이 초안의 취지가 거의 그대로 협정으로 발전되었다. 25조 5항 외에도 GATT에는 체약국단에 웨이버권한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한 여러규정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8조 C 및 D항으로서 개발도상국에 일정한 GATT 의무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체약국단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24조 10항도 체약국단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토록 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25조 5항에 명시되어 있는 웨이버가 부여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본협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웨이버가 부여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본협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예외적인 사정하”라는 구절이다. 그리고 25조 5항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는 웨이버권한의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체약국단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웨이버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예외적인 사항”이 결정적인 요건이 된다는 사실, 즉 웨이버의 부여에는 예외적인 사정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일상적인” 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웨이버가 부여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25조 5항에 의거하여 부여된 웨이버는 다음과 같은 7개 형태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 (1) 어떤 체약국단에 웨이버를 부여하여 신생독립국 또는 준독립영역이 과거와 같이 특혜대우를 받도록 하는 경우(예 : 미국의 태평양지역 신탁지역에 대해 부여된 웨이버(1951년), 리바다산품과 관련하여 이탈리아에 부여된 웨이버(1951년) 등)
- (2) 어떤 체약국이 새로운 관세분류방식 또는 세계개혁을 시행하는 경우 새로운 시스템이 반영되도록 양허표의 재교섭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는 웨이버
(예 : 미국의 관세분류와 관련하여 부여된 웨이버(1963년), BTM 체계의 채택과 관련하여 페루에 대한 웨이버(1964년))
- (3) 24조에서 정해진 기준에 합치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무역결성에 있어 2개국 이상에 대해 자유무역지역형성과 관련하여 부여된 웨이버

- (4) IMF비가맹국으로서 GATT 제15조에서 규정된 “특별외환협약”의 체결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해 소수 GATT 체약국에 부여된 웨이버
- (5) 국제수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특별 “수입과징금”의 부과를 허용한 웨이버
- (6) 농산물 수입쿼타를 허용한 웨이버
(예 : 미국의 농업조정법에 의한 수입제한에 대한 웨이버(1954년), 일부농산물수입제한에 대한 웨이버(1959년))
- (7) 일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취해진 체약국단의 결정

웨이버권한의 남용은 주로 강대국들의 편의에 의한 것이 많으며 특히 미국의 농업조정법에 대한 웨이버는 다른 어떤 경우보다 세계 농산물교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UR협상에서 미국은 자국이 기 획득한 Waiver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조건으로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음.

WFC(World Food Council : 세계식량이사회)

1974년11월 세계식량회의에서 세계식량이사회(WFC) 설립을 결의하고 동년 12월 제29차 UN총회 결의로 정식 발족됨. WFC는 식량원조, 식량교역, 식량안보 및 생산정책 등을 조정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WFC에서의 논의사항은 UN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보고됨. WFC는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하는 36개국 정부대표(임기 ; 3년)로 구성되며, 매년 6월 연례회의를 개최함.

WFP(World Food Programme : 세계식량계획)

WFP(세계식량계획)은 1961년 UN총회 및 FAO 총회에서 설립기로 결의하고 1962년 4월 세계식량계획 설립협정을 승인함으로써 1963년 1월부터 활동을 개시함. 1965년12월에는 UN 및 FAO에서 WFP의 무기한 존속을 결정함. WFP는 긴급식량원조를 통해 각국의 비상사태해결에 노력하고 경제·사회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식량원조

정책계획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및 FAO가 선출하는 30개국(임기; 3년)으로 구성되며 WFP의 정책 및 운영지침을 제공하고 원조계획안의 검토 및 승인업무를 맡고 있음. 우리나라는 1966년 WFP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피선된바 있음.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동기구는 1967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특허권·의장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구체적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들의 공동사무국 성격으로 출범하여 1974년 UN의 전문기구로 격상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구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기존의 GATT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결과 전체를 총괄하여 보다더 강화된 세계무역질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95. 1. 1부터 출범한 국제 무역기구임. 우루과이라운드(UR) 참조.

[Z]

Zero for Zero(무세화)

UR협상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관세인하 제안으로서 특정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관세를 철폐하자는 안임.

여 백

II. 용어 찾아보기 (가 ~ 하)

여 백

국 문	영 문	약 어
〈가〉		
가격약속	Price Undertaking	
가변과징금	Variable Levy	
가입의정서	Protocol of Accession	
가트11조국	Article 11 Nation of GATT	
가트18조국	Article 18 Nation of GATT	
각료 결정 및 선언	Ministerial Decision and Declaration	
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	
감시기관	Surveillance Body	
감축대상국내보조	Non-Exempted Domestic Support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Agreement o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GSTP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ies	
경제지도자회의(정상회의)	Economic Leader's Meeting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경작면적감축계획	Acreage Reduction Programme	ARP
고위간부회의(APEC)	Senior Officials Meeting	SOM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공식적용방식	Formula Approach	
관세	Tariff	
관세고정(관세양허)	Tariff Binding	
관세동맹	Customs Union	
관세상당치	Tariff Equivalent	TE

국 문	영 문	약 어
관세상승	Tariff Escalation	
관세양허	Tariff Concession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1947)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in 1947	GATT 1947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1994)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in 1994	GATT 1994
관세율 재조정	Rebalancing	
관세인상	Tariff Increase	
관세조화	Harmonization of Tariffs	
관세평가	Customs Valuation	
관세 할당제도	Tariff Quota System	TQ
관세화	Tariffication	
관세화 유예	Delayed Tarrification	
관세 환급제도	Drawback System	
국경보호	Border Protection	
국내보조	Domestic Support	
국별양허표	Country Schedule	C/S
국별 현황자료	Country List	C/L
국영무역	State Trading	ST
국영무역기업	State Trading Enterprises	STE
국제무역기구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
국제수지보호조항	Balance of Payment Article	BOP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armonized System	HS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권능부여조항	Enabling Clause	

국 문	영 문	약 어
규제동결	Standstill	
규제철폐	Rollback	
그린룸	Green Room	
금지 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기여실적	Credit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기본협약	Change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Measures	SG
〈나〉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네가티브시스템	Negative System	
농업보조총액측정치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농업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Agriculture	
뉴라운드협상	New Round Negotiation	
〈다〉		
다자간섬유협정	Multilateral Fiber Agreements	MFA
다자간협상	Multilateral Negotiation	
다자간무역협정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Code	
던켈 초안	Dunkel's Draft Final Act	DFA
덤핑	Dumping	
동등성	Equivalence	
딜론라운드	Dillon Round	
〈라〉		
리스본협약	Lisbon Agreement	

국 문	영 문	약 어
< 마 >		
마드리드협약	Madrid Agreement	
만장일치제	Consensus	
머코서	Mercado Comun del Sur	MERC-OSUR
면책조항	Escape Clause	
명목지원계수	Nominal Assistance Coefficients	NAC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무역왜곡상당치	Trade Distortion Equivalent	TDE
무역정책검토기구	Trade Policy Review Body	TPRB
무역정책검토제도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무역투자위원회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
무역협상위원회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TNC
무역환경위원회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
무임승차국	Free-rider	
무효화 또는 침해	Nulification or Impairment	
< 바 >		
반덤핑	Anti-Dumping	AD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ies	
발동가격	Trigger Price	
발동수준	Trigger Level	

국 문	영 문	약 어
방콕협정	Bangkok Agreement	
병해충안전지역	Pest-or-disease-free-Area	
보고르선언	Bogor Declaration	
보복	Retaliation	
보상	Compensation	
보조금	Subsidy	
보존유보계획	Conservation Reserve Programme	CRP
복수국간무역협정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부족불 지급	Deficiency Pay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
분쟁해결	Dispute Settlement	DS
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DSB
분쟁해결양해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	NTB
비관세조치	Non-Tariff Measures	
비교역적 고려사항	Non-Trade Concerns	NTC
비상환용자	Non-Recourse Loans	
비연계 소득보조	Decoupled Income Support	
비위반사건	Non-violation case	
비자동수입허가	Non-Automatic Import Licensing	
비특혜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사 〉		
산지표시	Indications of Source	
상계관세조치	Countervailing Measures	
상계조치	Countervailing Measures	

국 문	영 문	약 어
상설상소기구	Standing Appellate Body	SAB
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상소검토	Appellate Review	
상업적 고려사항	Commercial Consideration	
상품신용공사	Commodity Credit Cooperation	CCC
상호주의	Reciprocity	
생산자 보조 상당치	Producers Subsidy Equivalent	PSE
생산자은퇴계획	Producer Retirement Programmes	
생산제한계획하의 직접 지불	Blue Box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서비스협상그룹	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	GNS
선별성	Selectivity	
선적전 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PSI
섬유감독기구	Textile Monitoring Body	TMB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	Agreement Establishing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 망 계획	Income Insurance and Income Safety-net Programmes	
소비자 지원상당치	Consumer Subsidy Equivalent	CSE
수량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	QR

국 문	영 문	약 어
수입권공매	Quota Auction	
수입차익 또는 수입이익금	Mark-up	
수입할당	Quota	
수입허가절차	Import Licensing Procedures	
수출경쟁	Export Competition	
수출보조	Export Subsidies	
수출보험	Export Insurance	
수출신용	Export Credits	
수출신용보증	Export Credit Guarantees	
수출신용보증계획	Export Credit Programme	
수출자율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s
수출진흥계획	Export Enhancement Programme	EEP
시장개방요구서	Request List	
시장개방요청 및 제안 방식	Request & Offer System	R/O
시장접근	Market Access	MA
시장질서유지협정	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OMA
시장촉진정책	Market Promotion Programme	MPP
식량순수입개도국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NFIDC
식량안보	Food Security	
신속승인권한	Fast Track Authority	FTA
신축성의 원칙	Principle of Flexibility	
신호등분류방식	Red Amber Green Light	
실행지침	Modalities	

국 문	영 문	약 어
심각한 손상	Serious Prejudice	
쌍무협상	Bilateral Negotiation	
〈 아 〉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약속	Commitment	
양허	Concession	
양허관세	Bound Tariffs	
양허표의 수정	Modification of Schedules	
업계간 자유통매제도	Simultaneous Buy and Sell	SBS
역만장일치제	Reverse Consensus	
열대상품	Tropical products	
오사카선언	Osaka Declaration	
오이씨디 각료이사회	OECD/Council at Ministerial Level	
오이씨디 농업위원회	OECD/Committee for Agriculture	
오이씨디 온라인 서비스망	OECD/On-Line Information Service	OLIS
오이씨디 위원회 및 작업반	OECD/Committee & Working Party	
오이씨디 제규범	Act of OECD	
오이씨디 특별집행위원회	OECD/Special Executive Committee	
오이씨디 협정	OECD/Convention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외국시장개척정책	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me	FMDP

국 문	영 문	약 어
외부참조가격	External Reference Price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UR
우루과이라운드 가속화	UR Acceleration	
우회덤핑	Circumvention	
우회수출보조	Circumvention of Export Subsidy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원산지규정의 조화	Harmonization of Rules of Origin	
원산지표시	Marks of Origin	
원산지표시제도	Country of Origin Marking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유엔환경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유효보호율	Effective Rate of Protection	ERP

국 문	영 문	약 어
유효지원율	Effective Rate of Assistance	ERA
의무면제	De-minimis	
의무면제	Waiver	
의정서	Protocol	
일괄수락원칙	Single Undertaking	
일몰조항, 자동소멸조항	Senset Clause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GSP
〈 자 〉		
자동성	Automaticity	
자동수입허가	Automatic Import Licensing	AIL
자원폐기계획	Resource Retirement Programmes	
자유무역지대	Free-Trade Area	
잔존수입제한	Residual Restriction	
잠정적용 의정서	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	
저명인사그룹	Eminent Persons Group	EPG
적절한 자제	Due Restraint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제3국	Third Parties	
조기경보제도	Early Warning System	
조부 조항	Grandfather Clause	
조치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ies	
조화	Hamonization	
종가세	Ad Valorem Duties	
종량세	Specific Duties	
주선, 조정, 중재	Good Office, Conciliation, Mediation	

국 문	영 문	약 어
주요 4국	Quad	
중간평가	Mid-Term Review	
지리적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지속개발위원회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직접 지불제도	Direct Payments	
〈 차 〉		
차액보상	Deficiency Payments	
77그룹	Group of 77	G77
계약국	Contracting Party	
초기가시화 = 자발적 선행조치	Down Payment	
총량 쿼타	Global Quota	
총보조총액측정치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Total AMS
총체적인 감축방식	Global Approach	
최빈개도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LLDCs
최소시장접근	Minimum Market Access	MMA
최종의정서	Final Act	FA
최초협상국 권한	Initial Negotiation Right	INR
최혜국대우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MFN
〈 카 〉		
케네디라운드	Kennedy Round	
케언즈 그룹	Cairns Group	

국 문	영 문	약 어
〈 타 〉		
투명성·공개주의	Transparency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Special Safeguard	SSG
특별대우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특정성	Specificity	
특혜원산지규정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파 〉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패널	Panel	
평화조항	Peace Clause	
포괄성 원칙	Principle of Comprehension	
포괄적 관세화	Comprehensive Tarrification	
포지티브시스템	Positive System	
푼타델에스테선언	Punta del Este Declaration	
품목별 협상방식	Item by Item Formular	
품목불특정적 보조총액	Non-Product Specific AMS	
측정치		
품목특정적 보조총액측	Product Specific AMS	
정치		
〈 하 〉		
하바나 헌장	Havana Charter	
한도양허	Ceiling Binding	CB
허용대상농업보조	Green Box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ies	
현행시장접근	Current Market Access	CMA
회색지대조치	Grey Area Measure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우선언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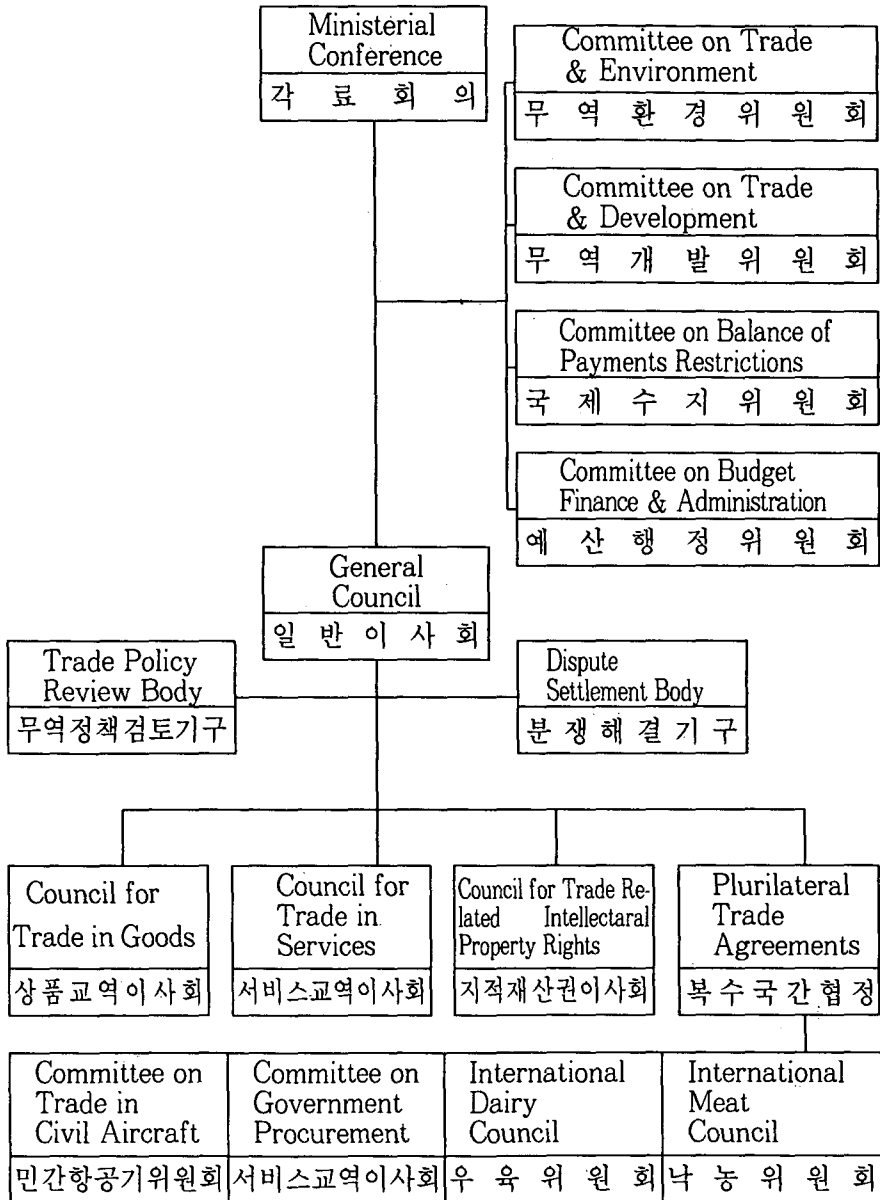
Ⅲ. 부 록

1. WTO 기구표
2. 농업관련 국제기구 영문표기
3. 농림부·관련기관·단체 영문표기
4. 농업관련법령영문표기
5. 통상업무에 자주 쓰이는 특수용어

여 백

<참고1>

WTO기구표



Council for Trade in Goods

상 품 교 역 이 사 회

Committee on Market Access/시장접근위원회

Committee on Agriculture/농업위원회

Committee on Sanitary &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

Committee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무역관련투자조치위원회
--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원산지위원회

Committee on Subsidies & Countervailing Measures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관세평가위원회
--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기술장벽위원회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반덤핑위원회
--

Committee on Import Licensing/수입허가절차위원회

Committee on Safeguards/긴급수입제한 조치 위원회

Textiles Monitoring Body/섬유감독기구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서 비 스 교 역 이 사 회

Negotiating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기본통신협상그룹

Nogociating Group on Movement of Natural Persons /인력이동협상그룹

Negotiating Group on Marine Transport Services /해운서비스협상그룹
--

Committee on Trade in Financial/금융서비스교역위원회
--

〈참고 2〉 농업관련국제기구 영문표기

기관약어	영문명칭	국문명칭	소재지
□ UN산하 기관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통상개발회의	스위스 (제네바)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미국 (뉴욕)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케냐 (나이로비)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	미국 (뉴욕)
WFC	World Food Council	세계식량이사회	이태리 (로마)
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	"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태국 (방콕)
□ 유엔전문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세계식량농업기구	이태리 (로마)
CAC	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FAO/WHO 공동 식품규격위원회	"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농업 개발기금	"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영국 (런던)

기관약어	영문명칭	국문명칭	소재지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스위스 (제네바)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	"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미국 (워싱턴)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교육과학 문화기구	프랑스 (파리)
□ 정부간 기구			
AARRO	Afro-Asian Rural Reconstruction Organization	아·아농촌 재건기구	인도 (뉴델리)
APDC	Asia and Pacific Development Centre	아시아·태평양 개발센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PO	Asia Productivity Organization	아시아생산성기구	일본(동경)
APPPC	Asia and Pacific Plant Protection Commission	아시아·태평양지 역식물보호위원회	태국 (방콕)
CCAML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해양생물 자원보존위원회	호주 (호바트)
CIRDAP	Center on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for Asia and the Pacific	아·태지역농촌 종합개발센터	방글라데쉬 (꼬밀라)

기관약어	영문명칭	국문명칭	소재지
IOE (OI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Office Internationale des Epizooties)	국제수역사무국	프랑스 (파리)
IPFC	Indo-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인도·태평양 수산위원회	태국 (방콕)
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국제포경위원회	영국 (캠브리지)
IWC	International Wheat Council	국제소맥이사회	영국(런던)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필리핀 (마닐라)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각료회의	싱가폴 (싱가폴)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AVRDC	Asian Vegetabl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아시아채소연구 개발센터	자유중국 (대북)
CAC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중미공동시장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CARICOM	Caribbean Community	카리브공동체	가이아나 (조지타운)
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이사회	벨지움 (브뤼셀)
EC	European Communities	구주공동체	"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구주자유무역연합	스위스 (제네바)
G-77	Group of 77	77 그룹	상설사무국 없음

기관약어	영문명칭	국문명칭	소재지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스위스 (제네바)
ICAC	International Cotton Advisory Committee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미국 (워싱턴)
ICID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rrigation and Drainage	국제관개배수위원회	인도 (뉴델리)
ISC	International Sericultural Commission	국제양잠위원회	프랑스 (라빌라피에르)
ITC	International Trade Center	국제무역센터	스위스 (제네바)
LAES	Latin American Economic System	중남미경제기구	베네스웰라 (카라카스)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프랑스 (파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스위스 (제네바)
<input type="checkbox"/> 준정부간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스위스 (제네바)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국제자연보존연맹	"

<참고 3> 농림수산부·관련기관·단체 영문표기

개 관 명	영 문 표 기
□ 농 림 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MAF)
장 관	Minister
차 관	Vice-Minister
차 관 보	Deputy Minister for Rural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기획관리실장	Assistant Minister for Planning & Management
농업정책실장	Assistant Minister for Agricultural Policy
공 보 관	Public Information officer
공 보 담 당 관	Director for Public Information
감 사 관	Inspector General
감 사 담 당 관	Audit and Inspection Officer
조 사 담 당 관	Investigation Officer
비 상 계 획 관	Emergency Planning Officer
비상계획담당관	Director for Emergency Planning
총 무 과	General Services Division
기 획 예 산 실	Planning and Management Office
기획예산담당관	Planning and Budget Officer
행정관리담당관	Administration Management Officer
법 무 담 당 관	Legal Affairs Officer
투자심사담당관	Investment Evaluation Officer
농업통계정보관	Agriculture Statistics Information Officer
농정기획심의관	Director General for Agricultural Policy
농 정 기 획 과	Agricultural Policy Division
농 지 관 리 과	Farmland Policy Division

기 관 명	영 문 표 기
농촌인력과	Rural Human Resource Division
농업금융과	Agricultural Credit and Cooperatives Division
식량정책심의관	Director General for Food Grain Policy
식량정책과	Food Grain Policy Division
식량관리과	Food Grain Management Division
기반정비과	Farmland Consolidation Division
농산정책심의관	Director General for Agricultural Production Policy
농산기술과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echnology Division
환경농업과	Sustainable Agricultural Division
농업기계자재과	Agricultural Machinery and Materials Division
국제농업국	International Agriculture Bureau
국제협력과	Multilateral Cooperation Division
기술협력과	Technical Cooperation Division
통상협력과	Bilateral Cooperation Division
무역진흥과	Trade Policy Division
농촌개발국	Rural Development Bureau
개발기획관	Deputy Director General for Technical Consultations.
개발기획과	Rural Development Planning Division
농촌정비과	Village Rearrangement Planning Division
농촌용수과	Rural Water Resources Development Division
시설관리과	Rural Water System Management Division
유통정책국	Marketing Policy Bureau
유통정책과	Marketing Policy Division
유통관리과	Marketing Management Division
시장과	Marketing Development Division
가공산업과	Processing Industry Division

기 관 명	영 문 표 기
원 예 특 작 국	Horticulture and Special Crops Bureau
원 예 특 작 과	Horticulture and Special Crops Division
채 소 과	Vegetable Division
과 수 화 훼 과	Fruit and Flower Division
축 산 국	Livestock Bureau
축 산 정 책 과	Livestock Policy Division
축 산 경 영 과	Livestock and Feed Management Division
축 산 물 유 통 과	Livestock Products Marketing Division
가 축 위 생 과	Animal Health Division
□ 외 청	
농 촌 진 흥 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산 림 청	Forestry Administration
□ 산 하 기 관	
국립농산물검사소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Grading and Inspection Office(NAPIO)
국립동물검역소	National Quarantine Service(NQS)
국립식물검역소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NPQS)
농업공무원교육원	Agriculture Officer Training Institute(AOTI)
농업통계사무소	Provincial Agriculture and Statistics Office(ASO)
□ 관 련 단 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National Agriculture Cooperatives Federation(NACF)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National Livestock Cooperatives Federation(NLCF)
임업협동조합중앙회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s Federation(NFCF)
농지개량조합연합회	Federation of Farmland Improvement Association(FFIA)
농어촌진흥공사	Rural Development Corporation(RDC)

기 관 명	영 문 표 기
농수산물유통공사	Agricultural and Fishery Marketing Corporation(AFMC)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s Institute(KREI)
한국식품개발연구원	Korea Food Reserch Institution(KFRI)
축산물유통사업단	Livestock Products Marketing Organization(LPMO)
한국관광호텔용품센터	Korea Tourist Hotel Supply Center(KTHSC)
한국종축개량협회	Korea Animal Improvement Association(KAIA)
대한양계협회	Korea Poultry Association(KPA)
한국사료협회	Korea Feed Association(KFA)
한국유가공협회	Korea Dairy Industries Association(KDIA)
한국대용유사료협회	Korea Feed Milkreplacer Association(KFMA)
대한양돈협회	Korea Swine Association(KSA)
한국단미사료협회	Korea Feed Ingredients Association(KFIA)
한국대두가공협회	Korea Soybean Processors Association(KSPA)
한국육류수출협회	Korea Meat Export & Import Federation(KMEIF)
한국축산기자재협회	Korea Livestock Machinery Association(KLMA)
한국냉장(주)	Korea Cold-Storage Company Ltd.(KCSC)
한국육가공협회	Korea Meat Industries Association(KMIA)
한국곡물차가공협동조합	Korea Grain Processing Industial Cooperation(KGPIC)
대한잠사회	Korea Sericultural Association(KSA)
한국과수묘목협회	Korea Fruit Tree Nursery Grower's Association(KFTNGA)
제주감귤협동조합	Cheju Citrus Grower's Agricultural Cooperative(CCGAC)
한국생사수출조합	Korea Raw Silk Exporters Association(KRSEA)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Korea Export Association of Textiles(KEAT)

기 관 명	영 문 표 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KPTA)
제지공업협회	Korea Paper Manufacture Association(KPMA)
한국전분·당협회	Korea Corn Processing Industry Association(KCPIA)
한국슈퍼체인협회	Korea Super-Chainstores Association(KSCA)
인삼협동조합중앙회	National Ginseng Cooperative Federation(NGCF)
대한주류공업협회	Korea Alcohol Liguor and Industrial Association(KALIA)
농림수산정보센터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AFFIC)
한국생약협회	Korea Medicine Herbs Association(KMHA)
한국잠종협회	Korea Silkworm-eggs Association(KSA)
한국화훼협회	Korea Flower Association(KFA)
한국과수협회	Korea Fruit Association(KFA)
한국종묘협회	Korea Seed Association(KSA)
대한양돈협회	Korea Swine Association(KSA)
한국양봉협회	Korea Bee-Keeping Association(KBA)
한국애완동물보호협회	Korea Pet Animal Protection Association(KPAPA)
한국제분공업협회	Korea Flour Mills Industrial Association(KFMIA)
한국전분당협회	Korea Corn Processing Industrial Association(KCPIA)
대한곡물협회	Korea Grain Association(KGA)
한국유기농업협회	Korea Organic Farming Association(KOFA)

<참고 4>

농업관련법령 영문표기

법 률 명	영 문 표 기
가축전염병예방법	Livestock Epidemics Prevention and Control Act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Special Account Management Act for Rural Restructuring
농어촌특별세법	Speial Tax Act for Rural Development
농어촌진흥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Rural Development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Special Act for Fostering Farmland Improvement Cooperatives.
농수산물유통및가격 안정에관한법률	Agro-Fisheries Marketing and Price Stabilization Act.
농수산물수출진흥법	Agro-Fisheries Export Promotion Act.
양곡관리법	Foodgrain Management Act.
사료관리법	Feed Management Act.
종묘관리법	Seedlings Management Act.
종자산업법	Seed Industry Act.
주요농작물종자법	Major Agricultural Crop Seeds Act.
잠업법	Sericulture Law.
비료관리법	Fertilizer Management Act.
농약관리법	Agro-Chemicals Management Law.
농어업재해대책법	Agro-Fisheries Disaster Relief Act.
지력증진법	Soil Fertility Improvement Act.
농업기계화촉진법	Farm Mechanization Promotion Act.
축산법	Livestock Farming Act.
낙농진흥법	Dairy Promotion Act.
축산업협동조합법	National Livestock Cooperatives Act.
산림법	Forestry Act.
식물방역법	Plant Protection Act.
인삼산업법	Ginseng Industry Law.

〈참고 5〉 통상업무에 자주 쓰이는 특수 용어

a fortiori—with stronger reason ; much more ; all the more.

a posteriori—from effect to cause ; from what comes after.

a priori—from cause to effect ; from what went before.

ad initio—from the beginning ; entirely.

ad hoc—as to this ; for this special purpose.

ad infinitum—without limit ; to infinity.

ad interim—in the meantime(*Not underscored in the title “charge d'affaires ad interim”*).

ad intestate—from an intestate.

ad referendum—for reference ; for further consideration.

ad valorem—according to value.(*Not italicized in English text*).

Anno Domini—in the year of our Lord.

bona fide—in good faith.

bona fides—good faith.

casus belli—an event which is allegedly the cause of war.

ceteris paribus—other things or conditions being equal.

corpus delicti—the body of the offense ; the essence of the crime.

coup d'état—unexpected stroke of policy or statesmanship : often accompanied by violence ; often involves a change in government.

cum testamento annexo—with the will annexed.

de facto—actually ; in fact ; in reality.

de jure—rightfully ; lawfully ; by legal title ; of right ; by right.

de novo—anew ; afresh ; all over again.

droit civil—common law.

droit de tetraction—emigration duty.

en bloc—in a lump ; as a whole ; in a block.

et sequentes ; et sequentia—and the following.

ex aequo et bono—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good

ex gratia—of favor ; out of grace.

ex officio—by virtue of his office.

ex parte—of the one part ; from the side or party.

ex post facto—from or by an afteract ; by subsequent matter.

ex professo—openly ; avowedly.

force majeure—superior or irresistible force.

hors de cause—outside of the cause

in extenso—fully, at length

in extremis—at the very end, on the point of death

in fine—in *or* at the end

in flagrante delicto—in the very act of committing the crime

in fraudem legis—in fraud of the law, contrary a law

in futuro—at a future time

in hoc—in this

in inito legis—at the beginning of the suit

in limine—in or at the beginning

in loco—in the place

in loco parentis—in the place of parent

in re—in the matter of

in statu quo—in the state in which it was, unaltered

in toto—in the whole ; completely

inter alia—among other things

inter nos—between ourselves

inter se—between *or* among themselves

inter vivos—between living persons

ipso facto—by the fact itself

ipso jure—by the law itself

jus civile—civil law

jus gentium—the law of nations

jus sanguinis—the right of blood

jus soli—right of the soil, indicating the citizenship of a person by the
place of his birth

lapsus calami—slip of the pen.

lapsus meoriae—slip of the memory

lapsus linguae—slip of the tongue

lex loci—the law of the place

locus standi(*a place of standing*)—a right to be heard

mala fides—bad faith

mali exempli—of bad example

mare clausum—closed sea

mare liberum—free sea

modus operandi—mode of operation

modus vivendi(*plural ; modi vivendi*)—a temporary arrangement between
two sovereignties providing for the conduct of certain affairs
pending negotiations for a treaty on the same subject

mutatis mutandis—with necessary changes

nolle prosequi—to be unwilling to prosecute

non compos mentis—not of sound mind, of understanding, memory

non prosequitur—he does not prosecute

non sequitur—it does not follow

opere citato—in the work cited (To be used only with the name of an author or in connection with name of an author)

parens patriae—father of his country

patria potestas—the authority vested by law in the father over his legitimate children

per annum—by the year

per curiam—by the court

per diem—by the day

per se—by itself, alone

persona non grata—one who is not acceptable

post mortem—after death

prima facie—at first view, on the first appearance

pro confesso—as confessed

pro nunc—for the present

pro rata—according to the rate, proportion, allowance

pro tanto—for so much

pro tempore—for the time being

procès-verbal (procès-verbaux)—official report(s), journal(s), minute(s) of proceedings

quid pro quo—one thing for, or in place of, another

ratione personae—by reason of the person.

requete civile—appeal to the highest court for that court to reconsider its own decision

res judicata—a matter that has already been judicially determined

sine die—without day(i.e. without setting a day)

status quo—the state of things existing at any given time

status quo ante—the state of things existing before

ultra vires—beyond their powers